

월간

# 재정포럼 4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1년 4월호 제178호

**현안분석** • 재정·정치제도의 재정성과에의 영향: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홍승현

• 조세·재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과학화  
필요성: 재정패널 자료 특성에 대한 논의 / 송헌재

**정책토론포트** •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정책흐름** •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실시계획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b>권두칼럼</b>	02 공평한 조세에 관하여 · 곽태원
<b>현안분석</b>	06 재정·정치제도의 재정성과에의 영향: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홍승현 23 조세·재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과학화 필요성: 재정패널 자료 특성에 대한 논의 · 송헌재
<b>정책토론포트</b>	57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71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b>공공정책포럼</b> <b>KIPF 논문공모 수상작</b>	78 서민의 신용자산 지킴이 KAMCO 85 담배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비선형의 담배수요함수 추정과 암묵적 비용 모델링 · 강효석 104 왜 세금을 내는 걸까? · 오형석
<b>주요국 조세동향</b>	107 그리스 세제 개편, 투자촉진법 및 탈세방지법 발표 외
<b>정책흐름</b>	121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실시계획 125 2010년 중앙정부 관리대상수지 13.0조원 적자 126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13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133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
<b>재정통계</b>	136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비과세 비중 외
<b>이슈 &amp; 포커스</b>	144 학력 높을수록 납세의식은 '뺑뺑' 외

## 공평한 조세에 관하여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 또는 정의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 조세정책에 관한 실무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정성이나 정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개념들보다는 훨씬 더 손에 잡히는 공평 또는 형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문제들과 매우 오랫동안 씨름해 왔다. 물론 조세정책에서는 공평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옳은 것’ 즉 정의의 개념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높일 수도 있는 ‘좋은 것’이라는 측면 즉, 공리주의적 측면도 상당히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조세의 공평성, 능력원칙과 누진세율

어쨌든, 여기서는 조세이론이나 조세정책에서 논의되는 공평성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세금의 부담이 국가로부터 받는 편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익원칙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편익원칙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능력원칙이다.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편익의 측정보다는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능력대로 부담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다시 어려움이 생긴다. 일단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을 누진소득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런데 왜 누진세인가? 누진세의 근거로 밀(Mill, John Stuart)의 동등희생설(equal sacrifice theory)을 거론할 수 있지만 동등희생설에서 누진소득세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누진소득세의 선택은 현재의 소득분배를 좀 더 균등한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해석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진소득세가 ‘옳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누진소득세는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는 누진소득세율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변동해왔다는 점이다.

**‘정의로운 소득분배’와 ‘효율적인 정책수단’**

논리적인 비약 같지만 소득분배의 개선을 당위로 생각한다는 것은 능력원칙이나 동등희생을 모두 수용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을 연장하면 우리는 조세의 공평성을 특정한 세목의 누진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조세제도 전반, 나아가서 조세와 재정지출정책 전반이 소득분배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물론 소득분배개선이 옳다는 것 즉, 정의로운 일이라는 합의가 완전평등이 정의라고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수준의 소득분배가 ‘정의로운’ 것인가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얻어지는 조세와 재정수단들의 조합은 공평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틀에서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되던 직접세 혹은 소득세 비중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비중을 높이는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복지지출의 내용이나 규모도 ‘적정화’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에서 말한 ‘정의로운 소득분배’는 단순히 지니계수의 수치만을 가지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빈층의 생활수준과 그 규모, 계층간 이동성 등이 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어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종합적 소득분배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합의하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같등이나 소모적 논쟁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평한 조세의 틀은 위와 같은 접근을 통해 마련될 수 있지만 이 때 부분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수평적 공평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개입에 의해서 소득의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차는 줄어들어야 하지만 순위가 바뀌게 되면 수평적 불공평으로 인식되어 정책을 불신하게 되고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조세는 지니계수를 낮추는 효과는

.....  
 종합적 소득분배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합의하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같등이나  
 소모적 논쟁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

.....  
 소득재분배의 구체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유효한 수단들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공식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오래 참을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있을 수 있으나 수평적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공평한 세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재정지출정책에서도 수평적 불공평을 초래하는 경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재정과 조세를 횡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공평성을 판단해야 할 뿐 아니라 종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긴 시간을 생각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생각하고 공평성을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높은 율의 법인세가 당장은 대기업 주주들의 세후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충분히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자본의 국외유출을 통한 일자리 감소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 정책의 집행이나 정책 순응에 대한 고려도 중요

마지막으로 정책의 집행이나 정책 순응에 대한 고려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간에는 아직도 평균적인 실제 세금 부담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행정당국의 소득파악 능력과 납세자들의 순응의 격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조세부담에 대한 수평적 불공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인 수단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차원의 수평적 불공평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소득에 핸디캡을 주는 방식은 사업소득자들 중에서 정직하게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행정비가 비대칭적으로 투입되더라도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 측면의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같은 것은 공정한 사회 구현에 적지않은 기여를 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공평이나 정의라는 것이 말하기는 쉬워도 정책목표로 구체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개인들 간의 이념이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어 이 개념들의 논의는 논쟁으로 그리고 갈등으로 발전할 위험도 크다. 위에서 언급한 소득재분배의 구체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유효한 수단들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공식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오래 참을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 재정·정치제도의 재정성과에의 영향: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홍승현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 조세·재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과학화 필요성: 재정패널 자료 특성에 대한 논의

송헌재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재정·정치제도의 재정성과에의 영향: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shhong@kipf.re.kr)

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재정지출의 결정에 있어 존재하는 주인-대리인의 문제이고 두 번째가 재정지출이 가지는 외부성으로 인한 공유재의 문제이다.

## I. 이론적 논의<sup>1)</sup>

실증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제도적 측면에서 재정성과를 바라보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후반부에 제시되는 실증분석 모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자.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은, 재정의 문제점 특히 재정적자나 정부 부채의 문제들이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이러한 개별적 선택의 배경에는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 낸 유인구조(incentive system)의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재정지출의 결정에 있어 존재하는 주인-대리인의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이고 두 번째가 재정지출이 가지는 외부성(externality)<sup>2)</sup>으로 인한 공유재의 문제(common pool problem)이다.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주인-대리인 문제는, 재원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선출한 정치인(대리인)들로 하여금 재원의 사용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정작 대리인들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원을 사용할 유인이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특히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이러한 주인-대리인 관계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연결시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만 그것을 국민이 감독하기 어려운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

1)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홍승현(2010a)과 김정훈 외(2010)에 소개되어 있다.  
2) 외부성이란 일반적으로 가격체계를 통하지 않은 효용 혹은 비효용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재정지출이 직·간접적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재정지출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공유재의 문제란, 재정이라는 공용 재원의 사용을 통한 혜택이 공용 재원을 부담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 집중되는 경우, 공용 재원의 사용 결정에 있어서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의 불일치로 인해 공용 재원이 남용되는 문제를 말한다.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인 주인-대리인의 관점에서 재정의 성과와 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선거제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부 형태 등의 정치제도적 측면을 강조한 정치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선거제도가 가지는 여러 측면들 중 선거방식에 중점을 두고, 이를 크게 다수대표제(plurality rule)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러한 선거제도 속에서 정치인들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 과 의식 확보를 위한 '경쟁' 이 주인-대리인 문제의 틀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결과가 재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분석한다.

한편, 공유재의 문제에서 재정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재정·예산제도 속에서 재정정책이 가지는 외부성이 재정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얼마나 잘 내부화(internalize)되어 결정권자들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제공되는지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제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크게 예산과정의 단계에 따라 수립·승인·집행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주요한 제도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재정의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집중적(centralized) 혹은 분산적(fractionalized) 제도로 구분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예산 편성 단계의 경우, 지출관련 부서의 장관수가 많을 수록 서로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힘들어지는데, 이런 경우 절차가 분산적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산절차가 분산적일수록 재정 적자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산제도 관점에서 중심이 되는 공유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여러 관련 절차들의 집중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친 의사결정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통제방식으로는 대리인 방식(delegation approach)과 계약 방식(contract approach)의 두 가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Hallerberg & von Hagen, 1999). 우선 대리인 방식은 행정부 안에서나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존재하는 수직적 권력구조에 바탕을 둔 방식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절차 전반에 있어 강력한 결정권자의 존재이다. 주로 재무장관(혹은 수상)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강력한 권한을 바탕

여러 단계에 걸친  
의사결정의 집중도를  
증대하기 위한  
통제방식으로는 대리인  
방식과 계약 방식의  
두 가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대리인 방식과는 달리, 계약 방식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결정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외부효과와 내부화를 이루기 위해 정당 대표자들 간의 토의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합의가 얼마나 지속가능한지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으로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련 내각회의에서 안건을 설정 (agenda setting)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예산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서 모든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입법부의 예산 승인 단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에 추가 혹은 수정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가지는 외부효과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부성의 내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의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입법부의 예산안 수정 가능성 및 범위를 줄이는 것이 대리인 방식의 통제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리인 방식과는 달리, 계약 방식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결정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외부효과와 내부화를 이루기 위해 정당 대표자들 간의 토의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합의(agreement)가 얼마나 지속가능한지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계약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권 초기 연합정권(coalition government) 형성에 있어서 구성 정당의 대표자들 간에 토의를 통해 합의사항(coalition agreement)을 만들어 낸다. 이 합의에는 주요 재정지표들의 목표치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 목표치들을 바탕으로 연합정권의 예산안의 중요 정책들이 결정되게 된다. 정부 각 부처가 예산안에 따라 정확히 집행을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재무장관에게는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추가적으로 행정부 전반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감독 기능과 예산 승인과정에서의 수정권한은 계약 방식의 통제의 경우 집중도 증대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 두 가지 통제방식의 주요한 차이점들이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절차의 집중도를 높이는 두 가지 방식 (홍승현(2010a)의 수정)

		대리인 방식	계약 방식
적합한 권력구조		수직적 구조	수평적 구조
행정부	정부형태	단일정당 정부	다수당 연합정부
	재무장관	계획/집행/감독 등 절차 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	주로 집행 감독기능
	재정목표에 대한 commitment	약함	강함
	강제수단	직위에서 해임	연합(coalition)의 해체
입법부	의회의 예산안 수정	범위/가능성이 작음	많은 부분 수정 가능
	행정부와의 관계	행정부에 의해 예산 변경 권한 제한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감독 기능

선거제도와 예산제도 이외에도 여러 제도적 측면들과 재정성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각론(各論)들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절의 실증 분석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틀을 중심으로 한 분석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실증 분석에 들어가지 전 마지막으로 명확히 해야 할 개념은 ‘재정성’이다.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이라는 수단은 현대사회가 정부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정부 고유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측정되는 이러한 재정의 성과들 중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재정건전성의 측면과 경제성장애의 기여 측면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정 성과와 관련되어 논의의 대부분은 재정수지나 부채 수준과 같은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제도적 측면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의 학문적 영향이 큰데, 유럽연합의 결성 이후 단일 통화의 도입 등으로 기존 회원국들과 회원 신청국들의 재정건전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재정수지와 재정부채를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안정과 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각국은 재정수지는 GDP의 3% 이내로,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 권고되고 있고, 비록 부채비율이 강력히 강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3%의 재정수지 규칙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하에서, 각국이 매년 보고하는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에 나타난 재정지표들과 재정 건전화 노력을 평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 사회의 결정을 거쳐 강제조치(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의 성과와 관련되어 많이 논의되는 다른 한 가지는 경제성장애의 효과이다.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재정의 제도적 측면을 연구한 논의들에는 재정의 질적(質的)인 측면을 계량화한 ‘Quality of Public Finance(QPF)’의 개념<sup>3)</sup>을 사용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재정의 관리 · 감독 측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측정되는 재정의 성과들 중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재정건전성의  
측면과 경제성장애의  
기여 측면이다.

## II. 실증분석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제도와 재정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제도적 환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우에 따라서 적정통

3) QP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승현(2010b)에 소개되어 있다.

대리인 방식과 계약 방식의 재정통제 방식 중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더 적절한지는 주로 정치제도의 일부인 정부 형태, 특히 정부 내 정당의 수와 그 이념적 다양성에 따라 구분한다.

제 방식-대리인 방식과 계약 방식-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제도의 집중도-centralized vs. fractionalized-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본고의 논의에 있어 제도의 구분에 기본이 되는 것은 대리인 방식(Delegation Approach)과 계약 방식(Contract Approach)의 재정통제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통제방식이 어떤 상황에서 더 적절한지는 주로 정치제도의 일부인 정부 형태, 특히 정부 내 정당의 수와 그 이념적 다양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Hallerberg & von Hagen, 1999; Hallerberg, Strauch & von Hagen, 2007, 2009).

대리인 방식은 단일정당 정부나, 이념적 차이가 적은 정당들 혹은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한 정당 간의 연합인 경우에 적당한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집권당 내부에 구성 장관들 사이에 이념적 차이가 적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재무장관의 강력한 주재하에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계약 방식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당으로 이루어진 연합정부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권한을 특정 정당 출신의 재무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연합정권의 유지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어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는 개별 장관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정당 대표들 간의 합의가 오히려 더 강력한 제어수단으로 작용한다.

이 절의 통계분석에서는 각 정부 형태에서 유추되는 추가적인 각국의 정치적 특징들이나 이에 대한 여러 요인들, 예를 들어 내각의 이념적인 다양성이나 선거/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 등이 이러한 통제방식의 구분과 어떻게 연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적 특징에 추가하여, 정치제도(법)적 특징, 즉 정치형태(대통령제의 여부 등)나 의원제도, 국민투표제도, 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제도적 구속력 등이 이상적인 통제방식의 구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고, 정치제도적 여러 특징과 이상적 통제방식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재정성과가 이러한 관계의 밀접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대리인 방식과 계약 방식의 적절성 구분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통제방식의 구분은 재정/예산제도와의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통계분석에서는 관심을 정치제도에서 재정제도까지 확대하여, 각 국가의 여러 재정제도적 측면이 정부 형태에서 도출된 두 가지 통제 방식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재정제도 측면에서의 결과와 정치제도적 측면에서의 결과를 비교하여, 이러한 구분의 차이가 재정성과의 여

리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가. 자료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Hallerberg et al.(2007,2009)의 정치제도 · 재정제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정치 · 사회학에서의 다른 정치제도 및 정치상황 자료들과 몇몇 재정제도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정치관련 자료를 보면, Hallerberg et al.(2007,2009)은 유럽연합에 속하는 15개국<sup>4)</sup>의 3년(1991년, 2001년, 2004년) 자료를 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정제도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측면의 자료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국가 간 비교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Armingeon et al.(2009)의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I’<sup>5)</sup>과 World Bank(2009)의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sup>6)</sup>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재정(제도) 관련 데이터는 정치제도에 관한 자료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적고 구하기가 어려운데, 본 연구에서는 Hallerberg et al.(2007, 2009)의 15개국 3년간 자료와 EU에서 2008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준칙에 대한 서베이 자료<sup>7)</sup>를 사용한다.

재정성과와 관련하여 재정수지와 재정적자,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주요 몇몇 거시변수들과 함께 OECD의 Economic Outlook Database에서 추출되어 Comparative Political Dataset I에 함께 제공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 나. 실증분석 방법론

각국의 자료를 살펴볼 때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의 정치관련 변수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적 상황, 즉 내각의 정당 구성, 이념적 다양성, 의회의 정치적 다양성 등에서의 변화만이 (선거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상 전체적 패널분석은 정치관련 부문만, 특히 Comparative Political Dataset I이나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하기는 하나, 제도 변수들의 변화가 거의 없기에 패널 분석의 효과를 보기는 힘든 구조이다. 더욱이 재정제도 부분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패널의 구성이 어려워서 주어진 시점의 자료들을 이용한 횡단면 분석을 이용하거나 여러 시점 간 자료를 pooling해서 회귀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적절

각국의 자료를

살펴볼 때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의 정치관련 변수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4) 15개 국가들 중 이탈리아의 경우, 본고의 분석에 필요한 정치변수들이 결측치가 많아, 실제 분석에서는 14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5) 23개국의 38년(1960~2007)간의 16개 분야에 걸친 정치·경제·사회·인구 등에 대한 패널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6) 177개 국가의 113개 항목에 걸친 자료가 1960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되어 있다. 다만 그 국가나 시간의 범위에 비해, 정치적 항목에 대한 자료의 다양성은 Armingeon et al.(2009)의 자료에 비하여 떨어지는 편이고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

7) 이는 EU의 Fiscal Governance Survey Database의 일부로, 자세한 내용은 홍승현(2010c)에 소개되어 있다.

정치제도적으로 이상적인 통제방식과 정치상황 혹은 재정제도상의 적절한 통제방식과의 괴리가 다른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재정성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한다.

해 보인다.

본질의 회귀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치적 제도·상황과 재정제도의 두 가지 측면을 분리하여, 각 측면에서의 이상적 통제방식과 제도·상황적 변수들의 조합과의 차이를 구한다. 즉, 정치상황·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정치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정부형태와 그 정부형태에 적절한(이상적인) 통제방식을 선정<sup>8)</sup>하고, 선정된 적정 통제방식이 정치제도 자체가 아닌 제도가 만들어내는 여러 정치상황변수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주어진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통제방식과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이상적인 통제방식 간의 괴리를 추정한다. 재정제도 측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치제도에서 도출하였던 적정 통제방식이 재정제도의 각 측면들과는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재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 적절한 통제방식과 정치제도적으로 적절한 통제방식 간의 괴리를 추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정치제도적으로 이상적인 통제방식과 정치상황 혹은 재정제도상의 적절한 통제방식과의 괴리가 다른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재정성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괴리와 상관없이 재정제도와 정치제도·상황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재정성과와 연관되는지도 살펴본다.

#### 다. 첫 번째 단계: 적정통제방식과 정치·재정제도

적정 통제방식의 결정이 행정부 내의 이념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이 이념적 차이는 주로 정치 변수들, 특히 법적인 요소가 강한 정치 '제도'를 통해 결정된다. 적정(이상적) 통제방식이 계약 방식과 대리인 방식의 둘 중 하나로 결정되는 이항(二項)변수이므로, 정치상황들과 적정 통제방식의 연관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Probit 모형을 가정한다.

$$P(Y_i=1)=\Phi(X_i\beta), i=1, \dots, n \tag{1}$$

여기서  $Y_i$ 는 적정통제방식의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각  $i$ 의 경우에 적절한 통제방식이 계약 방식( $Y_i=0$ )인가 혹은 대리인 방식( $Y_i=1$ )인가를 지칭하고,  $\Phi(\cdot)$ 는 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이고,  $X_i$ 는 각종 정치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8) 특정 시점에서 각 국가에 어떤 통제방식이 이상적인가의 결정은, 해당 시점의 집권 정부 내의 구성 정당(들)의 이념적 다양성에 의해 결정된다(Hallerberg et al., 2007, 2009).

Pooled Probit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서로 다른 specification들에 대한 추정 결과는 아래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첫째 열은  $X_i$ 에 사용된 정치상황 변수들이고, 나머지 열들에는 (1)-(7)의 서로 다른 specification들에 대해, 각 변수들이 변할 때의 확률변화인 한계효과( $dF/dx_i$ )들의 추정치(estimate)들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보기 위한 p-value들이 나타나 있다<sup>9)</sup>. 이렇게 추정된 모형에서, 모형이 predict하는 대리인 방식의 확률( $P(Y_i=1)=\Phi(X_i\hat{\beta})$ )과 실제 적정 통제 방식의 차이(일종의 회귀 오차항들)를  $DPs_i=Y_i-\widehat{P}(Y_i=1)$ 와  $DPa_i=|Y_i-\widehat{P}(Y_i=1)|$ 라고 하고 이러한 괴리들이 재정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표 2> 적정통제모형과 정치상황 간의 관계

모형 $dF/dx_i$	(1)	(2)	(3)	(4)	(5)	(6)	(7)
내각의 정치적 구성	-0.1238 (0.000)	-0.0876 (0.043)	-0.2198 (0.000)	-0.1257 (0.000)	-0.1189 (0.001)	-0.0914 (0.007)	-0.1127 (0.002)
내각의 구성형태			-0.3076 (0.000)				
행정부 정당구성 지수	-0.6397 (0.035)	-1.2356 (0.000)	-1.5456 (0.003)	-0.9741 (0.000)	-0.8459 (0.016)	-0.2971 (0.407)	-0.4252 (0.265)
선거 분산도 지수				-0.0556 (0.000)	-0.0595 (0.000)	-0.0405 (0.000)	
의회 분산도 지수	-0.5170 (0.000)	-0.0492 (0.000)	-0.0431 (0.002)				-0.05651 (0.000)
선거구 크기의 역수	1.0771 (0.005)	0.8750 (0.010)	1.5577 (0.000)	1.0922 (0.004)	1.0477 (0.007)	0.7887 (0.041)	1.0110 (0.009)
투표와 의석의 불균형 지수1	0.5064 (0.001)	0.6270 (0.001)	0.6436 (0.006)	0.8111 (0.000)	0.8463 (0.000)		0.5259 (0.001)
투표와 의석의 불균형 지수2						0.1324 (0.000)	
정치제도적 구속지수		0.2579 (0.000)					
집권정당 의석점유율					-0.3924 (0.8878)	-0.6196 (0.308)	-0.6004 (0.347)
Obs.	294	294	274	294	294	294	294
Pseudo R-square	0.6526	0.7542	0.7136	0.6331	0.634	0.6601	0.6548
Correctly Specified	90.14%	94.22%	89.05%	89.12%	88.78%	88.78%	90.1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p-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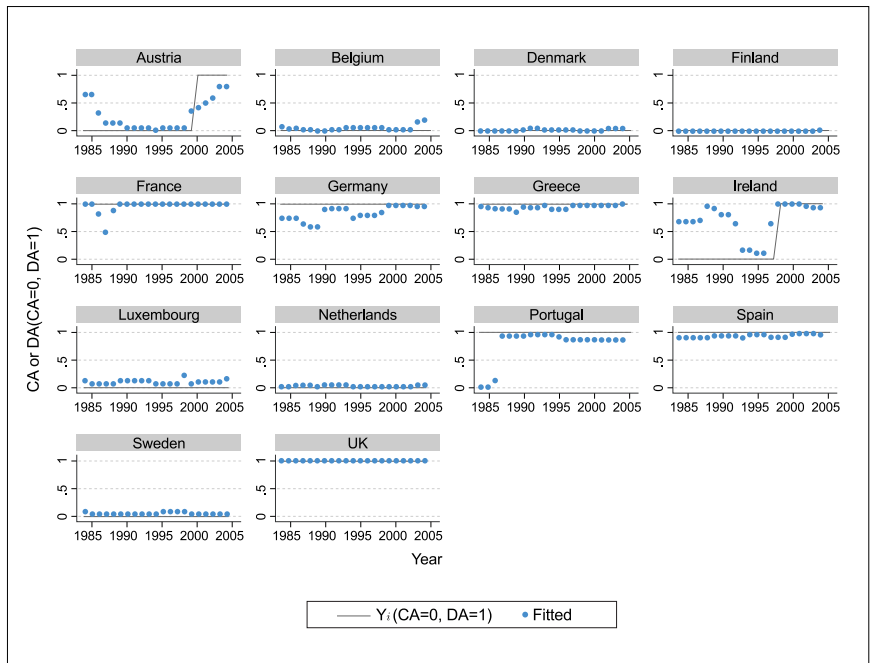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상적인 통제방식과  
각 국가의 정치와 재정측면의  
여러 제도적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Probit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9) 이 외에도 각 specification의 Pseudo R<sup>2</sup>는 Probit모형에서 사용하는 McFadden의 Pseudo R-square로, optimization과정에 나온 log-likelihood값을 이용하여 구하며, Probit모형에서 일반 선형 회귀모형의 R-square값을 사용할 수 없기에 대응하는 지표이다. 마지막 행의 "Correctly Specified"의 수치는 각 모델에서 50%의 확률을 기준으로 fitted value값을 구분할 때, 실제와 일치하는 확률을 나타낸다(김정훈 외, 2010).

‘내각의 정치적 구성’이 사회주의 좌파 정권일수록, ‘정부내 평균정당 수’가 늘어날수록, ‘의석의 분산도’가 높을수록, 계약 방식을 통한 재정통제의 방식에 가깝다.

모형과 실제의 적정 통제방식의 차이를 구할 specification은 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중에 (2)번 specification을 선택<sup>10)</sup>한다. (2)번을 살펴보면, 사용된 모든 정치상황 변수<sup>11)</sup>들의 계수에 대한 추정치들이 5%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그 부호들도 이론적 논의와 일치하고 있다. 즉, ‘내각의 정치적 구성’이 사회주의 좌파 정권일수록, ‘정부내 평균정당 수’가 늘어날수록, ‘의석의 분산도’가 높을수록, 계약 방식을 통한 재정통제의 방식에 가깝고, 하원선거의 ‘평균지역구 크기의 역수’가 클수록(즉 소선거구제에 가까울수록), ‘투표와 의석 연결의 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제도적 구속력’이 높을수록 대리인 방식의 재정통제가 적절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은 (2)번 specification 하에서  $Y_i$ 와  $P(\widehat{Y_i=1})=\Phi(X_i\beta)$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이상적 통제방식과 모형의 추정치



10) 모형 선정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높은 “Pseudo R-square”값과, cut-off probability의 변화에 robust하게 높은 “correctly specified” 확률을 보여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모형 (2)의 경우, cut-off probability가 10%, 50%, 90%로 변화시킬 때 correctly specified 확률은 각각 89.5%, 94.2%, 87.1%에 해당한다(김정훈 외, 2010).

11) 변수들의 간단한 설명은 [Appendix]에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생략하기로 한다. 자세한 설명은 김정훈 외(2010)에 소개되어 있다.

정치제도 · 상황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제도를 사용하여 (1)의 Probit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X_i$ 에 재정제도와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되는데, (1)의 추정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첫 번째 열에 포함된 재정제도 관련 변수들을 보면 <표 2>의 경우와는 달리 복합지수(composite index)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 변수들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예산 절차상의 분류를 이용한 것으로, 예산제도들을 절차에 따라 편성-승인-집행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포함된 제도들을<sup>12)</sup> 기준으로 복합지수를 작성한다. 이러한 단계별 복합지수들 이외에 대리인 방식의 제도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대리인 지수, 그리고 예산안의 형식이나 재정목표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들도 포함하였다.

재정제도 변수들과의 관계에서는 (7)의 specification을 이용하여 재정제도들에 적절한 통제방식과 실제 이상적 통제방식과의 괴리를 추정하여  $DBs_i = Y_i - \widehat{P}(Y_i=1)$ 와  $DBa_i = |Y_i - \widehat{P}(Y_i=1)|$ 를 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한다.

〈표 3〉 적정통제모형과 재정제도와와의 관계

모형 $dF/dx_i$	(1)	(2)	(3)	(4)	(5)	(6)	(7)	(8)
대리인지수(종합)	2.358 (0.004)							
대리인지수 (집행제외)		1.228 (0.033)	1.282 (0.023)	1.441 (0.003)				
계약 방식 지수			-0.579 (0.279)					
편성단계 종합지수					1.233 (0.005)	0.801 (0.050)	2.274 (0.000)	0.475 (0.380)
집행단계 종합지수		1.573 (0.009)	1.928 (0.001)	1.799 (0.014)	1.654 (0.026)	1.726 (0.020)	2.709 (0.009)	1.348 (0.051)
재정목표 종합지수	-0.332 (0.329)	-0.241 (0.495)						
예산안 형식 종합지수	-0.936 (0.077)	-0.896 (0.133)	-0.849 (0.167)					
PAYGO방식의 예산안변경						0.117 (0.080)	0.216 (0.011)	0.154 (0.016)
다년도 예산목표				-0.167 (0.085)	-0.157 (0.091)	-0.170 (0.057)	-0.440 (0.003)	
예산목표의 시계				0.134 (0.342)	0.116 (0.411)	0.159 (0.244)	0.469 (0.013)	0.188 (0.142)
예산안의 정부차입 포함							-0.454 (0.000)	-0.258 (0.002)
Obs.N	35	35	35	35	35	35	35	35
Pseudo R-square	0.2838	0.3602	0.3705	0.3643	0.3561	0.4208	0.652	0.4892
Correctly Specified	80.0%	77.1%	80.0%	77.1%	71.4%	82.9%	88.7%	82.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p-value

정치제도·상황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제도를 사용하여 (1)의 Probit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12) 편성단계에는 재무장관의 안전 설정 능력, 예산기준의 범위, 부처 장관과의 협의 구조 등을, 승인단계에서는 의회의 수정제한 정도, PAYGO방식의 수정 여부, 내각 불신임과의 연계 여부, 총지출에 대한 일괄 투표 여부 등을, 그리고 집행 단계에는 재무장관의 집행정지 권한 여부, 이전가능성 정도, 예산 변경 가능성 정도 등의 제도적 측면들이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정훈 외(2010) 참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괴리들, 즉 제도의 여러 측면들이 이상적인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재정성과 지표들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라. 두 번째 단계: 재정성과와 적정통제방식에서의 괴리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상적인 통제방식과 각 국가의 정치와 재정 측면의 여러 제도적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Probit모형을 통해 추정했다. 이 추정된 괴리를 이용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괴리들, 즉 제도의 여러 측면들이 이상적인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재정성과 지표들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우선 모형 설명을 위해 재정성과와 관련된 자료들 중 재정수지(기초수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비록 자료의 한계로 인해, 3개 연도의 자료를 pooling해서 분석하지만, 원인과 결과 간의 시간적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수지를 단년도와 과거 3개년도( $t, t-1, t-2$ ) 평균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즉, 다음의 회귀모형을 추정하는데,

$$B = D\beta_D + X\beta_X + e \tag{2}$$

종속변수인  $B$ 에 단년도 재정성과변수들 뿐만 아니라 과거 3년치 평균을 살펴본다. 국가별 · 연도별 강한 이분산성으로 인해, 추정 결과의 p-value를 위한  $t$ -값은 HAC estimator를 이용한 결과를 첨부하였다.

기존의 재정성과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 실증 연구들은 주로 재정성과 변수( $B$ )가 여러 제도 변수들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고의 회귀 모형 (2)에는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별 제도 요인들( $X$ )에 추가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통제 방식의 괴리( $D$ )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적 통제방식과 정치상황 혹은 재정제도들이 형성하는 조합과의 괴리는 부호가 있는 경우와 절대치의 두 가지 형태가 사용 가능하다. 두 경우의 해석상 차이는 부호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정치상황들의 부호가 있는 괴리( $DP_{s_i}$ )의 경우는 이상적인 통제방식에 비해 정치상황들의 상대적인 편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DP_{s_i} > 0$ 인 경우는 정치상황들이 이상적 통제방식인 대리인 방식에 비해 계약 방식 방향으로의 편향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DP_{s_i} < 0$ 인 경우는 이상적인 통제방식인 계약 방식에 비해 정치상황들은 대리인 방식의 편향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절대값의 경우는 단순히 이상적인 통제방식으로부터의 괴리 정도로 해석된다. 여러 모형들에서 살펴본 결과, 이상적 통제방식과의 괴리의 절대값은 단년도보다는

3개년 평균치에 있어 재정성과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치상황에서 구성한 괴리에 비해 재정제도 측면에서의 괴리는 그리 큰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여기의 분석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부호가 있는 경우, 이상적인 통제방식이 무엇이나에 따라 계수의 해석이 달라지므로, 통제방식 더미변수( $Y_i$ )와 함께 사용한다. 즉, 재정수지와 경제성장률에 대한 관계의 경우,  $DPs_i$ 와  $DPs_i \times Y_i$ 의 두 변수를 포함시키고, 그 계수들을 각각  $\beta_1$ 과  $\beta_2$ 라고 하면,  $\beta_1 > 0, \beta_2 < 0, \beta_1 + \beta_2 < 0$ 의 결과<sup>13)</sup>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통제방식이 대리인 방식인 경우,  $DPs_i$ 는 양(+의 값을 가지고  $Y_i = 1$ 이므로, 이상적 방식에서의 괴리가 재정수지/경제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beta_1 + \beta_2$ 로 쓸 수 있고, 앞 절의 이론적 논의는 이 부호가 음(-)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상적 통제방식이 계약 방식인 경우는,  $DPs_i$ 가 음(-)의 값을 가지고  $Y_i = 0$ 이므로, 이상적 방식에서의 괴리가 재정수지/경제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beta_1$ 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부호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추정결과가 정리된 <표 4>를 살펴보면, 추정된 효과가 이론적 논의에서 유추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의 추정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를 포함한 과거 3개년의 평균 재정수지나 정부부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상적 통제방식의 구분과 상관없이 괴리의 정도(절대값)가 커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치 상황적으로 본 괴리(DPa)뿐 아니라, 재정제도의 조합에서 살펴본 괴리(DBa) 또한 동일하게 재정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률에의 영향을 살펴보면, 단년도 재정수지나 정부부채의 경우에 비해 DPs의 계수와  $Y \times DPs$ 의 계수의 절대값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Ps의 계수가 계약 방식의 적정통제방식에서의 괴리가 가지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DPs와  $Y \times DPs$ 의 계수의 합이 대리인 방식의 적정통제방식에서의 괴리가 가지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적어도 수치적으로는’ 계약 방식인 경우의 괴리가 대리인 방식인 경우의 괴리에 비해 경제성장에 더 큰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14)</sup>.

현재를 포함한 과거 3개년의 평균 재정수지나 정부부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상적 통제방식의 구분과 상관없이 괴리의 정도(절대값)가 커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된다. 경제성장률에의 영향을 살펴보면, ‘적어도 수치적으로는’ 계약 방식인 경우의 괴리가 대리인 방식인 경우의 괴리에 비해 경제성장에 더 큰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13) 부채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 부호는 반대 방향 즉  $\beta_1 > 0, \beta_2 < 0, \beta_1 + \beta_2 < 0$ 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4) 반대로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경우는 대리인 방식에서의 괴리가 약 2배가량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표 4〉 제도적 요인이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과변수 설명변수	Balance	Balance_3	Debt	Debt_3	GDP_gr
DP <sub>A</sub>		-1.765 (0.091)		24.097 (0.077)	
DP <sub>S</sub>	3.698 (0.004)		-31.926 (0.047)		2.459 (0.026)
Y*DP <sub>S</sub>	-11.780 (0.000)		86.845 (0.001)		-2.797 (0.049)
DB <sub>A</sub>		-2.063 (0.026)		29.974 (0.040)	
재정준칙지수	1.403 (0.000)	0.797 (0.037)			
재정준칙지수 순위지표					1.143 (0.018)
재정준칙지수 변화지표			-22.528 (0.000)	-21.031 (0.000)	
내각의 구성형태		0.489 (0.036)			
집권정당 의석점유율				130.969 (0.010)	
행정부 정당구성지수			40.070 (0.017)		
선거전 협약빈도					2.733 (0.145)
집행단계 종합지수			-18.114 (0.000)	-29.089 (0.000)	
예산안의 일반규칙	0.543 (0.003)		-5.236 (0.077)		
PAYGO방식 예산변경		0.373 (0.083)	6.412 (0.003)	4.091 (0.018)	
재무장관의 지출집행차단					0.230 (0.085)
예산안의 특별기금 포함		-0.939 (0.005)			
과거2년 실질경제성장률	0.720 (0.000)		-3.712 (0.037)		0.688 (0.000)
과거2년 부채수준	0.044 (0.000)				
경제개방도		0.019 (0.000)			0.017 (0.022)
Constant	-2.531 (0.021)	1.330 (0.110)	107.221 (0.000)	44.036 (0.092)	-3.960 (0.048)
Obs.N	29	31	31	29	30
Adjusted R-square	0.796	0.603	0.715	0.697	0.769
Prob>F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p-value  
 2. DP<sub>A</sub>, DB<sub>A</sub>는 각각 정치, 재정측면에서 이상적통제방식과의 괴리에 절대값을 취한 것으로 괴리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괴리의 상대적 크기만을 의미  
 3. C\*DP<sub>S</sub>는 이상적통제방식과의 괴리에 이상적인 통제방식 더미를 곱한 교차항

### III. 결론

앞에서 살펴본 재정제도 및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는 각각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그 자체로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방향은 이러한 제도들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국가 제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제도를 따라 이루어지는 정부의 행위, 즉 재정정책이 만들어내는 '성과'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실증분석을 위해,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살펴보던 개별 제도적 요인들에 추가하여 제도적 환경을 이루는 구성제도들의 조합에 주목하여, 이러한 조합이 적절한 통제방식에서 벗어나는 괴리(乖離)의 정도를 추정하고, 이 괴리의 정도가 재정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정치제도 ·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바람직한(이상적인) 예산운영/통제 방식(위임방식 또는 계약 방식)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구성요소들이 이러한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식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적 비효율성이 커지는데,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비효율성이 재정성과에 뚜렷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경우 위임방식이 바람직한 국가에서 계약 방식 형태의 법과 제도를 많이 갖추고 있을 경우에 그 반대의 조합(계약 방식의 이상적 통제방식과 위임방식의 제도와 법)에 비해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경우에는 반대로 계약 방식이 바람직한 국가에서 이를 법제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PF

실증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정치제도 ·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바람직한(이상적인) 예산운영/통제 방식(위임방식 또는 계약 방식)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구성요소들이 이러한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식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김정훈 · 박형수 · 김종면 · 최준욱 · 김현아 · 홍승현, 『헌법과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2010
- 홍승현, 「재정성과의 제도적 접근」, 『재정포럼』 제164호, 한국조세연구원, 2010a
- \_\_\_\_\_, 「재정정책의 포괄적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KIPF 재정동향』 창간호, 한국조세연구원, 2010b
- \_\_\_\_\_, 『EU 국가들의 재정관리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2010c

- Armingeon, K., P. Potolidis, M. Gerber, and P. Leimgruber, *Comparative Political Dataset 1960–2007*,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Berne, 2009
- EU, *Public Finances in EMU 2009*, European Commission, 2009
- Hallerberg, M., R. Strauch, and J. von Hagen, “The Design of Fiscal Rules and Forms of Governance in European Union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3, 2007, pp. 338~359
- \_\_\_\_\_, *Fiscal Governance i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9
- Hallerberg, M. and J. von Hagen, “Electoral Institutions, Cabinet Negotiations, and Budget Deficits within the European Union,” in J.M Poterba and J. von Hagen(eds). *Fiscal Institutions and Fiscal Performance*, NBER/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von Hagen, J., “Budgeting Procedures and Fiscal Performance in European Communities,” *Economic Papers* #96, 1992
- \_\_\_\_\_, “Fiscal Rules, Fiscal Institutions, and Fiscal Performance,”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vol.33, no.3, 2002, pp. 263~284
- von Hagen, J. and I. Harden, “National Budget Processes and Fiscal Performance,” *European Economy* No. 3, 1994, pp. 311~418

## [부 록]

### Appendix: 변수 소개

#### A. 1. 첫 번째 단계

- 내각의 정치적 구성: 내각의 정치적 성향(우파, 좌파, 사회주의 등)을 지수화한 것으로 0~5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사회주의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흔히 Schmidt Index로 알려져 있다.
- 내각의 구성형태: 내각의 구성 정당 수, 소수·다수 여부, 연합 여부 등에 대한 변수이다.
- 행정부 정당구성지수: 내각에서 임의로 두 명을 뽑았을 때, 그 둘이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일 확률로, 행정부가 얼마나 많은 정당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 선거분산도 지수: Rae Index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선거에 있어 정당간 비중의 분산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 의회분산도 지수: 역시 Rae Index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의회 좌석에 있어 정당간 비중의 분산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 선거구크기의 역수: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선거구 크기는 '의석수/선거구의 수'로 계산한다.
- 투표와 의석의 불균형 지수1: 선거에 있어서 실질정당수( $1/(1-\text{선거분산도지수})$ )와 의회에 있어서 실질정당수( $1/(1-\text{의회분산도지수})$ )의 차이로 나타낸다.
- 투표와 의석의 불균형 지수2: Gallagher Index로 알려진 것으로, 투표결과와 의석비율의 상관관계를 지수화한 것이다.
- 정치제도적 구속지수: 중앙정부에 가해지는 제도적 구속력에 대한 복합지수로, EU의 회원여부, 연방제 여부, 헌법개정기 어려움 여부, 강력한 양원제 여부, 중앙은행의 독립성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 대리인지수(종합), 대리인지수(집행제외): Hallerberg et al.(2009)의 자료로, 예산의 편성·승인·집행의 각 단계의 지표들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 계약 방식지수: 역시 Hallerberg et al.(2009)의 자료로, 장기재정목표와 관련된 지표와, 집행단계의 일부지표들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 편성단계종합지수: 예산 편성단계의 4가지 측면, 즉 일반적 제한의 유무, 재무장관의 안전설정 능력, 예산 기준의 범위, 내각내 협의구조를 포괄하는 종합지표이다.
- 집행단계종합지수: 예산 집행단계의 6가지 측면, 즉 재무장관의 집행정치 능력, 현금 한도의 유무, 집행 승인의 필요성, 이전 가능성, 이월가능성, 예산변경의 용이성을 포괄하는 종합지표이다.
- 재정목표종합지수: 재정의 목표설정과 관련된 4가지 측면, 즉 다년도 목표의 유무, 목표의 시계, 계획의 성격, 그리고 강제성 정도에 대한 종합지표이다.
- 예산안형식종합지수: 예산안의 5가지 측면, 즉 특별기금이 포함 여부, 단일 예산문서 여부, 투명성 평가 결과, 국민제정과의 연계 여부, 정부차입의 포함 여부에 대한 종합지표이다.
- PAYGO방식의 예산안 변경: 의회에서 예산안의 변경시 PAYGO방식의 규칙이 적용되는 여부를 지수화한 것이다.
- 다년도 예산목표: 다년도 예산 목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 예산목표의 시계: 예산 목표가 어느 정도 시계(horizon)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 예산안의 정부차입 포함: 예산안이 정부 차입까지 포함하는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A. 2. 두 번째 단계

- 재정준칙지수: 홍승현(2010c)에 나타난 EU의 Fiscal Governance Database자료로, 재정준칙과 관련된 여러 측면-법적인 위치, 감독기관, 강제 메커니즘, 적용 범위 등-을 종합한 종합지표
- 재정준칙지수 순위지표: 재정준칙지수를 크기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어 강도에 따라 {0,1,2}의 값을 부여한 지표
- 재정준칙지수 변화지표: 재정준칙지수를 시간에 따라 변화 정도로 나누어 변화의 크기에 따라 {-1,0,1}로 나눈 지표
- 선거전협약빈도: 선거 전에 정당간 협약이 일어나는 빈도로 연합정권을 통한 계약 방식의 통제과 관련된 지표이다.
- 예산안의 일반규칙: 예산안 편성시 일반적인 제한의 유무·형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재무장관의 지출집행 차단: 예산과정에서 대리인으로서의 재무장관의 권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예산안의 특별기금 포함: 의회의 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안의 포괄범위에 대한 지표이다.
- 경제개방도: 무역거래의 시가평가액(수출액+수입액)을 proxy로 사용한다.

# 조세·재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과학화 필요성: 재정패널 자료 특성에 대한 논의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heonjaes@kipf.re.kr)

## I.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었고,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분배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분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재정안정화와 급격한 복지재정수요로 인한 재정확충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과 수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 개편을 통한 조세·재정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사후적인 평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2008년부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국민들의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재정패널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조세·재정정책 연구의 과학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정책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패널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재정패널자료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조세·재정정책 연구의 과학화를 위해 연구자들이 숙지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국가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조세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재정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재정패널 데이터는 현재 3회에 걸친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2011년에는 네 번째

2008년부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국민들의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재정패널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조세·재정정책 연구의 과학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패널조사는 1회성의 횡단면조사에 비하여 응답부담과 작성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사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그 패널에 포함된 가구와 가구원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3월에는 데이터 가공이 완료된 1차년도 자료와 2차년도 자료가 한꺼번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패널데이터는 1회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횡단면적인 단위의 표본(개인, 가구, 기업 등)을 추출하여 이 패널표본들을 복수년도에 걸쳐서 관찰·조사하는 것으로서 패널에 포함된 표본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갖는다. 최근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패널조사 종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5월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진행중인 패널 데이터는 1998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노동패널을 포함하여 19종에 달하는데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3개의 신규패널이 작성되었다<sup>1)</sup>.

패널조사는 1회성의 횡단면조사에 비하여 응답부담과 작성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사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그 패널에 포함된 가구와 가구원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조사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본의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응답자의 강력한 응답 거절, 표본가구의 이사 등으로 인한 추적 실패, 병원입원·해외이민·1인 가구 사망으로 인한 가구 소멸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패널에서 특히 2차년도 조사에서 표본 이탈이 가장 많이 관측된다. 이렇듯 2차년도 조사에서 표본의 이탈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조사년도 초기에 매년 반복 조사가 필요한 패널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응답 거절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 가구의 경우 조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한 추적 실패의 사유가 많이 관측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사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응답자의 패널조사 이해도가 증가하고 패널에 속한 표본의 응답자와 면접원 간에 충분한 신뢰가 쌓이게 되어 응답 거절의 확률이 감소하고 추적 실패로 인한 이탈이 감소하여 점차 안정적인 패널 유지율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표본의 이탈은 패널 데이터의 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이탈이 무작위로 발생한다면 표본의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으나 어떠한 특정 패턴에 따라 이루어진다면(예를 들어 고소득층 혹은 저소득층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패널의 대표성에 손상을 입게 되어 패널에 포함된 가구만 대상으로 한 분석은 의도하지 않은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패널 조사에서 이탈률을 최소화해서 패널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 9개의 정부출연기관, 4개 공단 및 재단 등 총 13개 기관에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노동부, 복지부, 교과부 등 관련부처가 위탁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다.

재정패널은 가구와 개인의 조세부담 및 복지혜택에 관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 조사표에서 연간 소득, 연금·보험 지출 및 소득,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역을 모든 응답자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는 것도 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재정패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 신고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정패널을 다른 자료와 차별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이다. 그러나 세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패널보다 표본가구가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재정패널은 1차년도 조사가구 중 12.7%가 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패널에서 이탈한 가구들 중에는 강력거절 사유로 이탈한 가구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에는 가구 정보가 국세청 등 세금관련 기관에 전달될 것을 우려하여 2차 조사를 거절한다고 대답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비해 납부한 세금이 적은 가구가 패널에서 이탈할 유인이 더 크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올바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재정패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재정패널에서 이탈한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본이탈에 어떤 체계적인 패턴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재정패널에서는 2차년도 표본이탈가구와 관련하여 다른 패널들과는 다른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된다. 재정패널은 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원표본 가구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표본을 발굴하여 패널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패널조사는 원 표본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표본의 대체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조사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표본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새로운 표본을 추가하거나 표본을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재정패널과 동일한 방식의 2차년도 표본 대체는 해외의 패널 조사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2차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발굴된 표본은 3차년도 조사이후에도 원표본 가구와 더불어 재추적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재정패널 3차년도 조사를 마치고 난 시점에서 원표본 유지율은 83.2%로 집계되었다. 대체표본을 포함할 경우 2차년도 표본의 3차년도 유지율은 92.8%에 달하여 매우 높은 유지율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표본 유지율 측면에서만 본다면 대체표본의 발굴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체표본과 원표본이 매우 상이한 집단이어서 대체표본이 원표본을 올바르게

재정패널은 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원표본 가구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표본을 발굴하여 패널에 포함시켰다. 재정패널과 동일한 방식의 2차년도 표본 대체는 해외의 패널 조사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본고는 재정패널에서 2차년도 이탈가구 표본에 대해 실시하였던 대체표본 가구 발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대체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높은 유지율은 무의미할 것이다.

본고는 재정패널에서 2차년도 이탈가구 표본에 대해 실시하였던 대체표본 가구 발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정패널 2차년도에서 이탈한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본이탈에 어떤 체계적인 패턴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후 조사에서 표본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강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차년도에 새롭게 포함된 대체표본이 원표본과 얼마나 유사한 가구들로 구성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재정패널만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절에서 표본이탈과 관련된 해외 및 국내 주요 선행연구를 간단히 소개한다. 제Ⅲ절에서는 각각 국내외 주요 패널의 패널유지 현황을 살펴보고 제Ⅳ절에서 표본대체 및 추가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한다. 2차년도 패널에서 이탈한 가구들에 대한 특성 분석과 2차년도 패널에 포함된 대체표본에 대한 원표본과의 비교분석은 각각 제Ⅴ절과 제Ⅶ절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제Ⅷ절에서는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재정패널이 성공적인 패널조사사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대체표본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II. 표본이탈에 관한 선행연구

패널데이터에서 표본이탈에 관한 연구는 Hausman and Wise(1979)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소득이 높은 응답자들의 이탈률이 높은 것을 관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Fitzgerald et al.(1998) 또한 PSID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에서 고소득층 가구의 이탈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Lillard and Panis(1988)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혼유지율이 표본이탈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이와 반대로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같은 결혼상태의 변화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Zabel(1998)은 면접원의 영향과 인터뷰 시간이 표본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동일한 면접원이 계속적으로 면접을 시행하고 인터뷰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표본에서 이탈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Hill and Wills(2001) 역시 Zabel(1998)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러한 두 연구 결과는 응답자의 사회경제학적인

요인과 더불어 면접자의 자질 및 면접과정 역시 표본이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표본이탈을 최소화하는 조사방식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패널의 표본이탈에 관한 해외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국내 연구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대우패널의 표본이탈을 분석한 김대일 외(2000)와 노동패널에서 표본이탈이 가구 소득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상호(2005)의 연구 정도를 찾을 수 있다. 김대일 외(2000)는 두 패널데이터 모두에서 남성의 이탈률이 여성의 경우보다 높고 조사가 거듭될수록 남녀 모두의 이탈률이 하락하며 이탈률의 성별 격차도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고학력자일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표본이탈률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패널에서 이탈한 가구의 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젊은 가구주, 고학력 가구주일수록 표본이탈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며 가구주가 전년도에 실업상태에 있었을 경우에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탈한 가구의 가구주가 전년도 취업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의 이탈률이 자영업자의 경우보다 높았으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이탈률과 유사한 정도의 높은 이탈률을 나타냈다.

노동패널을 사용한 소득불평등 및 빈곤 관련 연구들에서 고소득 가구 표본의 이탈로 인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과대 추정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상호(2005)는 Wooldridge(1995) 모형을 사용하여 노동패널에서 표본이탈이 가구 소득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체계적인 비무작위적 이탈이 나타났지만, 고소득 가구뿐 아니라 가구주가 실업상태인 가구의 이탈확률 또한 높아져 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 표본이탈이 가구 소득 추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Ⅲ. 국내외 주요패널의 패널 유지율 현황

패널데이터 제공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표본이탈을 최소화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라고 할 수 있는 노동패널의 경우 10차년도까지 원표본 유지율이 77.1%에 달하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사 성공률로서 그 품질 면에서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은 노동패널의 원표본 유지율을 각국의 대표적인

패널의 표본이탈에 관한 해외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국내연구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패널조사는 2차년도와 3차년도 조사에서 이탈률이 높게 나타나고 조사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유지율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가구패널조사와 비교하고 있다<sup>2)</sup>. 패널조사는 2차년도와 3차년도 조사에서 이탈률이 높게 나타나고 조사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유지율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표 1>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잘 관찰된다. 노동패널의 경우 3차년도 조사시점까지의 원표본 유지율이 80.9%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후 4차년도 조사부터는 표본 유지율이 77%선에서 유지되었다. 해외의 주요 패널도 3차년도 시점에서 13% 이상의 원표본 이탈을 경험하였고 조사차수 증가에 따라 이탈률의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표 1>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노동패널 원표본 유지율

(단위: %)

	미국 PSID	독일 GSOEP	영국 BHPS	노동패널
2차년도	89.0 (1969)	89.9 (1985)	87.7 (1992)	87.6 (1999)
3차년도	86.3 (1970)	86.0 (1986)	81.5 (1993)	80.9 (2000)
4차년도	83.7 (1971)	84.9 (1987)	79.9 (1994)	77.3 (2001)
5차년도	81.2 (1972)	81.3 (1988)	76.8 (1995)	77.3 (2002)
6차년도	78.8 (1973)	79.2 (1989)	77.3 (1996)	77.2 (2003)
7차년도	76.6 (1974)	78.4 (1990)	76.0 (1997)	78.0 (2004)
8차년도	74.1 (1975)	78.9 (1991)	74.1 (1998)	77.5 (2005)
9차년도	71.2 (1976)	78.4 (1992)	72.1 (1999)	77.8 (2006)
10차년도	69 (1977)	78.8 (1993)	70.4 (2000)	77.1 (2007)

자료: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7)

아래의 <표 2>는 노동패널에 추가하여 복지패널, 재정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등 현재 국내에서 조사중인 가구패널 중에 3차년도 이상 조사가 완료된 패널조사 가구의 원표본 유지율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패널의 경우 2차년도 조사에서 92.1%의 가장 높은 유지율을 보였고 3차년도 조사에서도 86% 이상

2) <표 1>에 포함된 해외패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IV절을 참조.

의 유지율을 나타내어 표면적으로는 원표본 유지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sup>3)</sup>.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복지패널의 경우 2006년 1차년도 조사의 표본 추출이 동 연구원에서 같은 해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표본가구 중 일부 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추출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1차년도 조사에서 인구센서스를 표집틀로 활용하는 다른 패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1차년도 조사시점과 2차년도 조사시점 간의 간격이 6개월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년도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sup>4)</sup>.

복지패널을 제외한 다른 가구 패널에서는 2차년도 조사에서 유사한 정도의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10% 이상의 이탈이 관찰되었다. 또한 해외 패널의 경우에서처럼 3차년도 조사에서 이탈률의 증가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이 유지된다면 복지패널의 경우 80% 이상의 패널 유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여타의 국내 패널의 경우에서도 70% 중후반의 원표본 유지율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패널조사는 종단적 분석이 중요한 연구목적이므로 기존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에만 집중해 왔으며, 원표본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표본의 대체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2〉 국내 주요가구패널 3차년도 조사까지의 원표본 유지율

(단위: %)

	노동패널	복지패널	재정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년도	87.6 (1999)	92.1 (2007)	87.7 (2009)	89.0 (2007)
3차년도	80.9 (2000)	86.7 (2008)	83.2 (2010)	83.0 (2009)

자료: 각 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 IV. 표본 추가 및 교체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조사

기존의 패널조사는 종단적 분석이 중요한 연구목적이므로 기존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에만 집중해 왔으며, 원표본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표본의 대체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조사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표본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새로운 표본을 추가하거나 표본을 교체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본절에서는 국내외 패널에서 표본의 추가 및 교체를 실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68년에 조사가 시작된 미국의 PSID<sup>5)</sup>(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3) 복지패널은 4차년도 조사에서도 86.3%의 원표본 유지율을 기록하였다.

4) 김미곤 외 (2006)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참조.

5) PSID web-site에서 참조. "http://psidonline.isr.umich.edu/Guide/Overview.html"

독일에서 인구 및 소득 통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GSOEP의 경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여러 번의 추가 표집이 이루어졌다.

의 경우 처음에는 빈곤층 1,872가구를 포함하는 총 4,802가구의 원표본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Latino(Mexico, Puerto Rico, and Cuba) 이민자에 대한 의미 있는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2,043가구를 추가 추출하였다. 미국 노동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면 가운데 하나인 이민에 의한 노동력 구성 변동을 감안하여 볼 때 1차년도에 이들이 지나치게 과소 추출되었고 또한 그 이후의 이민자들에 대한 표본추출도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았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Latino 이민자들이 아시아 이민자를 포함한 전체 이민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점과 패널사업의 재정상 이유로 인해 Latino 표본은 1995년 PSID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97년 PSID 조사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원표본과 분가가구로 이루어진 8,800여 순수 표본(core sample)가구의 수를 6,168가구로 줄였다. 또한 1968년 이후 미국으로 이민 온 441개의 이민가구(Immigrant Refresher Sample)를 새롭게 원표본 가구에 추가하였다. 이후 1999년에는 70개의 이민가구를 추가하여 새롭게 6,434가구로 구성된 PSID의 조사가 이루어 졌고 이때부터 격년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독일에서 인구 및 소득 통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GSOEP<sup>6)</sup>(German Socio-Economic Panel)의 경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여러 번의 추가 표집이 이루어졌다. 1984년 1차년도 조사 당시에는 서독지역만을 대상으로 독일인 표본(표본 A) 4,528가구와 터키, 유고슬라비아, 스페인, 이탈리아인 가구주로 구성된 외국인표본(표본 B) 1,395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그 후 통일 6개월 전인 1990년 6월에 동독지역으로 표본을 확대하였다. 1990년에 시작된 동독 거주자 표본은 외국인이 제외된 독일인 표본(표본 C)으로만 구성되었다가 1994·1995년도에 이민자 표본(표본 D)이 추가되었다. 이민자 표본은 표집시기에 따라 D1(236가구)과 D2(295가구)로 나뉘며, 가구원 중에서 1984년 이후 외국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가구로 구성되었다. 1998년에는 기존의 표본들과는 독립적으로 서독인 표본(표본 A와 유사한 방식)의 추가가 이루어진 표본 E가 추출되었다. 2000년에는 독일인과 이주자 표본을 모두 포함하는 표본 추가(표본 F)가 다시 한 번 이루어졌다. 이후 마지막으로 2002년에 소득분포의 양 극단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지나치게 과소 표집되었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표본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 중에서 홀리스와 같은 극빈계층은 추적조사가 어려울 뿐더러 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추가표집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월소득이 7,500DM(3,835유로) 이상인 가구들에서 '표본 G'에 대한 추가표집이 이

6) GSOEP에 관한 조사내용은 강석훈(1998)과 이상호(2006)를 참조하였다.

루어졌으며, 2003년부터는 이 중에서도 4,500유로 이상인 가구들만을 선별하여 추적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표본 추가의 결과 2000년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 이상의 표본이 조사되고 있다. 아래의 <표 3>은 GSOEP의 표본 특성을 잘 정리하여 요약하고 있다.

PSID, GSOEP, BHPS에서는 조사 차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표본이 추가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표 3> GSOEP의 표본 특성

표본	시작연도	가구	개인	표 본
A, B	1984	5,921	16,205	서독 거주자(A: 독일인가구, B: 외국인가구)
C	1990	2,179	6,131	동독에 거주하는 독일인 가구
D1	1994	236	733	1984년 이후 서독으로 이주한 가구
D1/D2	1995	522	1,665	
E	1998	1,067	2,470	서독에 거주하는 독일인 가구
F	2000	6,052	14,525	독일에 거주하는 독일인 및 이주민 가구
G	2002	1,224	3,538	월소득이 7,500DM(3,835유로)이상인 가구

영국에서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추세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1991년부터 BHPS<sup>7)</sup>(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조사를 시작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해 우편번호 지역(Postcode sector)을 1차 표본단위(Primary Sampling Unit)로 설정하고 이로부터 7,331가구의 표본가구를 2단 층화통계추출방법으로 추출하였는데 1991년 1차년도 실제 응답가구의 수는 5,130가구에 달하였다. 1999년부터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지역 표본이 추가되었다. 원래 이들 지역의 표본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 수를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정부정책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를 잉글랜드와 비교하려는 이유도 있었다. 이로써 기존에 400~500가구에 그쳤던 이 지역 표본에 2000가구가 추가로 표집되었다. 다음으로 2001년에는 북아일랜드 표본 약 2,900가구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BHPS는 2001년부터 영국의 전 지역을 포괄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PSID, GSOEP, BHPS에서는 조사 차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표본이 추가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표본의 추가표집과 더불어 표본의 교체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었다. 1993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대표적인 가구 패널인 SLID<sup>8)</sup>(The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의 경우 노동력조사(LFS, Labor Force Survey)의 표본에서 추출한 15,000가구와 이들 15,000

7) BHPS에 관한 조사내용은 강석훈(1998), 금재호a(1998), 이상호(2006)를 참조하였다.

8) SLID에 관한 조사내용은 금재호b(1998)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표본 설계의 주된 이유는 표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본 일부가 탈락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내용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가구에 속한 개인 31,000명으로 제1차 패널이 구성되었다. SLID는 아래의 <표 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996년부터 매 3년마다 조사대상자가구의 절반 정도가 교체되도록 패널이 설계되었다. 1995년까지 초기 3년 동안은 표본 수의 변화 없이 제1차 패널만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996년에 LFS에서 추출한 제2차 패널이 기존의 제1차 패널에 추가되었다. 따라서 1998년까지의 3년 동안은 제1차 및 제2차의 2개 패널이 동시 유지되었고 1998년을 마지막으로 6년 동안 유지되던 제1차 패널이 탈락하게 되었다. 1999년에 제3차 패널이 새로 참가하게 됨에 따라서 1999년부터 SLID는 제2차 및 제3차의 두 개의 패널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표본 설계의 주된 이유는 표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본 일부가 탈락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내용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응답가구의 부담을 감안하여 패널이 교체되는 시기를 6년으로 정하였다.

<표 4> SLID의 표본설계

1993	1996	1999	2002	2005
제1차 패널				
	제2차 패널			
		제3차 패널		

1970년부터 가구의 소비지출, 소득, 일자리정보, 자산 및 부채 보유현황을 조사해온 미국의 CES<sup>9)</sup>(Consumption Expenditure Survey) 조사의 경우에는 면접조사의 경우 동일한 가구를 분기에 한 번씩 5회에 걸쳐 조사하고 새로운 표본으로 교체하는 rotating panel 조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CES는 자동차, 내구재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비지출의 경우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일가계부(dairy) 작성 방식의 조사방식으로 식료품, 담배구입비, 주류구입비 등의 세부 소비지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각각의 가구는 연속된 이주에 걸쳐 두 번의 일일가계부(dairy)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 매일 모든 가구 소비지출 항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표본이 교체된다. 또한 면접타계식과 일일가계부 작성조사 대상은 해당 표본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즉 각각 별도의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패널의 경우에도 표본 추가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노동패널의 경우 6차년도 조사시점(2003. 2)에서 표본 추가를 고려한 적이 있었다. 표본유지율

9) CES web-site에서 참조. "http://www.bls.gov/cex/csxann08.pdf"

이 6차년도 조사부터 7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서울·경기지역의 표본 이탈률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그리고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가구만을 표본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표본 5,000가구의 20%선인 1,000가구 추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6차년도 조사를 마친 시점에서 원표본 유지율이 77.2%로 안정적인 유지에 성공하였다고 판단하여 표본 추가 계획을 철회하였다<sup>10)</sup>. 결국에는 2009년 12차 조사에서 농촌지역을 새롭게 포함하고 그동안 표본 이탈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새로운 표본을 발굴하여 총 1,415가구의 추가 표본이 한국노동패널연구의 표본에 포함되었다.

국내패널 중에 노동패널의 표본 추가 이전에 표본의 추가표집을 경험한 패널조사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4년부터 과일, 채소, 과채, 축산물 지출 현황 등을 조사하는 한국소비자패널을 구축하였는데 2007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표본을 추가한 경험이 있다. 1차 조사의 표본추출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일산/분당)에 한정하였는데 2007년에는 각 지역에 표본을 추가하였고, 2010년에는 춘천과 충주지역의 표본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노동패널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조사 차수가 짧은 국내패널에서는 한국소비자패널 이외에 표본을 추가하거나 교체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재정패널은 세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패널을 포함한 여타의 다른 패널보다 응답자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 V. 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 분석

서론에서 전술하였듯이 재정패널은 세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패널을 포함한 여타의 다른 패널보다 응답자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표 5>는 재정패널 2차년도에서 이탈한 원표본에 대한 지역별, 이탈 사유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의 마지막 열은 2차년도 이탈가구 수를 1차년도 원표본 가구 수로 나누어서 구한 값이다. 1차년도 총 5,014 가구 중 2차년도에 618가구가 이탈하여 총이탈률은 12.3%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9%의 이탈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대구, 울산의 순으로 이탈률이 높았다. 충북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이탈률이 도 지역의 이탈률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탈 사유별로 살펴보면 강력거절의 비중이 63%로 가장 높았고 이사 등으로 인한 추적실패가 24%, 그밖에 병원입원, 해외 이민, 1인 가구 사망으로 인한 가구 소멸 등의 사유가 13% 정도로 나타났다. 우

<sup>10)</sup>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의 간담회 자료(2003. 2) 참조

1차년도 총 5,014 가구 중 2차년도에 618가구가 이탈하여 총이탈률은 12.3%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9%의 이탈률을 보여 가장 높았다.

려한 바와 같이 강력거절로 인한 가구 이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강력거절로 인해 이탈한 가구 수가 많았고 대구지역에서는 강력거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5〉 재정패널 2차년도 가구 이탈 현황

(단위: 가구, %)

	강력거절	추적실패	기타 <sup>1)</sup>	이탈가구수	1차년도 가구수	이탈률 <sup>2)</sup>
서울	124	55	25	204	1075	19.0
부산	24	6	14	44	385	11.4
대구	28	1	0	29	285	10.2
인천	28	8	4	40	246	16.3
광주	10	3	1	14	185	7.6
대전	10	8	2	20	181	11.0
울산	10	3	0	13	140	9.3
경기	76	34	14	124	876	14.2
강원	4	4	2	10	175	5.7
충북	16	7	6	29	171	17.0
충남	10	4	2	16	205	7.8
전북	15	2	1	18	255	7.1
전남	6	0	1	7	255	2.7
경남	16	7	1	24	290	8.3
경북	15	5	6	26	290	9.0
합계	392	147	79	618	5014	12.3

주: 1) 기타에는 장기 부재, 약속 반복 위반, 비정상적인 응답자, 1인 가구 사망, 병원 및 기타 요양원입원, 해외이민 등이 포함됨

2) 이탈률: 이탈가구수/1차년도 가구수

자료: 2차년도 재정패널

〈표 6〉은 원본유지가구와 이탈가구 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구 경제적 특성을 가구이탈 유형별로 1차년도에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역진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하고 있다. 먼저 패널(a)는 가구주 중심으로 2차년도에 유지된 가구와 이탈한 가구들이 1차년도에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보여준다. 패널(b)는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그리고 가구 자산에서 가구 부채를 제외한 가구 순자산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고, 패널(c)는 가구 소득세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패널(d)에서는 가구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마지막으로 패널(e)에서 면접 과정에 직접 관련된 특성을 비교한다.

## 1.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추적실패 및 기타의 사유로 이탈한 가구의 경우 2차년도 패널에 유지된 가구에 비해 가구원 수에서 0.5명 정도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두 배 정도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력거절 사유로 이탈한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구원 수가 원표본 유지가구보다 0.2명 많았고 1인 가구 비율도 5% 정도 작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표본이탈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강력거절의 사유처럼 응답자의 선택에 의한 표본이탈현상과 추적실패 및 사망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자발적인 이탈현상을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추적실패 및 기타사유로 인한 이탈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인 가구 중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주의 연령은 추적실패의 경우 제일 젊었는데 이는 젊은 연령대의 가구에서 직장 변경 및 전근 등으로 인한 이사 사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주의 교육 연수는 강력거절과 추적실패 이탈가구에서 1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제2항에서 논의하는 가구 소득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은 추적실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은 강력거절 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근으로 인한 이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경우 추적실패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보다 이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세금관련 질문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주 미취업자 비율에서도 강력거절로 인한 이탈가구에서 제일 작게 추정되고 있는데 이 역시 취업중인 가구주들의 설문에 대한 민감도가 응답거절에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비율과 미취업 가구주 비율에서 발견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차이가 표본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2. 가구 경제적 특성

기타사유로 이탈한 가구를 제외하면 패널에서 이탈한 가구들의 연평균 가구 소득이 패널에 유지된 가구들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거절 사유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추적실패 및 기타사유로 인한 이탈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인 가구 중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소득의 크기가  
강력저절 이탈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그룹에서 가구주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로 이탈한 가구는 원표본 유지가구보다 1차년도 가구 소득이 944만원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적실패로 이탈한 가구의 가구 소득도 패널 유지가구보다 330만원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sup>11)</sup>. 가구 소득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따로 살펴보면 강력저절의 경우 이 두 항목에서 대부분의 소득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업소득의 크기가 강력저절 이탈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그룹에서 가구주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적실패 가구의 경우 임금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근로소득에서는 원표본 유지가구보다 415만원 높게 나타난 반면 비근로소득은 오히려 패널 유지가구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적실패 사유로 이탈한 가구들의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고, 따라서 축적된 자산의 크기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설명은 각 그룹 간에 보이는 가구 순자산의 크기 비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강력저절 이탈 가구의 가구 순자산은 평균적으로 패널 유지가구보다 1억원이 높았으나 추적실패 가구의 경우 오히려 2,000만원 정도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에서도 패널 유지가구와 패널 이탈가구 간에 비슷한 패턴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가구 소득의 차이에서와 같이 강력저절 이탈가구와 추적실패 이탈가구의 1차년도 소비지출이 월평균 30만원 높았으며 이는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 그룹에서 1차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한 비율만을 따로 살펴보면 강력저절사유 이탈가구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고 추적실패와 기타사유 이탈가구에서는 패널 유지가구의 비율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그룹에서 해당급여 수급비율이 같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P-value=0.113)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사유로 이탈한 가구들의 경우 전반적인 가구 경제 상황이 패널 유지가구보다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구 소득과 가구 자산이 높았던 가구일수록 패널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고, 비자발적 이탈가구들에서도 임금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가구근로소득이 패널 유지가구의 그것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적실패의 확률 또한 가구 소득에 비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소득층 이탈현상은 결국 가구 납부 소득세에 대한 정보 또한 패널이탈로 인해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제3항에서 한다.

11) 두 집단의 가구 소득이 같다는 가설은 5% 유의 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였다(P-value=0.2864).

12) 추적실패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 자산 규모, 가구 비근로소득의 크기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였으나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분산이 크게 나타난 관계로 가구 소득 및 가구 순자산의 크기가 표본 유지가구와 같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3. 가구 소득세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현황

가구원 중 2007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패널 유지가구와 패널 이탈가구 사이에서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비율은 강력거절과 추적실패로 이탈한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만으로 한정하여 실제로 가구에서 납부했다고 보고한 소득세의 크기를 비교하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지라도 원표본 유지가구들과 패널 이탈가구들 간에 평균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구납부 세금이 높을수록 패널에서 이탈할 확률이 일률적으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 소득 결정세액이 보고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가구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 유효 가구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추적실패가구의 경우 원표본 유지가구보다 1.5배 높았고 강력거절 이탈가구와 원표본 유지가구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유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적실패가구와 강력거절 이탈가구 간에 종합소득세 납부가구비율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유효 가구 소득세율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가구들이 2차년도 설문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이탈했을 가능성(강력 거절)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1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가구비율에서도 패널 유지가구와 패널 이탈가구 간에 커다란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패널에 유지된 가구들에서는 28.9%의 제출비율을 나타낸 반면 강력거절 이탈가구들에서는 11.3%, 추적실패 가구들에서는 7.69%라는 저조한 제출비율을 보였다<sup>13)</sup>. 즉 2007년 귀속 가구소득세가 높을수록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고 이러한 가구들이 2차년도 패널에서 이탈확률이 높았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2항의 가구 소득과 본항의 가구 소득세에 관하여 관찰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득이 높은 가구들의 소득증빙서류 제출비율이 저조하였고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가구들이 결국 2차년도 패널에서 이탈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4. 1차년도 가구설문 응답자의 특성

재정패널 조사기관인 TNS에 따르면 2차년도 가구설문을 시작할 때 1차년도 가구설문에 응답한 가구원을 우선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가구납부 세금이

높을수록 패널에서 이탈할 확률이 일률적으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표 6)에서 보고하고 있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율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1차년도 가구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경제적 특성이 2차년도 조사 가구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1차년도 가구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경제적 특성이 2차년도 조사 가구이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강력거절 이탈가구의 경우 1차년도 가구설문에 가구주가 응답했던 비율이 제일 낮았던 반면 가구주 배우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응답자의 비율 역시 강력거절 사유 이탈가구에서 가장 크게 관측되었는데 이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1차년도 설문에서 가구주의 배우자인 아내가 가구설문에 응답하였으나 2차년도 설문에는 가구주인 남편이 응답을 거절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취업자 비율 또한 이 가구그룹에서 가장 작게 나타난 것도 가구주 배우자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위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응답자의 연령은 추적실패 가구에서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기에 속하는 가구들이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설문 응답자의 교육 연수는 패널에서 이탈한 가구에서 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제1항에서 보았듯이 가구주의 교육 연수가 패널에서 이탈한 가구에서 높았던 것과 더불어 가구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설문응답으로 인한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설문 응답자가 1차년도에 근로소득을 보고한 경우만을 따로 살펴보았을 때 응답자의 근로소득이 높았던 가구에서 가구이탈 확률이 높았다. 이 역시 교육 연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1차년도 가구설문 응답자가 가구주의 배우자인 여성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였던 경우 2차년도 설문에 응답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5. 가구설문 면접시간 및 동일 면접원 투입비율

제2절에서 밝혔듯이 Zabel(1998)은 동일한 면접원이 계속적으로 면접을 하고 인터뷰 시간이 짧을수록 표본에서 이탈할 확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재정패널의 경우 1차년도 가구설문에 걸린 평균 시간은 모든 그룹에서 동일하게 관측되고 있어서 1차년도 면접시간의 차이가 2차년도 패널 이탈에 미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가구설문에 소요된 시간(30분)이 2차년도 설문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길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동일한 면접원을 투입한 비율을 살펴보면 패널 유지가구에서는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적실패 가구의 경우 70% 정도로 낮게 보고되었다. 이는 동일 면접원 투입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서 패널유지 제고방안으로 Zabel (1998)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뒷받침하고 있다<sup>14)</sup>.

〈표 6〉 재정패널 1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한 2차년도 이탈가구 유형별 비교

	원표본 유지		강력거절이탈		추적실패이탈		기타이탈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a) 가구원 수	2.973	0.019	3.181	0.064	2.449	0.101	2.468	0.142
가구주 연령	49.96	0.217	48.15	0.651	40.24	1.151	51.37	2.005
가구주 교육연수	11.64	0.069	12.48	0.221	13.06	0.297	11.06	0.645
1인 가구 비율	14.9%		9.7%		29.3%		30.4%	
여성 가구주 비율	18.3%		17.9%		24.5%		29.1%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	50.7%		51.5%		55.1%		48.1%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	28.2%		31.4%		24.5%		21.5%	
가구주 미취업자 비율	20.7%		17.1%		19.7%		30.4%	
(b) 가구 소득	3370	43.3	4314	201.7	3700	305.6	3069	337.6
가구 임금근로소득	2104	38.4	2671	181.9	2307	244.2	1859	293.6
가구 사업소득	891.6	31.3	1207	140.8	1104	264.5	895	246.5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166.6	1.75	196.3	6.54	197	11.68	155.4	14.97
가구 순자산	19070	565	29115	2717	17055	2980	23248	516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비율	4.87%		2.3%		5.44%		6.33%	
근로소득 연말정산가구비율	40.6%		42.6%		37.9%		38%	
종합소득세 신고가구비율	13.1%		18.9%		18.6%		13.9%	
(c) 가구 소득세 (>0)	157.3	7.82	198.1	27.07	193	68.67	182.2	44.32
		[1436]		[115]		[44]		[23]
유효 가구 소득세율	2.62%	[1427]	2.75%	[114]	4.02%	[43]	2.85%	[22]
소득증빙서류 제출가구비율	28.9%	[2260]	11.3%	[231]	7.69%	[78]	10.5%	[38]
(d) 가구주 응답자 비율	49.9%		39.3%		53.7%		57.1%	
가구주 배우자 응답자 비율	46.0%		54.3%		44.2%		33.8%	
여성 응답자 비율	65.1%		72.4%		70.1%		58.4%	
응답자 취업자 비율	49.5%		45.4%		51%		50.6%	
응답자 연령	48.24	0.225	46.08	0.663	38.62	1.109	47.38	2.073
응답자 교육연수	11.25	0.067	12.08	0.216	12.69	0.303	11.64	0.582
응답자 근로소득	2288	43.9	2554	214.9	2654	303.6	3029	435.7
		[2083]		[171]		[73]		[36]
(e) 면접시간(분)	29.69	0.186	29.53	0.690	29.48	0.771	29.43	1.534
동일 면접원 투입비율	91.2%		86.%		70.1%		84.8%	
표본수	4396		392		147		79	

주: 1) 대괄호 안의 숫자는 관측치수

2) 패널 (c) 의 유효 가구 소득세율=가구 소득세/가구 소득

3) 패널 (c) 의 소득증빙서류 제출가구비율은 증빙서류 제출 해당 가구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14) 이와 관련된 분석으로 KLIIPS 9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면접원이 응답자의 응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신선옥 (2008)의 연구가 있다.

가구 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탈한 가구들의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이 패널에 유지된 가구들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 V 절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탈 사유별로 살펴보면 강력거절 사유로 이탈한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원표본 유지가구보다 많았고 1인 가구 비율도 낮게 추정된 반면 추적실패 및 기타의 사유로 이탈한 가구의 경우 패널에 유지된 가구에 비해 가구원 수가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추적실패 및 기타사유로 인한 이탈가구에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인 가구 중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은 추적실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은 강력거절 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구 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탈한 가구들의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이 패널에 유지된 가구들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의 크기가 강력거절 사유 이탈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그룹에서 가구주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이탈가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비율이 높았으나 이와는 반대로 소득증빙서류 제출률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이 높은 가구들의 소득증빙서류 제출비율이 저조하였고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가구들이 결국 2차년도 패널에서 이탈확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1차년도 가구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 가구설문 응답자가 가구주의 배우자인 여성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였던 경우 2차년도 설문에 응답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넷째, 면접과정에 직접 관련된 특성을 비교하여보면 동일 면접원을 투입한 경우 패널에 유지될 확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 Ⅵ. 대체가구 특성 분석

재정패널은 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원표본 가구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표본을 발굴하여 패널에 포함시켰다. 2차년도 조사에서의 대체표본은 1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대체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즉, 확률 추출법에 의거하여 이탈한 표본(n)이 속해 있던 조사구 내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rightarrow n-1$  순서로 체계적인 대체를 실시하였다. 즉, 최초의 대체표본 가구의 조사 실패 시 리스트의 다음 순서( $n+1$ )에 위치한 가구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같은 방법으로도 조사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초 표본가구의 앞 순서( $n-1$ )에 위치한 가구를 조사한다. 이렇게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본의 대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러한 표본대체 계획이 실사 과정에서 면접원들의 원표본가구 추적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패널조사에서 원표본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 등으로 추적이 어려움이 있거나 접촉이 용이하지 않아 방문일정을 쉽게 계획할 수 없는 가구들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접 대상 가구에서 재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최대한의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면접원이 재조사에 실패할 경우 상대적으로 면접이 용이한 대체가구를 조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원표본의 재접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유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인을 최소화하고자 면접원에게는 2차년도 조사 시작 당시에 대체표본 조사 계획을 알리지 않고 원표본 유지에 치중하도록 하다가 실사 중반 시점에 가서야 대체표본 추출과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이러한 조사 방식으로 면접원의 원표본 추적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지만 대체표본 조사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면접원 입장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실사 기간 내에 대체표본에 대한 면접을 완료하기 위해 대체표본으로 할당된 가구(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가 아닌 면접이 용이한 가구를 찾을 유인이 있고 따라서 대체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 랜덤화의 원리에 의한 표본의 대표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된 대체표본가구의 평균 대체횟수는 3.3 회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의 대체횟수는 최초의 원표본을 구성할 때와 비교하여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절에서는 대체표본 발굴과정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체된 표본이 이탈한 원표본과 얼마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즉, 원표본의 이탈 원인별로 원표본과 대체표본을 비교하여 전반적인 대체표본의 유사성을 평가하고 이탈 원인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점이 발견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원표본 가구와 대체표본 가구들의 가구주 위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구 소득, 가구 소비지출 그리고 가구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전반적인 크기를 비교하고 세부 항목별로 특히 차이가 발생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2차년도에 이탈한 원표본의 경우 1차년도 자료인 2007년 자료에 대한 통계치이고 대

대체표본 발굴과정에서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표본의 가구원 수가 0.215명 많은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며 대부분 동거하는 자녀 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체표본의 경우 2008년 자료에 대한 것이므로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항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07년 실질 값으로 변환하였다<sup>15)</sup>.

### 1. 가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아래의 <표 7>은 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원표본 가구와 대체표본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구주 중심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표본의 가구원 수가 0.215명 많은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며 대부분 동거하는 자녀 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가구주의 경우 2차년도(2008년)에 이탈한 원표본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에 가구주 지위에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구주의 연령<sup>16)</sup>을 비교하여 보면 대체표본의 가구주가 약 1.54세 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의 교육 연수의 경우 대체표본 가구주의 교육 연수가 0.68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의 연령의 차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탈표본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약 3%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여성 가구주 비율은 이탈가구에서 5% 이상 높았는데 특히 추적실패 가구와 기타 이탈 사유의 가구에서 그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표본 가구에서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과 미취업자 비율의 차이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의 경우 대체가구에서 5.7% 높았는데 여성가구주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났던 추적실패와 기타 대체의 경우에서 이 비율 역시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 미취업자 비율은 대체표본 가구에서 이탈표본 가구에 비해 3%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는 기각하지 못하였다. 가구주의 자영업자 비율은 오히려 이탈가구에서 2.8%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가구주 종사자 지위에 대한 통계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가구에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비율이 높게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의 결과를 요약하면 대체표본 가구는 원표본 이탈가구에 비해 가구원 중에 자녀의 비중이 높았고 이로 인해 가구원 수가 많았다. 가구주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가 많았고 교육 연수가 높았으며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5)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경제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가정이 전제된 분석방법이다.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1년간의 경제성장률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16) 2008년 가구주의 연령은 2007년 가구주 연령에 한 살을 더하여 계산하였다.

〈표 7〉 가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탈사유	강력거절		추적실패		기타		전체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가구원 수	3.181 (0.064)	3.235 (0.064)	2.449 (0.101)	2.905 (0.105)	2.468 (0.142)	3.038 (0.133)	2.916 (0.053)	3.131 (0.051)
가구원 자녀수	1.186 (0.051)	1.301 (0.050)	0.741 (0.074)	1.143 (0.079)	0.734 (0.098)	1.253 (0.103)	1.023 (0.040)	1.257 (0.039)
가구주 연령	49.15 (0.651)	47.1 (0.648)	41.24 (1.151)	43.13 (1.028)	52.37 (2.005)	47.01 (1.352)	47.68 (0.577)	46.14 (0.512)
가구주 교육연수	12.48 (0.221)	12.95 (0.204)	13.06 (0.297)	13.49 (0.276)	11.06 (0.645)	13.27 (0.440)	12.44 (0.179)	13.12 (0.156)
1인 가구 비율(%)	9.69	11.7	29.3	21.8	30.4	12.7	17.0	14.2
여성 가구주 비율(%)	17.9	16.1	24.5	14.3	29.1	16.5	20.9	15.7
가구주 임금근로자비율(%)	51.5	54.1	55.1	68.0	48.1	55.7	51.9	57.6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	31.4	29.3	24.5	19.0	21.5	20.3	28.5	25.7
가구주 미취업자 비율(%)	17.1	15.8	19.7	9.52	30.4	22.8	19.4	15.2
표본 수	392	392	147	147	79	79	618	618

주: 1.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  
 2. 가구주 임금근로자에는 일용직 근로자 포함  
 자료: 1~2차년도 재정패널

대체표본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가 많았고 교육 연수가 높았으며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높았다.

## 2. 가구 소득

본항에서는 가구 경제적 특성을 대표하는 가구 소득에 관하여 원표본 이탈 가구와 대체표본 가구를 비교하였다. 〈표 8〉은 이탈 사유별로 가구 소득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 차이와 총소득의 크기를 보여준다. 강력거절로 이탈한 가구를 대체한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이 533만원 작게 추정되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가구주의 연령 차이(2세)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117만원의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구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차이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추적실패와 기타사유로 이탈한 가구에서는 가구 소득의 규모에서 통계적으

추적실패와 기타사유로 이탈한 가구에서는 가구 소득의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평균 수준에서는 대체표본의 가구 소득이 높았다.

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평균 수준에서는 대체표본의 가구 소득이 높았다. 소득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대체가구에서 근로소득의 비율이 높고 사업소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서 추적실패와 기타사유로 대체된 가구에서는 원표본 가구에 비해 근로자 가구가 보다 많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의 소득 항목에서는 평균적인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표준오차 역시 크게 추정되었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가구의 연간 가구 소득이 원표본 이탈가구의 가구 소득에 비하여 249만원 낮게 추정되었으나 두 집단의 평균 가구 소득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였다. 강력거절로 이탈한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들로 대체되었으나 그 외 사유로 이탈한 가구에서는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들로 대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패널 이탈가구와 대체가구 사이에서 가구 소득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대체된 가구가 원표본 가구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소득의 평균회귀효과(mean reversion) 또한 가구 소득 규모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전년도에 소득이 높았던 가구는 다음 해에는 소득에 있어서 부(-)의 충격(negative income shock)을 받게 될 확률이 높고 전년도에 소득이 낮았던 가구는 그와 반대되는 충격을 받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평균회귀효과로 인해 1차년도 조사에서 가구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높았던 이탈가구들이 2차년도 재조사에 포함되었더라도 가구 소득은 전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강력거절 사유로 인한 이탈의 경우 원표본가구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대체된 가구의 해당 소득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가구들이 대거 이탈하였고 대체표본에서 이러한 가구를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였음을 의심하여 볼 수 있다. 이는 원표본 이탈가구와 대체표본 가구의 가구 자산 규모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제5항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표 8〉 가구 소득

(단위: %, 만원)

이탈사유	강력거절		추적실패		기 타		전 체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표본구분								
근로소득	2671 (181.9)	2309 (135.6)	2307 (244.2)	2821 (217.5)	1859 (293.6)	2442 (258.8)	2481 (135.0)	2445 (105.9)
사업소득	1207 (140.8)	1096 (119.6)	1104 (264.5)	663 (134.4)	895 (246.5)	741 (205.7)	1143 (113.4)	950 (87.0)
금융소득	36.88 (13.19)	30.6 (13.21)	9.929 (7.35)	1.024 (1.02)	2.564 (2.56)	4.342 (4.34)	26.17 (8.61)	20.4 (8.50)
부동산임대소득	172.1 (63.64)	57.86 (18.84)	27.66 (20.01)	39.63 (24.68)	51.79 (34.35)	1.489 (1.49)	122.9 (41.17)	46.45 (13.37)
사회보험소득	56.84 (13.93)	63.56 (15.86)	33.79 (22.13)	15.94 (13.73)	46.82 (21.49)	69.35 (50.65)	50.18 (10.64)	53.26 (12.46)
사적이전소득	42.07 (14.27)	25.72 (4.60)	117.5 (28.20)	269.7 (206.5)	94.72 (30.49)	27.17 (12.40)	66.44 (11.95)	82.47 (48.03)
공적이전소득	12.95 (4.63)	46.67 (7.13)	33.91 (13.42)	24.12 (11.46)	22.66 (10.63)	38.42 (17.56)	19.08 (4.52)	40.39 (5.74)
기타소득	158.4 (24.37)	143.1 (42.87)	207.5 (40.08)	25.79 (10.24)	214.4 (47.71)	128.5 (102.0)	177.1 (19.15)	114.1 (30.51)
가구 총소득 <sup>1)</sup>	4314 (201.7)	3782 (151.0)	3700 (305.6)	3865 (301.6)	3069 (337.6)	3465 (259.5)	4010 (154.2)	3761 (123.8)
표본 수	392	392	147	147	79	79	618	618

주: 1. 항목별 소득을 모두 더하고 민간 보험급여 및 연금 소득, 그 외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임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

자료: 1~2차년도 재정패널

평균회귀효과로 인해  
1차년도 조사에서  
가구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높았던 이탈가구들이 2차년도  
재조사에 포함되었더라도  
가구 소득은 전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 3. 가구 소득세

재정패널은 가구원용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거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현황과 결정세액을 조사하고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제Ⅳ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가구비율에서 패널 유지가구와 패널 이탈가구 간에 커다란 차이가 관찰되었고 가구 소득세의 크기 또한 평균적으로 원표본 유지가구들과 패널 이탈가구들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납부세금이 높을수록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고 이러한 가구들이 패널에서의 이탈 확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패널의 표본유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체표본  
가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이  
포함된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증빙서류 제출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9〉는 2007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원표본 가구의 2007년도 가구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와 대체표본 가구의 2008년 가구 소득세 납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체표본 가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이 포함된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표본 가구에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비율이 자영업자 가구주 비율보다 높게 포함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가구 소득세의 크기를 비교하면 원표본 이탈가구에서 소득세를 약 57만원 더 납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표 8〉에서 보인 가구 소득 크기의 차이가 가구 소득세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표 9〉에서 특히 원표본 가구와 대체표본 가구 사이에 소득증빙서류 제출비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체표본 가구에는 소득증빙서류 제출 해당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수도 증가하였고(347 → 394), 그러한 가구에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한 비율도 이탈가구 원표본의 1차년도 해당비율(10.4%)보다 2.7배 높은 수치(24.7%)를 보였다. 이 비율은 2차년도 패널에 유지된 가구의 1차년도 제출비율(28.9%)과 비슷한 수준으로 패널 조사에 적극적인 가구가 대체표본에 많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3차년도 조사에서도 이들 가구의 높은 유지율을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대체표본 가구는 3차년도 조사에서 93%의 높은 유지율을 기록하여서 패널 유지 확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소득증빙서류 제출 여부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17) 10% 유의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value=0.1008)

〈표 9〉 가구 납부 소득세

(단위: %, 만원)

이탈사유	강력거절		추적실패		기타		전체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표본구분								
근로소득연말정산비율	42.6	46.9	37.9	57.7	38.0	55.8	40.9	50.6
종합소득세 신고비율	18.9	18.0	18.6	14.1	13.9	13.0	18.2	16.5
가구 납부 세금 <sup>1)</sup>	198.1	138.8	193	139.4	182.2	131.9	194.8	137.8
	(27.07)	(36.36)	(68.67)	(36.28)	(44.32)	(43.81)	(24.35)	(24.78)
	[115]	[113]	[44]	[40]	[23]	[30]	[182]	[183]
증빙서류 제출비율 <sup>2)</sup>	11.3	26.0	7.69	27.4	10.5	34.0	10.4	27.4
	[231]	[246]	[78]	[95]	[38]	[53]	[347]	[394]
표본 수	392	392	147	147	79	79	618	618

주: 1)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가구(가구 소득세)이만을 대상으로 계산하였음.

2) 소득 증빙서류 제출 해당 가구만을 대상으로 계산하였음.

1. 괄호안 숫자는 표준오차

2. 대괄호안 숫자는 관측치임.

자료: 1~2차년도 재정패널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대체가구의 가구 소비지출 또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 소득의 차이에 더하여 가구의 인적 구성원의 차이도 소비지출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가구 소비지출

재정패널은 가구설문의 “가계지출현황” 부문에서 세부 항목별 가구 소비지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가전제품 구입비, 교통비, 의류 및 잡화구입비, 화장품 및 이비용비가 조사 항목에 추가되었는데 〈표 10〉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공통적으로 질문한 세부 항목에 대한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과 세부 항목의 합으로 계산된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금액의 평균 금액을 보여 준다<sup>18)</sup>.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대체가구의 가구 소비지출 또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 소득의 차이에 더하여 가구의 인적 구성원의 차이도 소비지출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가구 구성원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원표본 가구에서 보건의료비가, 대체표본 가구에서는 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원표본 이탈가구에서 보건의료비의 지출 확률이 높고 자녀 수가 많은 대체표본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목별 소비지출 금액을 합하여 구한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에서는 원표본 이탈가구와 대체가구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18) 연간 지출 금액을 조사한 경우 12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지출한 액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평균 금액을 계산하였다.

〈표 10〉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

(단위: %, 만원)

이탈사유	강력거절		추적실패		기타		전체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주거비	22.83	21	29.98	27.13	22.53	23.29	24.51	22.75
	(0.70)	(0.76)	(2.09)	(2.99)	(2.48)	(1.64)	(0.75)	(0.89)
통신비	16.84	14.72	15.7	14.32	12.4	13.98	16	14.53
	(0.63)	(0.43)	(0.85)	(0.63)	(0.97)	(1.04)	(0.47)	(0.34)
식료품 구입비	43.64	43.21	40.96	40.57	38.23	39.98	42.31	42.17
	(1.41)	(1.45)	(2.63)	(2.03)	(3.13)	(3.50)	(1.16)	(1.13)
외식비	16.91	14.94	16.14	15.49	13.08	13.89	16.24	14.94
	(0.95)	(0.72)	(1.29)	(0.93)	(2.03)	(1.38)	(0.72)	(0.54)
공교육비	14.87	18.4	14.34	20.57	9.063	24.85	14	19.73
	(1.56)	(1.45)	(2.21)	(2.46)	(2.34)	(8.20)	(1.16)	(1.50)
사교육비	23.35	26.55	19.98	24.7	16.71	23.64	21.7	25.74
	(2.28)	(2.24)	(3.84)	(3.78)	(5.27)	(4.28)	(1.84)	(1.77)
문화생활비	5.825	5.419	5.852	5.318	4.432	4.89	5.653	5.327
	(0.40)	(0.43)	(0.65)	(0.53)	(0.73)	(0.59)	(0.31)	(0.31)
여행·스포츠 레저비	8.527	5.719	9.172	6.202	9.054	3.019	8.748	5.488
	(0.91)	(0.58)	(1.67)	(1.25)	(2.20)	(0.55)	(0.76)	(0.48)
보건의료비	13.56	8.968	9.774	9.27	12.21	9.026	12.53	9.047
	(1.55)	(0.93)	(1.53)	(1.85)	(4.97)	(1.98)	(1.23)	(0.78)
차량유지비	23.37	22.35	17.84	20.79	17.72	21.84	21.34	21.91
	(1.20)	(1.16)	(1.99)	(1.61)	(2.61)	(5.78)	(0.96)	(1.11)
주류비	2.384	1.749	3.299	1.842	3.513	1.779	2.746	1.775
	(0.30)	(0.18)	(0.52)	(0.21)	(0.99)	(0.46)	(0.26)	(0.14)
담배구입비	3.458	2.715	3.564	3.033	2.894	3.095	3.411	2.839
	(0.24)	(0.21)	(0.36)	(0.35)	(0.49)	(0.46)	(0.18)	(0.17)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 <sup>1)</sup>	196.3	183.1	197	187.3	155.4	180.7	191.4	183.8
	(6.54)	(5.87)	(11.68)	(9.20)	(14.97)	(14.53)	(5.36)	(4.70)
표본 수	392	392	147	147	79	79	618	618

주: 1) 세부 소비지출 항목을 모두 더한 수치임  
 1.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  
 자료: 1~2차년도 재정패널

## 5. 가구 자산 및 부채

본절의 제2항에서 가구 소득에 관하여 살펴보던 중에 강력거절 사유로 이탈한 원표본가구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대체된 가구의 해당 소득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원표본가구와 대체표본가구의 부동산 자산 규모 차이를 의심하였는데 <표 11>은 이를 확인하여 준다. 특히 강력거절 이탈가구를 대체한 가구의 자가 소유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원표본 이탈가구의 평균(63.3%)뿐 아니라 재정패널 2차년도 전체 표본 평균(60.45%)과도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산 규모의 차이(8,600만원)로 이어졌다.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에서는 이탈가구와 대체가구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구 총부채는 이탈가구에서 평균 1,100만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가구 총자산에서 가구 총부채를 차감한 가구 순자산은 7,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강력거절 가구를 대체한 가구는 원표본의 자산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다수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적실패 사유로 이탈한 가구를 대체한 가구는 자가 소유비율에서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자동차 보유비율은 오히려 1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자산이 평균 6,2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오차도 크게 추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sup>19)</sup>. 추적실패 사유의 경우에는 그밖에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면 두 집단 간에 가구 순자산 규모에서 차이가 없었다.

기타사유로 이탈한 경우에는 강력거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표본에서 자가 소유비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자산 규모에서도 평균 6,3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추적실패의 경우와 같이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표준오차 역시 크게 추정되어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부동산 자산 규모의 차이는 결국 가구 순자산 크기의 차이로 이어져 이 경우에도 원래의 가구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작은 가구들로 대체가 이루어졌다.

강력거절 및 기타 사유로 이탈한 가구의 순자산보다 낮은 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로 대체가 이루어져 원표본 이탈가구와 대체가구 사이에서 가구 자산 규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같은 조사구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rightarrow n-1$  순서로 체계적인 대체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고소득층이 밀집한 조사구에서 자가 소유보다는 전세의 주거형태를 가진 가구들이 대체표본에 보다 많이

강력거절 사유로

이탈한 원표본가구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대체된

가구의 해당 소득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발견하였다.

19) 추적실패 가구의 대체표본에서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을 포함하는 총자산의 평균이 오히려 부동산 자산의 평균보다 작게 추정된 것은 부동산자산이 매우 높은 소수의 표본에서 다른 자산에 대한 결측치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체표본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면 원표본이 추적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소득세에 관한 분석에서 과소추정의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즉,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은 비슷하더라도 입주 형태에 따라 거주하는 주택의 자산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반영된 결과이다.

제5항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가구 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동산 자산 규모의 차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체표본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면 원표본이 추적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소득세에 관한 분석에서 과소추정의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분석에서도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1〉 가구 자산 및 부채

(단위: 백만원, %)

이탈사유	강력거절		추적실패		기타		전체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이탈가구	대체가구
자가 소유비율	63.3	48.5	32.0	38.8	58.2	40.5	55.2	45.1
자동차 보유비율	68.6	68.1	51.7	70.1	49.4	58.2	62.1	67.3
부동산자산 <sup>1)</sup>	305.33 (25.52)	223.36 (16.48)	165.15 (27.66)	223.54 (31.54)	233.85 (51.22)	170.89 (38.04)	262.96 (18.80)	216.94 (13.74)
금융자산	29.62 (4.90)	31.36 (3.56)	22.77 (3.74)	22.47 (3.33)	20.68 (3.87)	16.56 (2.60)	26.84 (3.27)	27.31 (2.42)
기타자산	4.957 (2.40)	0.8994 (0.37)	14.48 (13.62)	0.00196 (0.00)	1.013 (0.73)	0.6167 (0.60)	3.862 (1.56)	0.6504 (0.25)
가구 총자산	335.1 (28.07)	250.56 (17.98)	198.79 (34.49)	218.5 (28.34)	258.55 (53.82)	187.24 (38.36)	292.79 (20.87)	234.91 (14.14)
금융부채	28.39 (4.53)	18.1 (2.29)	16.48 (7.03)	17.9 (4.11)	18.18 (5.74)	12.93 (2.85)	24.25 (3.41)	17.4 (1.79)
비금융부채	15.14 (2.30)	14.46 (2.49)	12.62 (4.49)	14.27 (3.93)	7.559 (3.86)	16.4 (5.27)	13.57 (1.87)	14.66 (1.95)
가구 총부채	43.52 (5.12)	32.6 (3.63)	29.1 (8.38)	31.31 (5.83)	25.74 (6.90)	29.46 (6.52)	37.82 (3.92)	31.9 (2.81)
가구 순자산 <sup>2)</sup>	291.15 (27.17)	220.07 (16.37)	170.55 (29.80)	174.85 (21.32)	232.48 (51.61)	160.65 (34.91)	254.88 (19.84)	201.84 (12.42)
표본 수	392	392	147	147	79	79	618	618

주: 1) 부동산자산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 혹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임

2) 가구 순자산=가구 총자산-가구 총부채

1.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

자료: 1~2차년도 재정패널

제Ⅶ절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표본가구는 2차년도에 이탈한 원표본가구에 비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다소 낮고 교육연수와 자녀 수는 다소 높은 가구들로 구성되었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낮고 가구주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집단이 재정패널에 보다 많이 포함되었다. 가구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표본은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측면에서 비교적 원표본의 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탈 사유에 따른 차이 역시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자가 보유 비율이 원표본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원표본이 갖고 있던 부동산 자산 규모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강력거절로 이탈한 가구를 대체한 가구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가구의 체계적인 이탈이 발생하였는데 대체가구를 포함한 분석이 이러한 이탈에 의해 발생하는 편의를 올바르게 수정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구 소득 및 소득세에 관한 단기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접근한다면 소득증빙서류 제출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대체표본을 패널 분석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표본의 자가 보유비율 및 순자산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도 사라져서 매우 유용한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표본의 자가 보유비율 및 순자산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도 사라져서 매우 유용한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Ⅶ. 결론

재정패널 2차년도 조사에서 1차년도에 조사된 원표본가구 중에 618가구의 이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재정패널은 기존의 패널과는 달리 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를 대체하는 새로운 표본을 발굴하여 조사하였다. 2차년도 대체표본 발굴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연구자들이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다른 자료와는 차별화된 재정패널만의 고유 특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재정패널 2차년도에서 이탈한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본이탈에 어떤 체계적인 패턴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원표본 이탈가구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구의 유사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재정패널 2차년도에서 이탈한 가구는 1차년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

대체표본은 소득증빙서류 제출비율에서 이탈표본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패널 조사에 협조적인 집단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성향은 3차년도 조사에서 93%라는 높은 유지율의 결과로 이어졌다.

로 할 때 가구 패널 유지가구에 비하여 소득과 소비지출, 종합소득세 신고비율이 높았던 반면 소득증빙서류 제출률은 낮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동일 면접원을 투입한 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패널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증빙서류 수집률을 향상시키고 면접원의 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대체표본가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대체표본은 원표본과 비교하여 젊은 가구로 구성되었고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수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구 구성원의 차이가 가구 소비지출 행위에 영향을 미쳐 교육비에 대한 지출비율이 높고 보건의료비 지출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체표본의 부동산자산 규모가 원표본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가구 소득항목 중 부동산임대소득 크기의 차이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 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세부 소비지출 항목별 분석을 하거나 가구 자산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할 때 대체표본의 사용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체표본은 소득증빙서류 제출비율에서 이탈표본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패널 조사에 협조적인 집단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성향은 3차년도 조사에서 93%라는 높은 유지율의 결과로 이어졌다. 2차년도 이탈가구에는 고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이로 인해 가구 소득세의 규모가 컸던 가구들의 패널 이탈확률이 높았다. 이들 가구에서 소득증빙서류 제출비율이 매우 저조하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탈표본을 대체하는 대체표본이 가구 소득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소득증빙서류 제출률과 재조사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원표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의 크기에서 유사한 집단이 패널에 충원되었다는 점은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더하여 이들의 차후년도 이탈 확률이 낮다는 것은 패널 자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2차년도 설문 응답/거절 여부는 당해 연도 조사시점의 가구 경제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추적에 실패한 경우에도 가구에 미친 경제적 충격이 추적실패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이탈한 가구는 그러한 정보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1차년도 정보만으로 패널 이탈에 관한 결정 모형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 대체표

본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을 갖는다. 2개 년도에 걸쳐 물가상승률의 변화만을 고려하여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기초통계를 비교하는 분석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설문지 응답방식의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 가구에 미치는 고유효과(idiosyncratic shock)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이탈 확률을 추정하는 모델을 고안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체표본의 3차년도 이후 패널 유지 확률을 추정한 후 2차년도 시점에서의 표본 대체 유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량 모델을 적용한 엄밀한 분석 및 이에 근거한 대체표본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재정패널은 기존의 다른 자료와는 달리 소득증빙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한 개인과 가구에 한하여 측정오차가 없는 과세소득자료를 제공한다. 측정오차가 없는 소득자료는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탈루소득 추정에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송현재 외(2010)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가 담고 있는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면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성이라든가 사교육비 지출관련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훌륭한 연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패널 조사로서의 가치도 상승하고 또한 증빙서류 제출률 또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과 조세분야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의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기대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대체표본에 관한 기초적인 분석내용이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KIPF**

연구조사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패널 조사로서의 가치도 상승하고 또한 증빙서류 제출률 또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과 조세분야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의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석훈, 「유럽의 패널조사현황과 시사점: 가구패널조사와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1997.
- 금재호a,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 한국노동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김재호b, 「캐나다의 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김대일 · 남재량 · 류근관, 「한국노동패널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조사 표본이탈자의 특성연구」, 『노동경제논집』, Vol.23, 한국노동경제학회, 2000, pp. 1~33.
- 김미곤 · 여유진 · 이봉주 외,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남재량 · 이상호 · 최효미 외,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연구원, 2008.
- 송헌재 · 성명재 · 고선,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10-06,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신선옥,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응답자 태도에 면접원이 미치는 효과」, 『노동리뷰』, 제2008권, 1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pp. 74~82.
- 이상호, 「서구주요패널의 조사전략변화와 시사점」, 『노동리뷰』, 제2006권, 16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 \_\_\_\_\_, 「한국노동패널(KLIPS)의 표본이탈 분석」, 『노동리뷰』, 제2005권, 11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p. 66~80.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한국노동패널(KLIPS) 6차년도 조사 표본 추가(supplement) 계획」, 한국노동연구원, 2003.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사업팀, 「1차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8.
- \_\_\_\_\_, 「2차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8.
- Hausman, J. and D. Wise, “Attrition Bias in Experimental and Panel Data,” *Econometrica*, Vol.47, No2, 1979, pp. 445~473.
- Hill, Daniel, and Robert J. Willis, “Reducing Panel Attrition: A Search for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36, No3, 2001, pp. 416~438.
- Fitzgerald, John, Peter Gottschalk and Robert Moffitt, “An Analysis of Sample Attrition in Panel Data: The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33, No2, 1998, pp. 251~299.

- Lee A. Lillard and Constantijn W. A. Panis, "Panel Attrition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33, No.2, 1998, pp. 437~457.
- Wooldridge, Jeffrey, "Selection Corrections for Panel Data Models under Conditional Mean Independence Assump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Vol.68, No1, 1995, pp. 115~132.
- Zabel, Jeffrey E., "An Analysis of Attrition in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and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with an Application to a Model of Labor Market Behavio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33, No2, 1998, pp. 479~506.



# 정책토론회 리포트

-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주제발표 요약**

**I.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분석**

- 우리 사회는 국가재정을 마련하고 지출하는 정부의 활동을 통해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
  -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통해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주요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최근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할 때,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수적인 상황임
  - 납세의식을 높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사회의 모습임
- 본고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측정하고자 시행했던 두 차례의 설문조사(2008년, 2010년)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의식 수준 추이를 분석하고 있음
  - 납세의식을 조세 일반에 대해 가진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 후,
  -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납세의식을 나타내는 주된 지표인 성실납세의향 지표와 납세순응행위 지표, 보조 지표인 조세형평도 지표, 조세이해도 지표를 산출하고 있음

- **성실납세의향 지표** 납세자의 동기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겠다는 의향을 종합한 지표임
  - 성실납세의향 지표는 100점 만점에 평균 67.2점('08년)에서 70.7점('10년)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성실납세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납세순응행위 지표**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실제 및 가상의 경험들을 종합한 지표로,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와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로 구분됨
  -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 : 지난 3년간 소득누락, 매출누락, 축소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각종 탈세의 실제경험을 종합한 지표로서,
    - 100점 만점에 평균 96.7점('08년)에서 97.1점('10년)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 : 주어진 가상의 상황에 처했을 때 탈세 또는 조세회피 행위의 선택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 100점 만점에 평균 30.0점('08년)에서 31.9점('10년)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 **조세형평도 지표** 조세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임
  - 조세형평성 지표는 조세체계의 수직적·수평적·교환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반영한 지표임
  - 100점 만점에 평균 44.1점('08년)에서 45.1점('10년)으로 소폭 상승하여 조세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됨
- **조세이해도 지표** 납세자가 세금 및 관련 법규,

조세행정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종합한 보조 지표임

-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100점 만점에 평균 47.3점('08년)에서 39.8점('10년)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08년 7월부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 향후 조세제도를 개정함에 있어서 많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잦은 세법개정을 자제해야 할 것을 시사함
-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성실납세의향 지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실제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자발적인 순응행위를 하는 경우도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함
  - 이는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기 때문임
  - 탈세행위의 적발 및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상적인 납세환경에서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행하는 비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가 납세비순응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해석 하에서는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세무조사의 비율 확대 및 처벌 강화 등의 법집행 강화가 납세순응행위를 담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

## II. 공정한 사회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

- 본고에서는 공정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앞서 우선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논고를 진행하고자 함
  -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정의됨
  - 즉, 개인은 자신의 나아갈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 사회는 사회활동의 경쟁과정에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며,
  -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되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를 의미
-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사회 3대 핵심가치인 자율·공정한 경쟁과정·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조세정책을 운영
- ⇒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작, 과정, 결과에서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는 자율, 공정한 경쟁과정, 책임의 3대 핵심가치로 연결
- 자율적인 선택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조세지원제도 운용 및 소득종류 간 세부담 격차 완화
  -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위한 법에 정해진 납세의무의 준수 및 성실납세 우대
  - 결과에 책임지되 이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보장 및 자발적 기부 장려
-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 자율적인 선택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용

- 조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국가 정책상 필요하나 과용 및 오용될 경우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객관적 통계자료 구축 및 평가를 통해 지원목적 달성 여부,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기준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 판단

■ **소득종류에 따른 세부담 격차 완화** 소득종류 간 형평성 문제는 조세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로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부담 격차, 투자·저축의 행태에 따른 세부담 격차는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유도함
- 소득종류 간 형평성 문제는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개선방안 모색

■ **탈세 방지를 통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위해 법에 의해 정해진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탈세를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탈세 만연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고 특정 대상에 대한 과세상 차별의 제도화를 조장
- 최근 감소하고 있는 세무조사제도 비율을 제고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정성 확보

■ **체납 감축을 통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탈세와 함께 체납도 법에 의해 정해진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위해 체납을 축소하려는 노력 필요

- 체납 증가는 납세협력의식을 저하시키고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침
- 체납징수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 필요

■ **성실납세자 우대를 통한 공정사회 기반 강화** 성실납세자(사업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

-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정한 경쟁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사업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축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기회 제공** 결과에 책임지는 사회를 보완하기 위해 경쟁에서 뒤쳐진 계층에게 다시 한 번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근로장려세제 보완 개선

- 근로장려세제는 시작 단계로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다른 복지정책과의 조율 등이 필요
-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용대상자의 소득과이익이 중요

■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자발적인 재정지원에 의해 사회적인 약자에게 경쟁 참여 여건을 마련해 주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정부의 역할은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제공
-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 정비, 기부 분야의 다양화, 기부단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토론 요약**

**소득세포괄주의 및 금융실명제 강화해야**

고광철/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공정사회라는 중요한 테마를 다루는 토론회에 초청해 주어 감사드립니다. 최근 ‘공정’이 큰 화두로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은 늘 가지고 있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자세한 연구와 분석이 다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토론자는 토론회 내용에 대한 논평보다는 공정 및 공평과세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공정 및 공평과세의 기본은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포괄주의라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고 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각종 비용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지, 또 그 과정이 얼마나 번거로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공직자재산신고 수준에 준하여 소득을 신고하고 이를 기본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장기적으로는 공정과세 및 납세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를 파악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차명계좌 소유주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융실명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차명계좌 보유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의 차명거래자를 적발하려는 노력도 점차 약해질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선행되어야 금융기관도 고액계좌 보유자에 대한 관리 및 감시가 명확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소득세포괄주의 및 금융실명제 강화를 통한 차명계좌 처벌은 단기적 실현가능성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세무검증제도를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공평과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세무사는 ‘갑을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토론자가 발표자료 중 눈여겨 본 부분은 세금을 전부 납부한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과의 차별문제이다. 체납관리를 위해 지방세의 경우 민간위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의견은 언론에서 다루어진 적도 있다. 이미 민간회사가 지방세 체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행정안전부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납세의식 향상 위해 정부 노력 경주**

김낙희/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지난 2월 17일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대통령 주재하에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0% 정도가 4대 의무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조세분야를 선택했다. 조세분야를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보는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 등의견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두 가지 정도로 축약되었다.

첫째,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문제이다. 현재도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및 각종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춰보려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영업자가 세금을 많이 탈루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형평성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예: 해외소득 탈루, 재산은닉, 재산의 차명관리 등 세법위반 행위).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납세의식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낮은 이유로 일제시대 당시의 세금회피가 일종의 애국행위라는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잔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적, 행정적 개선과 함께 납세의식을 어떻게 고취,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 결과 세금탈루 행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표양성화 수준이 70%까지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보면 (물론 주로 고소득자 대상, 세금탈루 가능성이 많은 사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탈루율이 4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자의 외형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었지만 허위증빙, 가공 등을 통해 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측면에서의 방법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세금탈루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1,000명당 1명 정도로 현재 국제행정의 인력을 감안한다면 단기간 내에 조사비율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세금탈루 리스크를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증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증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세무사 등을 통해 각종 세금의 내용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물론 국회 논의과정 중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제도를 통과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액자산가의 세금회피 문제 해결도 제도와 행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계좌신고제도가 이미 도입되었지만 자발적 신고만을 통해서만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세정보교환협정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납세자, 특히 미래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 세금의 중요성, 성실납세의식에 대한 전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 아쉬워

김완일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납세자의식을 조사한 결과 고소득·고학력 계층의 성실납세 의식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토론자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 설문조사와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설문조사의 표본구성을 살펴보면 세션 1의 <표 Ⅲ-4>에서 연평균 소득수준이 1,000만원 미만인 납세자가 43.8%나 되는데, 이들은 자기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물어보나마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답변할 것이 당연하므로 설문에서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의 40.3%가 자기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도 46.0%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국가가 개인납세자의 절반 가까이에 대해 과세권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직적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64.4%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답변하며, 3.0(4.9%)만이 “저소득층(중산층)에게 유리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결과는 홍보가 많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다.

또한 교환의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65.9%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납세자의 43.8%가 소득수준이 1,000만원 미만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가 납부한 세금에 비해서 혜택이 적다고 하는 것은 잘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납세자의 절반가량이 면제인 상황에서 조사한 성실납세의향이나 수직적 형평성, 교환의 형평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실제 납세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

렵다. 더군다나 고학력계층이 저학력계층보다 성실납세의향이 낮다고 해석하고 있어서, 이는 실제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사회를 위한 조세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먼저 성실납세자 우대에 대한 홍보를 제안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설문조사 결과 64.4%가 수직적 형평성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는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홍보가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 예로서 극소수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정하고도 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결정이 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마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취급되고, 일부 세율 인하의 개정 작업에서도 ‘부자감세’라는 용어에 현혹되어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것은 홍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전의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변경한 것은 납세자를 섬기고 높여 받들자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런 납세자의 날 행사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참석하는 행사로 격상해야 한다. 또한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서 성실납세 및 국가재정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일선의 사업자들은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우대하는 것도 없으면서 세금을 징수할 때는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시에도 고소득층에게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간이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계층이 성실한 납세자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것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액납세자를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평생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해서 체납자가 되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제나 예우를 받지 못하며, 심지어는 평상시에 아무리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말년에 비참하게 보내는 사례들도 많이 보게 된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이런 풍토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을 국가가 빼앗아 가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또 납세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가 공정사회라고 생각한다.

현실 업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자료를 갖춰야 할 의무 때문에 성실납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단상가나 특정 업종(특히, 음식점)에서는 성실납세가 미흡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싶어도 계산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음식점이 간이과세자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유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종업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너무 비싼 데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이러한 업종에서 계산서 발급을 주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업주는 간이사업자를 유지하고 4대 보험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고, 종업원은 자기의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업주와 종업원 간의 손발이 서로 맞아서 이런 현상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4대 보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선에서는 사업자들이 각 소득자의 소득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이미 다 제출했는데도, 4대 보험료 징수를 위해서 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이중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러한 업무는 고스란히 세무사가 짊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의 중복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넓은 세원, 투명회계 구현하고 누진세제 개선해야

양규혁 / 한국세무학회 회장

발표자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43.8%가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납세자이고 응답자의 80% 이상이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납세자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도시가계 평균소득이 8,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주로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설문조사에서 선정된 표본을 통해서는 조사결과의 의미 있는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납세의식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시 소득계층의 분류를 개선하여 표본을 분할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무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대학교에서는 조세교육이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언론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부자감세’, ‘세금포탈’과 같이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금이 과학적인 분야이자 제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조세교육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나 국세청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특별 대책을 세워 조세교육 강화에 힘써주었으면 한다.

공정사회를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우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넓은 세원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약 2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실정이다. 넓은 세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높은 증권거래세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납세자의 소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완하여 세원 파악이 어려운 소득을 계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넓은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공정한 경쟁과정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투명회계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세무조사 대비용 회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적으로는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전년도 대비 과세표준 신고금액이 감소한 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관례를 버리고 가급적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이 투명회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책임지는 사회와 관련하여, 결과 책임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 보며 고소득자에 대한 책임은 누진세제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2000년에는 8,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40%의 최고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 현재는 8,8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35%의 최고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0년 동안 소득수준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800만원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2011년 현재 8,800만원의 소득을 2000년 기준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5,000만원대로 추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현 누진세제가 2000년 당시 5,000만원대의 소득계층에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 누진세제는 우리나라 중산층에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누진세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공평과세 위해 회계투명성 제고해야

오윤택/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위원장

박명호 연구위원의 발표자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는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향 지표, 납

세순응행위 지표, 조세형평도 지표, 조세이해도 지표의 현 수준과 변화 추이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 세제 및 세정방향 수립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재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공정한 사회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은 앞으로의 주요 조세정책 방향들을 공정사회의 3대 핵심가치에 대응시켜 잘 정리해 주었다고 본다.

본 토론자는 오늘 발표자들이 제안한 사안에 덧붙여 제도 및 정책을 입안에 관련된 접근법의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세제 입안 및 세정 운영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 참여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제도를 입안하고, 납세자에 대한 긍정적인 면, 즉 성실납세자 및 고액납세자에 대한 긍정적 홍보와 우대제도를 강화하며,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발표한 박명호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향 지수는 평균 70.7점, 납세순응행위 지수는 64.4점 그리고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수는 97.1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행 소득과약률은 76% 후반 내지 80% 초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을 때는 탈세 및 체납 사례들을 부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입안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 및 고액납세자들이 납세의무의 이행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세형평성 지수 중 납세에 대한 보상 만족도를 나

타내는 교환형평성 지수가 26.1점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성실납세자 및 고액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현행보다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들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민원업무나 공행업무 등의 공공서비스에 있어 현행보다 우대제도의 확대 강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이자율 감면혜택 확대, 이월결손금의 소급환급 활성화, 파산시 재활자금 저리 대여 등 적극적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세형평성 지수 중 수직적 형평성 지수는 4.3점에 불과한데 이를 조세정책상 일부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제도, 누진세율제도, 소득규모별 납세부담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도상의 미비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현행 납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통해 해소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현재의 납세자에게 조세이해도 지수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납세의식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선량한 납세자들의 세무상 불이익이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납세의식 및 조세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또한 홍보 및 교육 시행자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과세 및 신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상호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호 의견 교환 기회를 확대하며, 납세자 자기 정보 및 납세통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법을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납세순응지수가 97.1점인 반면 가상 납세순응지수는 39.8점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성실납세의식 지수보다 실제 납세순응지수가 높다는 점은 달리 해석하면 현행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가 충분하다

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새로운 제도, 복잡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의 운용을 더욱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 비율이나 숫자를 현행보다 늘려 납세자 불편의 폭을 키우기보다는 세무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선정하되 일단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세무조사시 조세탈루가 있으면 전부 적출되고 조세탈루가 없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없이 조사를 종료하고 표창장도 수여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납세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세무조사 방법의 효율성에 대하여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기간에 집중하여 거의 전일제로 실시하는 현행 방법론이 납세자에게 불편을 적게 주고 자발적 납세의식 제고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기간에 걸쳐 일상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료의 제출과 검토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적게 주는 방법인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체납 축소도 새로운 제도의 추가 도입보다는 재산 보유자나 은익자의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소득탈루 방지 및 소득신고율 제고는 제도의 복잡화나 제출 서류 확대보다는 ① 회계투명성 제고 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용의 확대·유지 ③ 세금탈루 및 체납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납세자 인식 개선을 통해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의 개선 및 납세의식 제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동 제도가 잘 정착되었다고 보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를 고려하는 단계에 와 있

다. 본 토론자는 동 소득공제제도는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도 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가 법인에 의무 시행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 정확성과 즉시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회계투명성 제고이다. 회계투명성은 공평과세를 위한 토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화에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이다.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소득탈루 방지 및 소득신고율 제고라는 목표는 자동으로 달성될 수 있다. 현재 외부 감사대상 업체의 회계투명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회계투명성을 유도하는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일명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율검토보고서의 작성이나 재무제표 검토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준의 세제·세정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의 공시 또는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중산층 복원과 물가 안정이 공정사회의 밑바탕

임주영 / 한국재정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교수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는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화두로 꺼

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역대 대통령이 꺼낸 화두들이 별 반응을 얻지 못한 것을 보면 현재 대통령이 꺼낸 화두라고 해서 사회 일반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국민 전반의 교육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높아진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것이 본 토론자의 대답이다.

IMF 이후 지금까지 계속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고 서민층의 삶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라 생각된다. 공정에 대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 과정에서 온갖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정이란 화두가 대두된다는 인식하에서 사회의 불안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차선책으로 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회 불안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붕괴되는 중산층을 강력히 복원시켜야 하고 서민층의 삶이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지금의 물가 불안이 공정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당국이 중산층의 복원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제의 측면에서 공정을 구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 중산층의 붕괴에 있다고 한다면, 중산서민층은 조세부담이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조세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조세를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나 조세를 통해서 해야 한다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금을 내게 만들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에게는 더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재호 발표자의 발표내용들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많은 과제 중 이 시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한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하고, 대기업이 대부분 차지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면세율·영세율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비로소 조세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말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부가 ‘공정’이라는 화두를 내놓고 추진하듯이 나열식 과제를 진행하는 것을 수년간 지켜봐 왔고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는 것도 지켜봐 왔다. 공정이란 화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행정과 같은 나열식 정책 제시보다는 우선 물가를 잡고, 조세를 바르게 건으며,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복지를 늘려주는 방향으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납세순응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필요

**최원석**/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교수

국민의 납세의식 추이에 대한 1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띈 것은 실제 납세순응지표와 가상 납세순응지표와의 점수 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납세순응지표는 만점에 가까운 반면, 가상 납세순응지

표는 30점 정도에 불과하다. 그 이유에 대해 발표자는 실제에서는 처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여 수동적으로 납세순응지표가 높아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설문조사 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데, 실제 납세순응지표와 관련하여 질문은 지난 3년 동안 소득을 축소 신고했거나 비용을 과다 공제했느냐 또는 거래계약 축소계약서를 작성했느냐와 같이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답을 하는 사람들은 검증절차도 없고 또한 설문조사자들은 전적으로 피험자들의 대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익명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비난을 덜 받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답변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발표자의 해석과는 달리 실제 납세순응도가 만점에 가깝게 나왔다는 것은 실제 납세순응지표가 과대평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앞으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준비할 때 설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상 납세순응지표가 낮은 이유에 대해 저자는 가상상에서는 처벌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납세순응도가 낮게 나왔다고 해석하였으나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해서 피험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피험자는 단선적이고 직선적으로 물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취할 행태를 답변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동과학에서도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 두고 거기에 대해 피험자들의 행동을 설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문지보다 훨씬 사회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답변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가상 납세순응지표가 납세자의 진실된 납세순응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아무리 가상적인 상황이라도 비현실적이라면 그 설문은 의미가 없게 된다. 가상에서도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현실적인 가정

에서 설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문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상 납세순응지표와 실제 납세순응지표의 점수 차가 크고, 가상 납세순응지표가 낮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된 납세순응지표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의향 지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발표자료 19쪽에 보면 '자영업자/사업주 계층은 타 근로형태 계층에 비하여 성실납세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된 반면, 20쪽에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사업주 계층이 성실납부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으로 표현되어 있어 동일한 성실납세의향 지표를 제시하면서 상반된 결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조지표인 조세이해도와 조세형평도의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발표자는 세무조사나 처벌 등의 법집행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안이나 충분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납세순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의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 조세지원제도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조세감면건의서나 평가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국세감면과 관련된 총액한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프라나 자료 축적이 없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감면 연장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축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조세지원제도가 영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탈세 방지를 위한 공정사회 구축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익적 행

정행위보다는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최근에 성실신고확인제도(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훼손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설계 및 운영해야 할 것이다.

### 공정사회 위해 조세행정 개선 필요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본 토론의 핵심 화두인 공정과, 공정의 경제학적 용어인 공평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이러한 규범적 개념인 공정·공평은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조세정책과 연결시키려 하면 정부정책의 기본 틀이 변질될 염려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응능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성장이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현 정권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성장보다는 공정·공평을 강조하게 되면 성장 위주의 정책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공평을 추구했던 국가인 러시아는 2001년 소득세제를 13% 단일세율로 개혁하였고,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도 고소득층에서 부담하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고 서민의 소득으로 대표되는 노동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조세분야의 세계 흐름은 개방화를 통한 조세경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공평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가 조성되면 국내 조세정책이 자칫 세계 흐름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한 공정사회를 위한 조세정

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는 공정·공평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의도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조세제도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한다면 협의의 공평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세와 체납과 같은 조세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10% 수준인 세무조사 비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탈세와 체납을 모두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세무조사 비율을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문제를 민간에 위탁하고 체납을 담당하던 행정인력을 세무조사에 투입하여 탈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 체납의 민간위탁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국세의 민간위탁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 성과토론회 개요

- 주 제 2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향
- 일 시 2011년 4월 1일(금) 15:00~18: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 진행순서

#### 15:00~15:10 개회사 및 인사말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인 사 말 장옥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15:10~17:4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5:10~15:50 2차년도 지역별 성과 보고

- 이정근 경기광역자활센터장
- 박서준 부산광역자활센터장
- 최형수 인천광역자활센터장
- 황주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 15:50~16:50 주제발표

-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장  
『2차년도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송헌재 ·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성과분석』
- 박노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차년도 사업의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

#### 16:50~17:00 휴식

#### 17:00~17:40 종합토론

- 이승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장
-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조준용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나다 순)

#### 17:40~18: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본 원고는 2011년 4월 1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희망리본프로젝트 2차년도 성과토론회」의 토론 요약입니다.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토론 요약

## 고용과 복지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해야

이승우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장

먼저 현 자활시범사업에 관한 언급 이전에 취약계층,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의 문제에 대한 현장에서의 고민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그 경로에 있어서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창업 또는 취업의 형태로 연계시키는 것이 일반화된 과정이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창업을 포함한 취업이라는 측면을 특성화하고, 거기에 성과체계를 도입하여 진행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자활사업의 내용 속에는 자활근로도 있고 자활공동체도 있지만 사실 취업이나 창업에 관한 부분, 나아가 교육에 관한 부분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자활사업을 구상할 당시의 기본 취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도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측면의 한계를 많이 지적하는데, 문제는 취업지원을 포함하여 취업과 연관된 부분들이 고용노동부 쪽에 치우쳐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이다. 즉,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층을 취업대상이나 비취업대상이나로 구분하고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도록 설계해 놓았으나,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고민 끝에 희망리본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희망리본프로젝트에서 일대일 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로 취업과 관련된 통합지원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복지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관점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가 취업에 상당

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도 절반 가깝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된다.

네 개 지역별로 간략하게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각 유형에 따라 지원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설계되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정인에게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다시 말해 유형별로 어디에 중점을 둘지 명확히 의미를 부여하고 설계되지 않으면 취업이 용이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며, 사업 배치 이전에 유형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산과 인천은 비슷한 사례로 광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밀착성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약 80개 정도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시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다보니 취약계층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밀착성이 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내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 평가하고 있고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이런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한 전국적 망을 갖추고 있는 고용부가 밀착성과 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역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부산과 인천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북의 경우 외국계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도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인zier스사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외국계 기업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컨소시엄이 단순 지역 분할이 아니라 어떻게 연관되고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져왔는지가 분명히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근로능력 유지, 근로기회 제공, 의욕 고취, 소득창출, 탈수급 가운데 자활시범사업도 여전히 탈수급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재정절감과 관련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50%에 달하는 비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자활사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경쟁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에 민간위탁을 받은 곳에서 최소 규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점을 명시해 두고 있다. 즉, 경쟁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최소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연계성과 관련하여 현재 취업대상과 비취업대상을 구분하고 있는데, 프로파일링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수급자든, 차상위자든 개개인별로 어떤 목표를 부여할지 정리해 두어야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도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언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복지 및 고용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두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사실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면서 사업이 설계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프로파일링부터 시작해서 자활능력에 대한 판정, 개인별 지원 계획, 질병/부상/장애/간호/간병/장례 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육아 서비스까지의 지원, 취업/창업/협동창업에 대한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원스톱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고 이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취업을 강제하는 제도로 개선 필요

정원오/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회 참석자 중 대다수가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발표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발전방향에 대해 잘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자활 10주년 포럼에서 외국의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다. 영국의 Employment Zone이 유사한 사례인데 2000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취업 중심의 자활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 실업자 즉, 18개월 이상 계속 취업을 하지 않고 소득보조(income support)의 일종인 공공 부조형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 장기 실업률이 높은 영국의 15개 지역을 Employment Zone으로 지정하고 취업을 시키면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공공서비스 참여자의 대부분은 민간 영리기업들이며 일부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 발표내용을 보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취업률이나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자활시범사업이 그보다 더 나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국의 경우 취업의 질이 낮다는 비판이나 비용-편익 측면에서 너무 비싼 비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지향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Employment Zone의 대상자는 2007년 기준 거의 2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활시범사업 확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지금

냉정하게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확대가 필요한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제공주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비영리조직 위주로 자활사업에 참여했으며 그 중 일부가 관 주도였고 영리조직은 한 부분만 들어온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영국처럼 영리조직을 참여시켜 확대할 것인지 점검해 볼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영리조직이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발표 가운데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향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자활시범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사업 확대 과정에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앞의 토론자도 언급하였지만 이 사업은 노동과 복지가 연계되는 지점에 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하나로 합쳐져 시행하면 가장 좋을 듯하다. 노동부는 고용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복지나 급여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복지부는 급여나 대상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취업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양 측면을 모두 가진 자활시범사업을 확대함에 있어 두 부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추진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외국에서 양질의 취업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어떤 철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취업 자체가 가지는 적극적 복지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복지와 노동을 합쳐, 예컨대 연금 고용부로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등 제도의 틀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대상자가 얼마 안 되어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좋은 대상자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활대상

자가 자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양한 맥락이 있을 텐데 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취업만 강조한다고 과연 지금과 같은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날지 의문이다. 취업 우선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제공주체를 다양화하고 제공주체 간 경쟁을 유발하는 등의 조치는 제도를 효율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혹은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취업으로 밀어내는 제도적 기반을 안 만들고 그에 대한 고민조차 없이 유지되는 것은 문제이다. 즉, 공공부조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취업하게 될 경우 손해가 되어 계속 제도에 의존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를 짚고 나서 가능하면 취업을 강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Employment Zone이 성공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18개월 이상 계속 공공급여를 받을 경우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기제도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 단기성과 치중 우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런 자리에 경제학자를 부른 것은 쓴 소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토론을 하려 한다. 다들 칭찬을 많이 했으므로 미흡한 점도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1차년도에 이어 올해 2차년도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결과가 좋아졌다는 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근거가 없다. 어떤 측면에서 모든 좋아졌고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성과

자체는 선택편의, 크리밍(creaming), 파킹(parking) 등의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최종적으로 수급자가 일자리에 정착해서 완전히 탈수급하게 되는 것을 홈런이라 하고 그에 대해 1점을 줘야 한다면 현재의 유인체계는 1점이 아니라 0.4점 정도를 주는 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관여자들이 홈런을 칠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대신 안타를 많이 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올리는 구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서비스 수요/공급 측면 그리고 단기/장기 효과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기초생보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난 후 탈수급할 유인이 있는가를 따져 보면, 많은 문헌들이 기초생보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들어와도 실제 탈수급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구직자의 탐색노력(job search effort)은 별로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발표자료를 보면 수차례 면담을 통해, 훈련을 통해 구직자의 심리와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여서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사업이 아닌 기초생보 자체의 문제로 인해 수요 측면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에 비효율이 존재하므로 전달체계를 좀 더 바람직하게 바꾸면 즉, 정부나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 구직자의 탐색노력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좋은 정보가 시의 적절하게 제공됨으로써 향상을 도모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밀착형 사례관리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정책효과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것 같다.

성가로 나타난 취업의 효과, 특히 단기적 효과를 보

면 굉장히 좋아졌다. 계약서에 제시된 것과 1차년도, 2차년도 단기성과는 매우 좋다. 밀착형/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애로사항을 제거해 준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유지되어서 탈수급될 것인지의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1단계는 굉장히 좋은 반면 2, 3단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담당자들이 1단계의 사례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2, 3단계로 끌고나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더 날 수 있는, 단타를 많이 치는 쪽의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데이터상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려운 작업을 성취했을 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개편하면, 이 사업 자체가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탈수급 확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경제학자로서 생각해 보았다.

## 현장 자료와 목소리 중요

조준용/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99년에 '생산적 복지'라는 슬로건이 주창된 이후 자활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자활프로그램의 성과에 있어서는 예산을 쏟은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장의 노력과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생산적 복지라는 규범적 사고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하나의 사례로 여겨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범사업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만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취·창업'이라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자립가능한 수준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용-효율 분석을 할 때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적 편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의 명칭이 '희망리본'인데, 이는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다(reborn)라는 뜻이다. 그런데 6개월 이내의 취업과 100만원 수준의 월급을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을 생각한다면, 과연 다시 태어났을 때 그러한 일자리를 갖고 싶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좀 더 단순 명확하고 현실적이며 비전을 제공하는 이미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활모델은 수급권자를 CEO로 만들어 준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workfare라는 표현은 복지 대신에 일하고 급여를 받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진, 즉 복지 수급권자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는 말로 인식되기도 하므로, welfare-to-work가 좀 더 학문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고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둘째, 현장에 계신 실무자들이 현장 연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현장 자료들을 생산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모든 자활 영역에서 공유되었으면 한다. 외부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첨단 통계기법을 사용한다 해도, 수치만 가지고는 함부로 해석하거나 스토리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결국 생생한 현장의 경험이 반영되어야 현실성 있는 해석과 대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까 언급된 내용에서와 같이 과연 수급권자들이 탈수급을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이슈들은 현장에서는 이미 알

고 있는 내용이다. 즉, 현장에서는 수급권자들은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자로서, 개별급여를 인정해 주지 않는 'all or nothing'인 현행의 제도에서는 탈수급의 유인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처럼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한 번 현장의 자료와 목소리가 중요하고 이것이 연구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희망리본프로젝트가 큰 자활이라는 틀에서 이해가 되었으면 한다. 현행 자활제도와 동떨어지지 않고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과나 경쟁이라는 명목 하에 현행 지역자활센터나 다른 자활사업과 경쟁구도로 비추어진다면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자칫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어, 큰 자활사업이라는 테두리, 즉 자신이 속해 있던 모태를 벗어나게 될 위험도 있다. 자활을 통해서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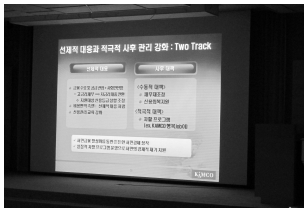
# 공공정책포럼



## ■ 제15회 공공정책포럼

###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서민의 신용자산 지킴이 KAMCO

### 제15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서민의 신용자산 지킴이 KAMCO
- 일 시            2011년 3월 18일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별관 그랜드볼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 08:05~08:45 주제 발표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1년 3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서민의 신용자산 지킴이 KAMCO」를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15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 인사 말씀

### 송대희/좌장

일본 대지진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적 사안에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신용회복 및 구조조정 사업을 통해 국가적으로 건전한 자산을 확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수의 정책적 경험을 가진 장영철 사장을 모시고 이러한 역할과 자산관리공사의 구체적인 노력을 듣고자 한다.

## 주제발표 요약

### 서민의 신용자산 지킴이 KAMCO

장영철/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발표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KAMCO)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중산 서민정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전의 구조조정 및 부실자산 인수·정리에서 이제는 서민경제지원 업무 등 민간이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주도적으로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기금운용 측면에서도 부실채권정리기금(1997) 45조원 중 37조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외 신용회복기금(2008), 구조조정기금(2009)을 통해 개인의 부실채권 정리 등을 주도하고 있다.

KAMCO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으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조정수단을 통해 자활까지 지

원하는 형태이다. 이는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야기되는 채무로 인한 사회문제를 방지하는 데 목표가 있다. 특히 서민금융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축은행 등 민간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면책주의와 채무재조정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채무자의 모럴해저드 문제, 채권자 권리와 채무자 보호 간 상충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KAMCO는 금융교육, 서민금융, 직업알선 등 선제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차단하는 동시에 효율적 신용회복지원의 사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공적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KAMCO는 현재 '신용회복기금'(2008)을 비롯하여 '한마음금융'(2004), '희망모아'(2005)를 통해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1월 말 현재 국내 1,000만 여명의 대상자 중 KAMCO가 총괄적으로는 245만명, 그 중 신용회복기금으로는 85만명의 채무자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시중 은행과의 MOU를 적극 추진하여 자금지원 및 채권부담 완화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건전한 제도 운영의 발판이 됨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서민의 빠른 신용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사회·경제적 안정이 필요한 국내 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공적기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채무불이행자간 담합과 같은 모럴해저드를 해결하고 건전한 채무자를 보호하며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KAMC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KAMCO는 선제적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과 같은 실질적 대응을 실시하고, 자활프로그램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한 서민이 경제적 재기를 통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자유 토론

송대희/좌장

우리 사회 신용불량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알게 되었다. 자칫 사회 불안 등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KAMCO가 추구하고 있는 선제적 서민지원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조임곤/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공기업은 설립목적을 근거로 그 존재가 규정되는 데, 최근에는 공기업이 '상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의 역할 변화는 종종 공공부문 팽창의 문제와 대립하기도 하며, 이전의 개발 및 성장의 기초는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장영철/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발표자)

공공부문의 비대화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론적으로는 공기업이 경영 정상화 등 일정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다시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 또한 자유방임주의에서는 군, 경찰 등 국가의 최소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민간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영역에서조차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민간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하되, 혼재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무조건 추구하기에는 현실적 무리가 있다.

라영재/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사회적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실시 등 KAMCO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자금 상황으로 이어짐으로써 서민금융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500여개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나서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KAMCO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장영철/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발표자)

단기간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는 경제 전체적인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통 3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며, 각 공공기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송대희** / 좌장

얼마 전 대지진이 지층구조의 “폴트라인” 충돌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문헌을 접하였다. 우리 사회의 신용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대 청년층부터 50대 장년층까지의 신용불량자 확대는 우리 사회의 폴트라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긴장상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태응렬**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현재 KAMCO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는 KAMCO와 예금보험공사 간 업무의 중복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진** / 예금보험공사 이사

1997년 성업공사로부터 출발하여 부실채권 정리뿐만 아니라 서민의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KAMCO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공적기구의 비대화에 대한 지적도 있으나, 공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수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서민금융지원 역할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서민지원업무 등 KAMCO 내 다양한 업무가 내부에서 서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며,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기관 간 업무조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영철**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발표자)

KAMCO가 관리해야 하는 자산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금융업무, 국가자산 관리 및 서민지원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자산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그 범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성진**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민영화과장

신용회복상담 등 KAMCO의 구체적 업무에 대해 말씀하셨다. 실제 저소득층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자활을 위해 생각보다 여러 부문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KAMCO의 방식 외에도 서민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MOU 체결 등이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장영철**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발표자)

국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KAMCO 역시 올 2월 경기도와의 MOU 체결을 통해 업무협조를 맺었으며, 그 외 각 지자체와도 협약을 맺고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과의 MOU를 활용하여 자금 및 사업부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영평가, 축적되지 않은 경험 등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해 실질적인 사회적 공헌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오영균/수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용성/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국가경제 기여 및 정부 서비스 대행에 공기업의 존립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사회적 공헌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KAMCO의 업무영역 확대와 같은 공공기관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인적 변화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아웃소싱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 내 한 사업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특히 부채관리 등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다 타당한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대희/좌장

공익성과 수익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사업을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측면을 조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공익을 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책당국의 목표일 것이다.

KAMCO 역시 단순히 부실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나아가 이제는 그 주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공익성의 의미를 진화시키고 있다. 서민금융 역시 KAMCO가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므로 미래전략단 설치 및 전문인재 양성 등을 통해 향후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 방안에 있어 업무간 중복을 통한 기관간 경쟁의 유도, 핵심역량 확보를 통한 기관의 전문성 제고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나에 대한 논의가 있다. 업무영역이 뚜렷한 SOC 기관 외에, 특히 수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KAMCO와 신보, 예보 등 기금 및 금융형 기관의 경우 위험관리 측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관 내 자체적 해결 또는 LH와 같이 통합을 통한 전문성 확보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장영철/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발표자)

조직이 생성된 이후에는 스스로 발전하므로 그 형태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성과가 더 나은 쪽으로 업무 무게의 중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에는 조직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급격한 조직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송대희/좌장

사회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서민 신용지원 문제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박정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KAMCO의 구체적 모습과 아울러 장영철 사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4월에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되짚어보기 위해 한성대학교 박영범 교수를 모실 것이며, 5월에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을 모시고 공공기관의 새로운 영역 개척에 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IPF**



# 제1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논문 공모

\* 한국조세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제1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논문 공모」가 지난 2010년 12월 20일(월) 마감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초중고 글짓기 101편, 대학생 논문 24편 등 총 125편이 공모하였으며, 2010. 12. 21(화)~2011. 1. 30(일) 동안의 심사를 거쳐 2011. 1. 31(월)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학생 논문 부문에서 우수상 2편 및 장려상 3편이, 초중고 글짓기 부문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및 장려상 3편이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2011. 2. 23(수) 14:00 한국조세연구원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이번 호에 수상작 중 대학생 논문 우수상 1편 및 초중고 글짓기 최우수상 1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담배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비선형의 담배수요함수 추정과 암묵적 비용 모델링

강효석/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

### [요약]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담배시장에 깊숙이 개입한다. 이는 담배시장에 불완전정보, 부정적 외부효과, 개인실패(individual failure) 등의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담배시장에 개입할 때 담배수요곡선 혹은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담배수요곡선을 정칙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하였지만, 이것이 선형이거나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다양한 행태적, 심리적 반응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흡연자들은 담배가격이 소폭으로 변동할 때에는 기존의 흡연 습관을 고수하지만 담배가격이 크게 오르내릴 때에는 오히려 기존의 태도를 크게 바꾼다. 이는 중독성을 가진 담배라는 재화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적 반응을 반영하여 변곡점을 가지는 역S자 형태의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역S자 담배수요곡선의 도출은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기존의 OLS 등의 선형추정법을 이용하여 담배수요곡선을 도출한다. 이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된 바 있기에 해당 자료를 얻는 것이 용이하다. 둘째, 이 선형수요곡선을 세금의 다양한 간접효과를 반영하는 세금수요곡선으로 변형한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비명시적인(non-salient)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둔감한(inattentive) 소비자의 반응이다. 이 외에도 여러 요인들로 인해 세금수요곡선은 가격수요곡선보다 비탄력적인 형태를 가진다. 셋째, 이러한 세금수요곡선을 바탕으로 하여 역S자의 수요곡선을 도출한다. 역S자 수요곡선은  $\alpha$ 와  $\beta$ 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본 단계에서는  $\alpha$ ,  $\beta$ ,  $k$  등의 모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회고적 접근법 및 현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의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역S자 모델을 통하여 한국 담배시장의 담배수요곡선을 여러 가지 형태로 도출해낼 수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는 담배에 대한 과세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 모델의 핵심은 담배수요가 가격의 작은 변화에는 비탄력적이나 큰 변화에는 매우 탄력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하의 사중손실은 일반적인 재화의 그것보다 더 작다. 결국 담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 부과는 큰 폭으로 이루어졌을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효율성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가격적 접근법 이외에도 다양한 비가격적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본고에서 제안하는 ‘암묵적 비용 모델’이다. 이는 암묵적 비용이 (1)고액권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 (2) 동전을 거슬러 받는 데서 오는 비효용(disutility)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모델이다. 이를 토대로 담배 한 갑당 5,100원 혹은 10,100원 등의 가격이 암묵적 비용을 극대화하는 가격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암묵적 비용 모델은 앞서 살펴보았던 역S자 담배수요곡선을 통한 과세정책과 함께 시행될 때 더욱 큰 효과가 있다. 정부의 세율 인상 폭이 현실적으로 제약에 직면하였을 때 암묵적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수요곡선의 비탄력적 부분을 벗어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의 많은 논의들이 정지한 계량 분석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고에서 시도되었던 새로운 접근법은 향후 정부 정책이나 학계의 관련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I 서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배세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sup>1)</sup>. 최근 호주, 영국, 일본,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담배세를 인상하였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기호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주권’을 근거로 담배세 인상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토록 담배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불완전정보, 부정적 외부효과, 개인실패(individual failure)에 기인한다. 먼저 사람들은 흡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스스로의 자기통제 능력, 흡연의 강한 중독성, 니코틴과 타르의 해악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이트’ 담배는 유독물질을 덜 함유하고 있으며 끊기도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라이트 담배는 일반 담배만큼이나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으며(Gullu, et al, 2007), 이를 끊는 것은 심지어 일반 담배보다 더욱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Tindle, et al, 2006). 담배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믿음도 그릇된 것으로 보인다(Han, et al, 2007). 둘째, 흡연은 간접흡연, 공공보건 지출, 업무 비효율성, 화재 유발 등과 같은 매우 큰 규모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흡연자들이 이러한 효과들을 완전히 내부화(internalize)할 수 없기 때문에 흡연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여러 경로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성적인 것 같은 사람조차도 담배와 같은 매력적인 재화(fascinating goods) 앞에서는 비이성적일 수 있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금연에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담배시장의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사적 한계비용(PMC)보다 훨씬 커져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과세와 같은 정책을 통해 담배시장에 개입한다.

1) 본고에서 지칭하는 ‘담배’는 여러 종류의 담배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피우는 ‘필러’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가 담배시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매우 많다. 개입의 방법, 개입의 강도,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의 규모, 조세 귀착, 흡연자의 행태적 반응, 담배회사의 이윤, 담배농가의 생존, 담배로 인한 피해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담배수요곡선을 도출하는 것이며, 많은 재정학자들이 담배수요의 탄력성과 담배수요함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담배수요곡선에 대하여 명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람들의 행태적 반응을 반영한 담배수요곡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한국 담배시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보완적 방법으로서 암묵적 비용을 통한 비가격적 개입 수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검토

담배세와 관련된 경제모델 수립 및 실증분석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Hamilton(1980), Seldon and Boyd(1991), Duffy(1995)는 켈런의 수요모델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또한 Berry, Levinsohn, and Pakes(1995)와 Nevo(2000)는 차별화된 시장에서의 담배수요함수를 추정하는 'BLP 모델'을 고안하였다. Chaloupka and Warner(2000)는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추정치들이 일반적으로  $-0.5$ 에서  $-0.3$ 으로 수렴한다는 연구를 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0.46$ (안종석, 1996),  $-0.27$ (김성준, 2002),  $-0.39$ (김원년 등, 2006)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김원년 등(2006)에서는 1,000명의 흡연자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한국 흡연자의 담배소비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들은 광범위한 추적 조사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한국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기적으로는 0.62라고 제시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KASH) 및 신가영(2006)은 한국 흡연자의 '금연의향 담배가격'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법들은 한계가 있다.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은 비슷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부분 모델의 '선형성'에서 기인한 것이다<sup>2)</sup>. 선형함수는 인간의 복잡한 소비활동, 특히 중독성을 지닌 담배와 같은 재화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Chetty(2009)가 세금과 관련한 수요함수에 대하여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의 연구는 비명시적인(non-salient) 과세의 사중손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작다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Chetty가 세금수요곡선을 기존의 가격수요곡선과 구분했다는

2) Although it varies with the study, conventional studies by and large assume the linear function for cigarette demand.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휘어진 곡선을 도입하여 실제 담배수요를 추정하는 비선형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 Ⅲ. 비선형의 담배수요곡선: 역S자 모델

본 장에서는 우선 세금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을 시도한 Chetty(2009)의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Chetty의 논의로부터 수요곡선에 관한 다양한 영감을 얻어 담배가격 변화에 대한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행태적인 반응을 검토한다. 그 후 이러한 사람들의 복잡다기한 반응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수요곡선을 도출할 것이다.

#### 1. 세금수요곡선과 사중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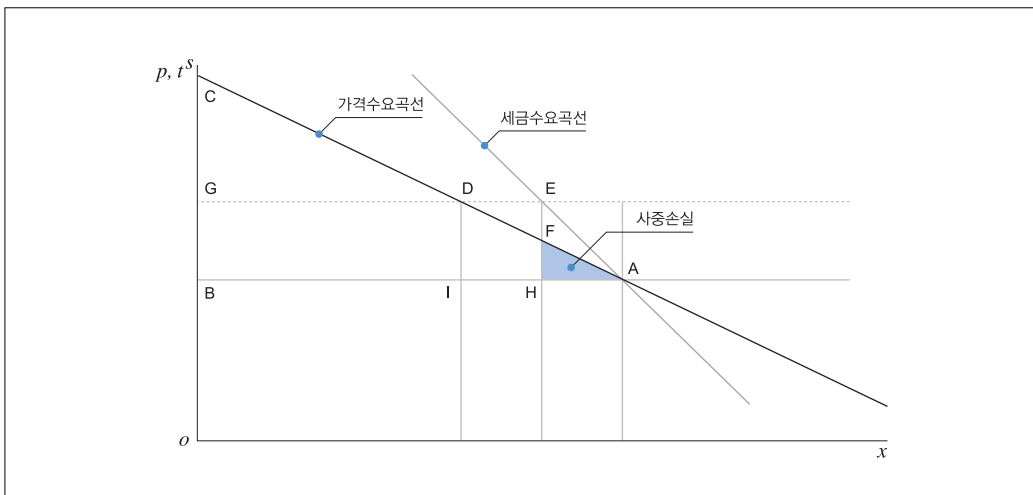
담배회사가 담배가격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담배세를 올리면 담배수요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 두 가지 요인은 같은 효과가 있을까? Chetty(2009)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적절한 답을 해 준다. 그는 세금부과로 인한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격수요곡선에 대비되는 세금수요곡선(Tax Demand Curve)을 고안하였다. 미국에서는 소비세(물품세)가 상점의 가격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non-salient) 계산대에서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수요곡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분리된 가격 인지과정으로 인해 둔감한(inattentive) 소비자는 세후(稅後) 가격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다. 소비자들이 동일한 폭의 '가격 인상'과 '물품세율 인상'에 대하여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가격수요곡선보다 더 가파른 세금수요곡선이 도출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명시적인 세금이 부과될 경우 기존의 비명시적인 물품세에 비해 수요를 8% 더 감소시킨다고 한다(Chetty, Looney, and Kroft, 2008).

한편 사회적 최적점에서 이탈하여 발생하는 사중손실은 사회후생분석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sup>3)</sup>. 정부는 조세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담배시장에서의 사적 한계비용곡선을 사회적 최적점까지 상향 이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때 부과된 세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림 1]에서 보듯이 세금수요곡선의 탄력성은 가격수요곡선의 탄력성보다

3) 사중손실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요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다. 두 번째 요소는 기존에 존재하던 시장의 왜곡이다. 이것이 클수록 추가적인 과세로 인한 사중손실은 더욱 커진다(Gruber, 2007).

작고 따라서 수요의 변동도 적다. 이로 인해 물품세로 인한 사중손실은 같은 폭의 가격 변화로 인한 사중손실보다 훨씬 작다. 즉, 비명시적인(non-salient) 과세로 인한 비효율성은 순수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그것보다 작다. 따라서 비록 정부가 정확한 담배수요곡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담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입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sup>4)</sup>.

[그림 1] 가격수요곡선과 세금수요곡선



\* 자료: Chetty(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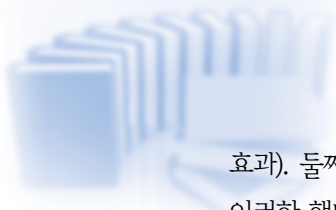
## 2. 중독적 재화에 대한 행태적 반응

Chetty(2009)의 연구는 동일한 가격변화에도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중독성을 지니는 재화인 담배의 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다양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선형의 수요곡선을 이용한 담배시장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담배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다양한 반응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가. 가격 인상 시

최근 담배가격 및 세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을 생각하자. 여기서 담배세가 인상된다면 두 종류의 서로 강화하는, 혹은 상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담배의 가격이 인상되었으므로 다른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직접

4) 비록 한국 시장에는 비명시적인 과세가 없지만 본 논의를 한국 시장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히 논의한다.



효과). 둘째,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흡연자들은 추가적인 ‘행태적’ 반응을 보인다(간접 효과). 이러한 행태적 반응은 가격 인상 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담배가격의 작은 인상에 대해서는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비록 담배세가 인상되어 담배 소비가 줄어들겠지만, 그 크기는 다른 재화의 그것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이것은 담배가 강한 중독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격 측면에서의 작은 충격으로는 이러한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 충동적 이유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잠재적 흡연자에게도 소폭의 가격 상승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소폭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간접효과는 직접효과를 일정부분 상쇄한다.

그러나 반대로 가격 인상 폭이 커진다면 흡연자들은 그들의 흡연 습관을 상당 부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우선 담배가격의 인상의 흡연자들에게 ‘합리화의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은 담배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담배의 해악들을 상기하며 ‘이 기회에 끊어버리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는 상술하였듯이 일반적인 재화에 대한 가격효과, 즉 직접효과에 더하여 발생하는 간접효과이다. 실제로 흡연자들이 높게 인상된 담배가격을 금연을 위한 자기 설득의 기회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신가영, 2006). 나아가 청소년 흡연이나 담배의 중독성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담배소비는 담배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흡연자들이 큰 폭의 담배가격 인상으로부터 정부의 담배시장에 대한 확고한 개입 의지를 인식 및 확인하는 효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간접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담배가격 인상 폭이 클 때에는 담배수요는 훨씬 더 감소한다. 여기서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 나. 가격 인하시

반대로 가격이 인하되었을 경우를 살펴보자. 가격이 인하될 경우 이것의 직접효과는 다른 재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선형모형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다. 담배 수요가 담배가격 인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담배의 중독성과 해악으로 인해 간접효과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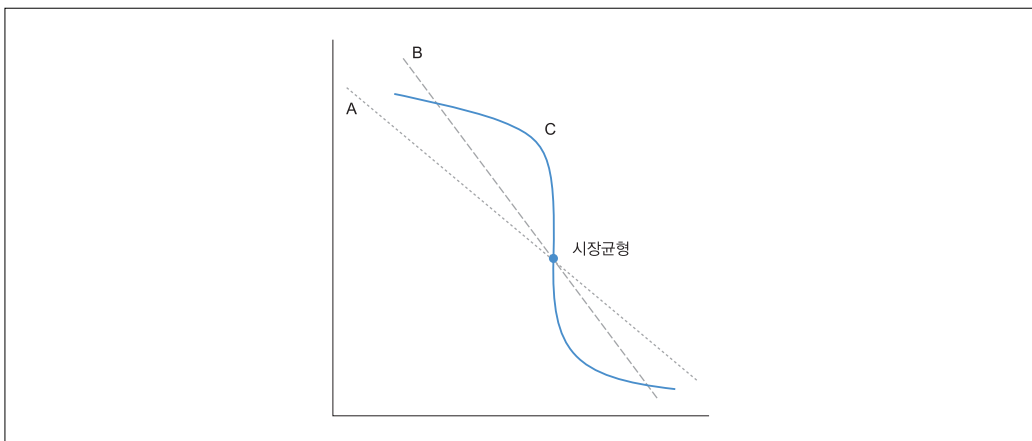
소폭의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비교적 둔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재화에 대해 예상되는 것보다 가격 인하로 인한 담배수요의 증가 폭은 더 작을 것이다. 이것은 잠재적인 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나쁜 효과들을 인식하고 있어 흡연을 시작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하고 나면 그들 중 상당수가 담배가격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지더라도(담배가격과 무관하게) 흡연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담배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자기통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담배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기존 흡연자들은 더 많은 담배를 구입할 것이고 비흡연자들은 흡연을 시작할 것이다. 이에 담배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3. 역S자 모델: 비선형의 행태경제학적 모델

상기 논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담배수요곡선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도출할 수 있다. 이 곡선은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오목한(concave) 형태를 띠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볼록(convex)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역S자 형태(Reversed S Shape)’ 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림 2]에서 직선 A는 가격수요곡선이고 직선 B는 (미국 물품세 하에서의) 세금수요곡선이다. 곡선 C는 흡연자의 행태적 반응을 반영한 역S자 담배수요곡선이다. 본 수요곡선의 중요한 특징은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각 가격수준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것이다<sup>5)</sup>. 그렇다면 이러한 역S자 수요곡선을 현실의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선형추정방법을 토대로 한 것이다. 아래의 세 단계를 통하여 직선의 수요곡선을 역S자로 변형해 낼 수 있다.

[그림 2] 다양한 수요곡선



#### 가. 제1단계

먼저 통상적인 형태, 즉 선형의 담배수요곡선을 도출한다. 이 때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현

5) 이 때문에 조세귀착 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태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재의 시장균형점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 균형으로부터 탄력성을 측정할 경우, 흡연자들이 변화하는 균형에 맞추어 새롭게 적응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상적인 담배수요곡선의 추정에는 기존에 활발하게 연구된 바 있으므로 이 중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 나. 제2단계

다음 단계에서는 과세로 인한 효과를 반영한다. 세금 부과는 담배수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Chetty(2009)의 세금수요곡선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천착되지 않는다. 비명시적인(non-salient) 과세가 아니더라도, 세금에는 세금수요곡선이 가격수요곡선과 구분되게 하는 다양한 (간접)효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환경세, 교육세 등이 높은 비율로 포함된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들에 대하여 자신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으로 인한 죄책감을 덜 느끼고 이에 따라 흡연량이 늘어난다. 지불하는 담배가격 중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껴 흡연량을 줄이는 흡연자도 있을 것이다. 담배수요에 대한 세금의 다양한 간접 효과를 계량화하면 [그림 2]의 직선 B와 같은 세금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제3단계

앞서 논의한 두 단계는 이미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할 세 번째 단계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수요함수를 곡선화하면서 이전 단계와는 다른 새로운 담배수요곡선을 유도하게 된다. 제 2단계까지의 담배수요곡선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D(P, \tau)$$

여기에서  $P$ 는 담배의 가격을 나타내며  $\tau$ 는 담배세율을 뜻한다.

이제 제 3단계에서는  $\alpha$ 와  $\beta$ 라는 새로운 모수를 추가한다.  $\alpha$ 는 현 수준보다 높은 담배가격 하에서 담배수요곡선을 오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beta$ 는 반대로 현재보다 낮은 담배가격 하에서 담배수요곡선을 볼록하게 만든다.  $\epsilon$ 은 오차항이다. 이러한 모수들을 모두 반영하면 다음과 같은 역S자 담배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D(P, \tau, \alpha, \beta, \epsi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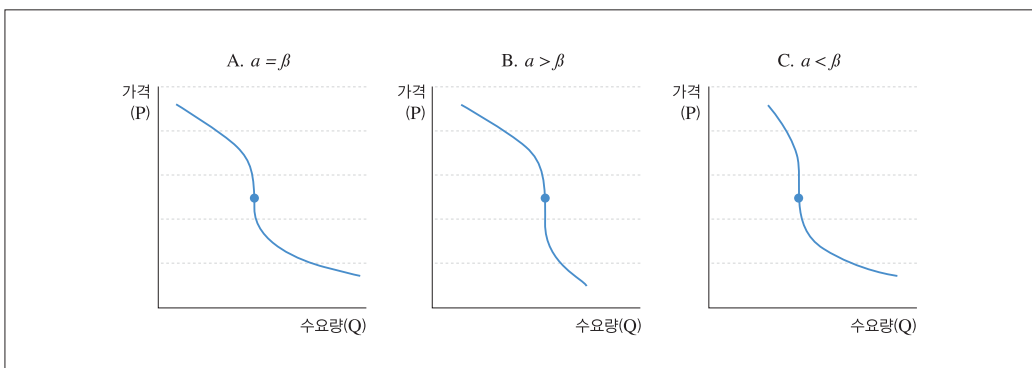
균형점이 변곡점이 되는 이러한 담배수요곡선의 형태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무척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보다는 통계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활용하여 이러한 수요곡선의 형태를 현재의 균형수준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가격 수준의 변화가  $\sigma$  원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담배가격이 5  $\sigma$  원 인상된다면 이는  $\sigma$  원 인상을 5회 연속으로 실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sigma$  원의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변화만 파악하면 어떠한 가격변화에 대해서도 전체 담배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Q(P_i + \sigma) = Q(P_i) - \alpha Q(P_i) 10^{-k(P_i + \sigma - P_0)^2} + \epsilon \quad \text{when } \sigma \geq 0 \quad (1)$$

$$Q(P_i + \sigma) = Q(P_i) + \alpha Q(P_i) 10^{-k(P_i + \sigma - P_0)^2} + \epsilon \quad \text{when } \sigma \leq 0 \quad (2)$$

여기서  $\sigma$ 는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며  $k$ 는 수요 변화의 정도를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첨자  $i$ 는 현재 가격수준인  $P_0$ 로부터의 이탈 정도를 뜻한다. 식 (1)은 현 균형수준에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담배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식 (2)는 담배가격 하락에 따라 담배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식은 상대적인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들은 단위로 연속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림 3]은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역S자 담배수요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alpha$ 와  $\beta$ 값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역S자 담배수요곡선





[그림 3]에서  $\alpha$  값과  $\beta$  값이 동일할 때는 일반적인 역S자 형태의 곡선을 가진다. 하지만 패널 B에서 보듯이 가격하락에 따른 탄력성이 더 낮아서  $\beta$  값이 작은 경우 곡선의 형태가 다르다. 반대로 패널 C는 가격상승에 따른 탄력성이 낮은, 즉  $\alpha$  값이 작은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추정방법은 수요곡선의 모든 구간에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적절하게 반영한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각 모수들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한국 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4. 한국 시장에서의 적용: 한국의 역S자 담배수요곡선

지금까지 도출하였던 역S자 담배수요곡선으로 실제 한국의 담배시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있다.

##### 가. 회고적 접근법(Retrospective Approach)

과거 한국에서 몇 차례에 담배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격인상은 담배의 질이나 다른 특성의 변화를 수반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역S자 담배수요함수의 모수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04년 말일에 있었던 2,000원으로부터 2,500원으로의 가격 인상은 순수한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의 담배수요를 측정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담배가격 변동으로 인한 단기적 효과가 장기적 효과를 잘 대표하며, 흡연자들은 담배가격이 변화하더라도 그들이 담배가격에 따른 믿음, 즉 수요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2004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 상당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담배가격 변화로 인한 행태적 반응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에는 비명시적(non-salient)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제2단계에서의 세금의 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tau=0$ )<sup>6)</sup>. 담배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의 경우에만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This’ 한 갑의 가격은 2004년 말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었다<sup>7)</sup>. 이제  $k$ 의 값이 9이고 가격변화의 단위, 즉  $\sigma$ 가 100원인 역S자 모델을 상정하자. 한국의 담배수요곡선은 아래식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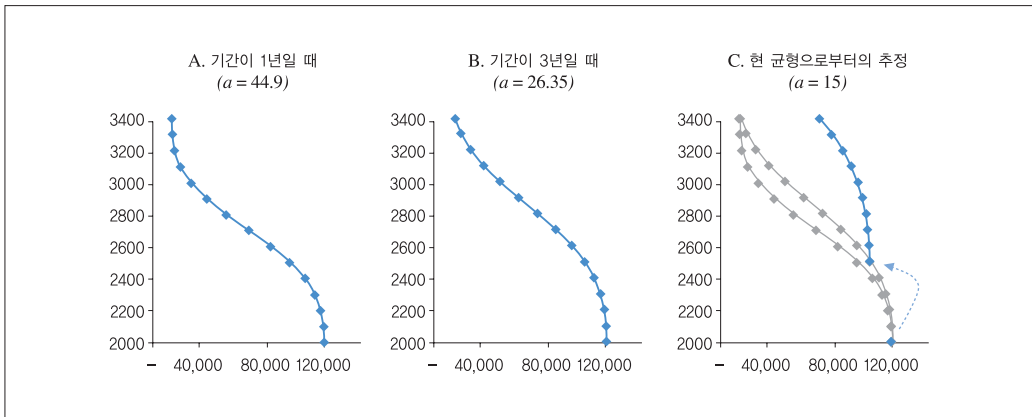
$$Q(P_i+100)=Q(P_i)-\alpha Q(P_i)10^{-9}(P_i+100-2,000)^2+\epsilon$$

6) 언급하였듯이 비명시적 세금 외에도 세금의 다양한 특성들이 간접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만 이를 무시한다.

7) ‘This’가 한국의 대표적인 담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모든 담배를 잘 대표한다고 가정한다.

이제  $\alpha$  를 추정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4년 담배가격이 2,000원일 때의 수요곡선, 즉, 위의 식에 적절한  $\alpha$  값을 대입하여 담배가격이 2,500원일 때의 수요량이 실제로 2005년에 담배가격이 2,500원이 되었을 때의 수요량과 일치하게 만든다. 2005년(가격 인상 후 1년 후)의 담배 수요량은 8억 2,300만갑인데,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본 모델에서 2005년의 수요량이 8억 2,300만갑이 되게 하는  $\alpha$  의 값은 44.9이다([그림 4]의 패널 A 참조). 이러한 작업은 2007년(가격 인상 후 3년 후)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그 결과가 [그림 4]의 패널 B에 나타나 있다.

[그림 4] 2004년을 기준으로 한 수요곡선과(A, B) 평행 이동한 수요곡선(C)



가격	기간이 1년일 때 ( $\alpha=44.9$ )	기간이 3년일 때 ( $\alpha=26.35$ )
2,000	106,500.00	106,500.00
2,300	99,910.27	102,607.38
2,500	82,323.47	91,807.16
2,800	38,363.08	60,164.77
3,000	13,450.36	34,853.76
3,300	523.66	8,172.07
3,400	62.82	3,951.52

그러나 이와 같은 추정법에는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세금 인상과 관계가 없는 효과들에 대하여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담배가격의 인상이 예고되면 흡연자들은 실제 담배가격 인상 전에 담배를 사재기할 것이다. 이는 2004년의 담배수요를 과장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공식 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담배 밀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반대로



담배수요를 과소추정하게 한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고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담배가격이 2,500원이 된 이후에 흡연자들은 2,500원을 새로운 가격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는 담배수요곡선의 변곡점이  $P=2,000$ 인 지점에서  $P=2,500$ 인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곡점이 500원 만큼 상향이동하면 모든 점에서의 탄력성이 기존의 예측치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세금으로 인한 순효과는 패널 A, B에서의 추정보다 훨씬 작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패널 A, B에서 추정된 담배수요곡선을 새로운 가격인  $P=2,500$ 점으로 이동시켜 보정한, 보다 정확한 모델이 패널 C에 나타나 있다.

결국 패널 A 혹은 B에서와 같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기간에서 값을 추정한 다음 해당 곡선을 새로운 균형점으로 평행 이동하여 현 시장에 적합한 역S자 수요곡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 나. 현재에 기반을 둔 접근법

앞선 회고적 접근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담배시장을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흡연자들의 현재의 소비성향에 대한 밝혀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몇 가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에 총 9억 4,600만 갑의 담배가 판매되었다(KT&G, 2009). <표 1>은 몇 가지  $\alpha$  및  $\beta$  값에 대한 수요량 도출 결과를 보여준다. 각 패널들은 [그림 3]에서의 각 패널과 대응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표 1> 현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이용한 담배수요

가격	$k=9$		
	$\alpha=3, \beta=3$	$\alpha=3, \beta=1$	$\alpha=1, \beta=3$
4,500	38,630.17	38,630.17	70,737.10
4,000	64,673.21	64,673.21	83,492.40
3,500	84,183.53	84,183.53	91,015.53
3,000	93,047.79	93,047.79	94,080.67
2,500 (P0)	94,600.00	94,600.00	94,600.00
2,000	96,169.63	95,121.27	96,169.63
1,500	106,063.20	98,300.73	106,063.20
1,000	136,169.00	106,994.34	136,169.00

한국의 담배수요가 [그림 3]의 패널 A와 같은 일반적인 역S자 형태를 띤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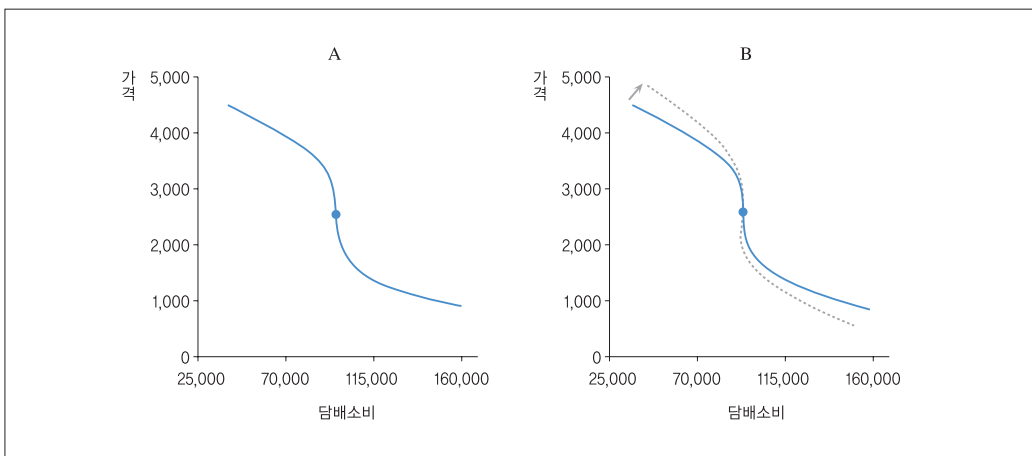
담배수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Q(P_i+100)=Q(P_i)-3Q(P_i)10^{-9}(P_i+100-2,500)^2+\epsilon, \text{ when } \epsilon \geq 0 \quad (1)$$

$$Q(P_i-100)=Q(P_i)+3Q(P_i)10^{-9}(P_i-100-2,500)^2+\epsilon, \text{ when } \epsilon \leq 0 \quad (2)$$

이 관계식을 바탕으로 연속적으로 계산하면 [그림 5]의 패널 A의 수요곡선이 도출된다.

[그림 5] 현재에 기반을 둔 접근법에 의한 한국 담배시장의 역사 수요곡선



[그림 5]의 패널 A의 곡선에서 보듯이 수요곡선은 현재의 가격수준 주변에서는 비탄력적이며 반대로 가격 변화가 커질수록 더욱 탄력적이게 된다. 만약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무시하였던) 세금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한다면( $\tau \neq 0$ ), 이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될 것이다. 패널 B의 점선이 세금효과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비탄력적이게 되는 수요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 수요곡선은 세금을 통해 충분한 흡연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세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일관된다.

#### IV. 암묵적 비용 모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담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담배수요함



수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데 담배수요를 줄이면서도 사회적 비용, 즉 사중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비가격적인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수요함수의 형태를 모르더라도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행태경제학 및 심리학적 직관에 의하면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흡연자가 담배를 구입할 때 ‘고액권을 지불하게 하고’, ‘동전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핵심적인 두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가정 1: 사람들은 같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고액권을 사용할수록 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기분을 느낀다. 혹은 고액권을 분할하는 데 부담감을 느낀다.

가정 2: 동전은 무겁고 소음을 발생시키므로 기피된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화폐 체계를 살펴보자.

〈표 2〉 한국의 화폐 체계

지폐	(1,000) / 5,000 / 10,000 / 50,000
동전	10 / 50 / 100 / 500

이를 바탕으로 비가격적인 정책수단에 대해 생각해 보자. ‘This’ 한 갑의 가격은 2,500원이다.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담배 구매자는 담배 한 갑을 구입하기 위해 오천원권을 지불할 것이다. 이 때 구매자는 담배를 두 갑(5,000원) 혹은 네 갑(10,000원) 구입함으로써 동전을 거슬러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즉, 흡연자들이 동전 거슬러 받기를 꺼려 짝수 개의 담배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정교한 연구가 행해져야 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현재의 담배가격 체계는 어느 정도 담배를 많이 구입하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건강에 해롭고 큰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지는 담배를 적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sup>. 그렇기에 현재의 담배친화적인 가격체계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이 2,600원이라면 가격 측면에서 현재의 시장균형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동전이라는 ‘암묵적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율 인상과 함께 시행된다면 담배 한 갑당 5,100원이라는 가격도 적절한 가격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역시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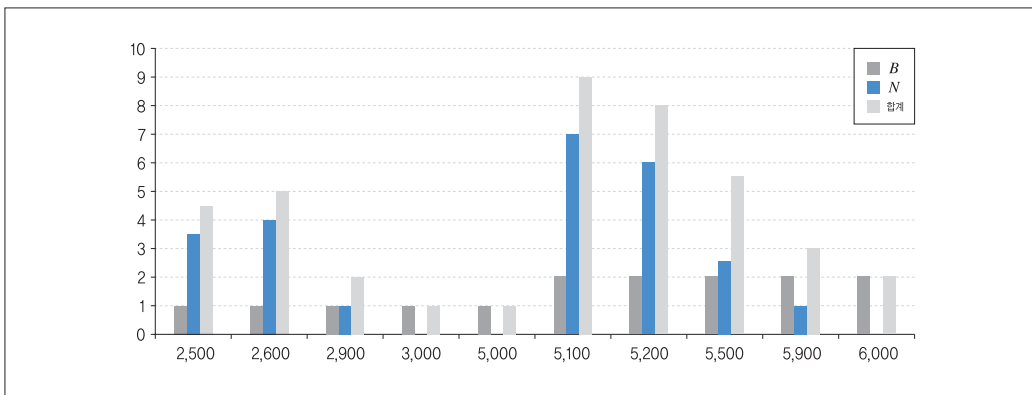
8) 본 장에서의 논의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세금수입 증대’에 있지 않고, 흡연의 부정적 외부효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흡연을 억제하는 데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이다.

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면, 흡연자는 담배 한 갑을 구입하기 위해 만원 권을 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적으면 다섯 개의 동전을(500원짜리 한 개와 100원짜리 네 개), 많으면 아홉 개의 동전을(100원짜리 아홉 개) 받게 된다. 이러한 동전 비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수치 사례(numerical example)를 살펴보자. 암묵적 동전 비용(C)이 고액권 지불로 인한 심리적 비용(B)과 동전으로 인한 부담(N)으로 이루어지는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C = B + N$$

여기서  $B$ 는 담배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된 지폐의 액수를 5,000으로 나눈 값이며,  $N$ 은 거스름돈으로 받게 되는 동전의 수이다. 이 비용들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고액권을 분할하고( $B$ ) 지폐 대신 동전을 가지게 되어 발생하는 비가격적 추가 비용( $N$ )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500원 이상의 동전을 받을 때 500원짜리 하나를 받을 확률과 100원짜리 다섯 개를 받을 확률이  $\frac{1}{2}$ 로 동일하다고 하자. 이 때 담배 한 갑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암묵적 비용은 [그림 6]에 나타난다.

[그림 6] 다양한 담배 가격에 대한 암묵적 비용



	담배 한 갑의 가격(예시, ₩)									
	2,500	2,600	2,900	3,000	5,000	5,100	5,200	5,500	5,900	6,000
$B$	1	1	1	1	1	2	2	2	2	2
$N$	3.5	4	1	0	0	7	6	3.5	1	0
합계	4.5	5	2	1	1	9	8	5.5	3	2



제시된 여러 가격들 중에서 담배가격이 5,100원일 때 암묵적 비용이 9로 가장 크다. 이를 일반화하면 암묵적 비용의 측면에서는  $[\alpha \times 1,000 + 100]$ 원( $\alpha$ 는 자연수)의 담배가격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암묵적 비용의 부과가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역S자 곡선상에서의 비탄력적인 구간을 벗어나 과세로 인한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정부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담배의 가격을 충분히 큰 폭으로 인상시키지 못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V. 시사점 및 한계

담배수요곡선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들은 ‘Homo Economicus’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가정이 현실에서 항상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중독적이면서도 강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지는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람들의 행태적 반응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담배소비 모델을 연구하였던 것이다.

### 1. 시사점

먼저 세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일반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효과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비명시적인(non-salient) 세금부과에 대해 둔감한(inattentive) 소비자들의 경우를 살펴본 Chetty(2009)의 연구에 더하여 세금은 다양한, 가격과 구별되는 효과를 지닌다. 특히 담배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금의 구별되는 효과가 여타 상품들에 비하여 훨씬 크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으로 인한 효과 때문에 가격수요곡선이 보다 비탄력적이게 되고 따라서 사중손실도 가격수요곡선에 의한 것보다 세금의 구별된 효과를 반영한 세금수요곡선 하에서 더 작다.

나아가 역S자 모델을 통하여 정부, 특히 보건 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율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상승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수준의 가격변동에는 비탄력적이지만 큰 폭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탄력적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율 인상과 암묵적 비용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비록 통상적인 재정학적 접근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소폭의 세율 인상이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흡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접근이 흡연자들을 가격변화에 대하여 보다 잘 적응하고 흡연을 이어나가게 한다. 이 경우 세율 인상으로 인한 담배수요 억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암묵적 비용 모델은 세율 인상을 통한 효과를 보완하고 더욱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비가격적 접근법은 시장을 크게 왜곡하지 않고 복잡한 계량경제학적 모델링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역S자 수요곡선 하에서 세율 인상과 함께 결합될 때 무척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한계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역S자의 수요곡선을 얻기 위하여 제1단계에서 기존 OLS 등의 선형 분석에 의존하였다. 결국 본 모델은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역S자의 곡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형의 추정을 바탕으로 이것을 곡선화한다는 점에서 전자보다 다소 부정확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연구자의 비선형 회귀분석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본 모델이 보다 정리된 형태의 계량경제학적 모델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본 모델은 오직 한 종류의 담배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담배 수요에 대한 논의를 간단하게 해 주지만 실제 상점에는 매우 다양한 담배들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들 각각의 담배는 그 종류에 따라 가격 및 가격탄력성이 상이할 것이다. 또한 가격효과로 인해 사람들이 흡연량, 즉 담배 소비량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서 곧 이전의 흡연량을 회복 및 능가할 수도 있다. 본 모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역S자 모델을 한국 담배시장에 적용하는 문제 또한 본고에서 명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역S자 모양의 새로운 담배수요곡선을 상정하고 이를 간단히 모델링한 후 한국 담배시장에 적용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각 가격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작은 변화에는 비탄력적이나 큰 변화에는 무척 탄력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사중손실을 계산하면 일반적인 재화의 그것보다 더 작다. 결국 담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 부과는 큰 폭으로 이루어졌을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효율성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가격적이고 인지적인 접근을 통한 암묵적 비용 모델의 결과 또한 과세와 결부되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모델과 한국 시장에서의 적용은 연구자의 능력과 시간 및 데이터의 한계로 엄밀한 경제 이론화



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본 모델이 향후 수행될 관련 연구에 이정표로서 작용하여 보다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석훈, 「유럽의 패널조사현황과 시사점: 가구패널조사와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1997.
- 금재호a,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 한국노동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금재호b, 「캐나다의 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김대일·남재량·류근관, 「한국노동패널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조사 표본이탈자의 특성연구」, 『노동경제논집』, Vol. 23, 한국노동경제학회, 2000, pp. 1~33.
- 김미곤·여유진·이봉주 외,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남재량·이상호·최효미 외,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연구원, 2008.
- 송헌재·성명재·고선,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10-06,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신선옥,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응답자 태도에 면접원이 미치는 효과」, 『노동리뷰』, 제2008권, 1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pp. 74~82.
- 이상호, 「서구 주요패널의 조사전략변화와 시사점」, 『노동리뷰』, 제2006권, 16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 \_\_\_\_\_, 「한국노동패널(KLIPS)의 표본이탈 분석」, 『노동리뷰』, 제2005권, 11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p. 66~80.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한국노동패널(KLIPS) 6차년도 조사 표본 추가(supplement) 계획」, 한국노동연구원, 2003.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사업팀, 「1차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8.
- \_\_\_\_\_, 「2차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
- Hausman, J. and D. Wise, “Attrition Bias in Experimental and Panel Data,” *Econometrica*, Vol. 47, No 2, 1979, pp. 445~473.
- Hill, Daniel, and Robert J. Willis, “Reducing Panel Attrition: A Search for Effective Policy

- Instrumen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6, No 3, 2001, pp. 416~438.
- Fitzgerald, John, Peter Gottschalk and Robert Moffitt, “An Analysis of Sample Attrition in Panel Data: The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3, No 2, 1998, pp. 251~299.
- Lee A. Lillard and Constantijn W. A. Panis, “Panel Attrition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3, No 2, 1998, pp. 437~457.
- Wooldridge, Jeffrey, “Selection Corrections for Panel Data Models under Conditional Mean Independence Assump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68, No 1, 1995, pp. 115~132.
- Zabel, Jeffrey E., “An Analysis of Attrition in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and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with an Application to a Model of Labor Market Behavio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3, No 2, 1998, pp. 479~506.

## 왜 세금을 내는 걸까?

오형석 / 서대전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고속도로 노점상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휴게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점상을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영세 상인이라는 이유로 조직적인 협박집단이 갈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는 논술학원과 수습역원의 계약을 하고도 소득신고를 누락한 스타 강사의 탈세 의혹을 다뤘고 한 현장 르포 프로그램에서는 탈세자의 이중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세금과 탈세, 노점상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며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게 되었다.

먼저 세금과 탈세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싶었다. 사전을 찾아보니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뜻했다. 즉, 세금이란 나라 살림의 재원이며 나라가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탈세는 이러한 세금 일부나 전부를 내지 않고 포탈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세를 한다면 좋겠지만 요즘 통신문체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탈세 세태에 관한 이야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의 적절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항상 통신문체를 접할 때마다 유명인사와 고소득자의 탈세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인 것 같다. 사실 세금을 낼 때 아까운 마음이 들고,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나와 관련이 없는 일에도 사용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해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걷고 있는 길거리, 길에 설치된 가로등, 벤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그리고 외적의 잠재적인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국방까지 수많은 것들이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관점에서 탈세는 우리 사회에 대한 도둑질이며 무임승차 행위이고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국가가 복지 정책을 보다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도록 개편하고 아울러 투명성 있게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개인에게 알 권리를 주어 세금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각적 의식 역시 중요하다. 탈세와 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이고 절세는 엄연한 합법 행위이므로, 자영업자들은 탈세 행위를 반드시 지양하고 절세를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민 경제와 질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탈세 행위와 노점상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어머니께 여쭙어보니 노점상 폭력 단속에 관한 논란이 일고,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상인이라는 이유로 협박, 갈취하는 조직 폭력배가 나타나는 이유도 모두 탈세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다. 생각해 보면 노점상의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생계형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와중에도 매년 한시적인 대책이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정부의 태도인 것 같다. 나는 노점상 단속에 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점상은 시민 모두의 공공재화인 길거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시민의 보행 방해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자신의 소득을 명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탈세행위를 하므로 노점상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나라 경제의 자원 보탬에도 손해가 된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살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또다시 생계형 노점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순환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 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 울산 중구 시청이 노점상 실명제를 시행해서 시장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세수를 확충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다. 또한, 노점상들에게 소액의 세금을 거두어 정식 사업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불법 조직들의 협박과 갈취로부터 보호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렸다고 하니 노점상 실명제가 바른 대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우리나라 국민은 4대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근로, 교육, 국방, 그리고 납세의 의무이다. 이렇듯 세금은 나라의 바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복지와 국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세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세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세금의식은 부족해 보이고 국가의 근본적인 탈세 행위 방지에 관한 해결책은 항상 제



자리걸음인 것 같다. 지금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 의무 이행이며 국가에 요구되는 것은 의무 요구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 마련일 것이다. 세금은 곧 국력이다.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여 납세하고, 국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 제1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논문 공모 수상작

#### ■ 대학(원)생 논문 공모 부문

내역	성명	소속	제목	비고
최우수상	해당작 없음			
우수상	강호석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	담배수요함수의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KIPF상
우수상	문준호 민동준 이치영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3학년	통일세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조사를 중심으로 -	매경상
장려상	윤장수 이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	한국의 소득세 제도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KIPF상
장려상	강희원	경희대 경영학과 4학년	한국의 재정·통화정책 실증분석 및 출구전략과 정부부문 금융개혁안 제시	KIPF상
장려상	장정재	중국인민대 기업관리학과 박사 3학년	중국의 외자기업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조세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 新기업소득세법을 중심으로	KIPF상

#### ■ 초중고 글짓기 부문

내역	성명	소속	제목	비고
최우수상	오형석	서대전고등학교 2학년	왜 세금을 내는 걸까?	KIPF상
우수상	정소희	인천계산여자중학교 2학년	아깝지 않은 세금	KIPF상
우수상	전대산	목포북교초등학교 4학년	희망을 선물하는 고마운 세금	KIPF상
장려상	임재우	서울국제고등학교 1학년	성실한 납세는 최소한의 나눔이다	KIPF상
장려상	김다휘	마산제일여자중학교 1학년	세금...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하는 참가비	KIPF상
장려상	강선형	안성산평초등학교 4학년	하얀색 부매랑	KIPF상

#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1-06

## 요약

- 그리스는 세제 개편을 위한 새로운 법률안과 투자 촉진법(investment incentive law) 및 탈세방지법(anti-tax-evasion law)을 발표함
- 스페인 관보(official gazette)는 2011년 3월 5일 지속가능경제법(sustainable economy law)을 공표함
- 중국 국가위원회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주는 기존 행정규칙이 2010년에 만료됨에 따라 2011년 2월 9일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해 과세혜택을 주는 새로운 행정규칙을 발표하여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함
- 홍콩은 2011년 2월 23일,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특정 세목의 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함

## 1. 그리스 세제 개편, 투자촉진법 및 탈세방지법 발표

### 가. 세제 개편

- 그리스 재무부는 2011년 2월 26일 세제 개편을 위한 새로운 법률안을 발표함
  - 동 법률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적용될 예정임
- 법률안은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주식양도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인세율이 24%에서 20%로 인하됨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40%에서 25%로 인하됨
  - 그리스 Athens 증권거래소 및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주식양도세의 양도세율이 1.5%에서 2%로 인상됨
    - 주식양도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도입될 예정임
    - 부가가치세를 3회에 걸쳐 분납하는 규정이 신설됨
      -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총액의 40%를 납부하고 나머지 60%는 이후 2회에 걸쳐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함
      - 월 1%의 지연납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법률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함

나. 투자촉진법(investment incentive law)

- 그리스 정부는 특정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소득 공제, 보조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촉진법을 공표함
  - 투자촉진법 도입은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기술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함
  - 건축, 법률 및 회계서비스, 태양열 전력 생산, 광고 및 해외 투자활동을 제외한 모든 경제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가 적용대상임
  - 투자촉진법 적용대상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소득공제, 현금보조 및 금융리스로 보조 혜택이 제공됨
    - 소득공제: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를 허용
    - 현금보조: 법률안에 명시된 보조금 지급대상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
    - 금융리스로 보조: 금융리스를 통한 신규자산 취득 시 리스료의 일부를 보조

다. 탈세방지법(anti-tax-evasion law)

- 그리스 정부는 2월 21일 탈세방지법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도입하는 정책의 일환임
- 법률안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조세포탈을 억제하기 위해 조세포탈법에 대한 처벌과 부패 세무공무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법인세 75,000유로 또는 부가가치세 150,000유로

- 를 초과하는 세금을 포탈한 조세포탈법을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됨

2. 스페인 지속가능경제법(sustainable economy law) 공표

- 스페인 관보(official gazette)는 2011년 3월 5일 지속 가능한 경제전략의 일환으로서 지속가능경제법을 공표함
  - 법률안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공표일의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가. 법인세법

- 폐지 예정이던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 및 확대하고 그룹사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8%에서 12%로 인상됨
  - 2011년에 폐지 예정이던 환경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공제율이 현행 4%에서 8%로 인상됨
  - 그룹 내 그룹사에 대한 변동내역이 존재할 경우 지배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변동내역을 과세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됨
    -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나. 소득세법

-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스톡옵션의 행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됨

다. 비거주자의 배당소득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sup>1)</sup> 소재의 연금펀드나 투자기관이 수령한 배당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비과세함
  - 과거 유럽연합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비과세 규정이 유럽경제지역 국가로 확대 적용됨
  -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스페인과 해당 국가 간 정보교환 규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정보교환 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3. 중국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세혜택 조치

- 중국 국가위원회는 2011년 2월 9일에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주는 행정규칙<sup>2)</sup>을 발표함
  - 자가생산하는 소프트웨어에 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IC)에는 사업세(business tax)를 면제하며,
    - 적격 소프트웨어 회사와 집적회로(IC) 디자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험, 정보시스템의 집약화, 컨설팅, 운용, 유지, 집적회로(IC) 디자인에 대한

5%의 사업세(business tax)를 면제함

- 집적회로(IC) 산업을 수행하는 적격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우대조치를 함
  - 기존의 주요부품기업과 집적회로(IC) 특별장비업체처럼 집적회로(IC) 포장과 시험에 대해서도 법인세 우대조치를 적용함
  - 신설 집적회로(IC) 디자인 회사, 적격 소프트웨어회사, 생산라인이 폭 0.8마이크론 이하의 집적회로(IC)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1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함<sup>3)</sup>
    - 폭 0.25마이크론 미만을 생산하거나 80억위안(약 12.1억달러)을 초과하는 투자를 한 집적회로(IC)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집적회로(IC) 제조업자가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간 1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 중국은 이 행정규칙 이전에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비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sup>4)</sup> 이러한 조치는 2010년에 만기되었음

1) 유럽경제지역은 유럽국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창설된 경제블록으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 구성됨.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연합 비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에 속한 국가에 해당됨.  
 2) 2011년 소프트웨어 및 IC회로산업발전 장려정책에 관한 국무원 정책공고 제4조  
 3) 현재의 법인세율은 25%임  
 4) 198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비조세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존의 주요한 조세 및 비조세혜택은 2000년 소프트웨어 및 IC회로산업발전 장려정책에 관한 국무원 정책공고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의 국내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새로 설립된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3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며, 80억위안을 초과하고 폭 0.25마이크론 미만의 집적회로(IC)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
- 적격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대규모 집적회로(IC)기업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을 적용
- 기타의 조치로 소프트웨어기업의 근로자임금 전액 손금산입, 2년 가속상각, 재투자에 대한 세제환급,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의 면제



- 이에 중국은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혜택을 유지함

#### 4. 홍콩 2011-2012 예산안 발표

- 홍콩 정부는 2011년 2월 23일에 2011-2012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예산안은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특정세목<sup>5)</sup>의 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홍콩의 최근 경제상황은 2010년에 상당한 경제회복을 경험했고 2010-11년에도 흑자재정을 예상하고 있음
  - 2010년에 6.8%의 GDP 증가와 3.8%의 실업률 감소가 있었음
  - 2010-11년에 71.3백만홍콩달러에 달하는 흑자재정을 예상하고 있음
  - 이러한 예상치는 예산안의 25.2백만홍콩달러의 적자재정과 2009-10년의 실적치인 25.2백만홍콩달러의 흑자재정을 넘어서는 수치임
  - 2010-11년 흑자재정은 실질 경제성장과 인지세 수입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 예산안의 내용 중 조세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근로소득세율 등의 특정세목에 대한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근로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특별인지세·담배세·최초차량등록세를 인상시킬 계획임
  - 현행 근로소득누진세율과 근로소득표준세율은 <표 1>, <표 2>와 같으며 예산안에서는 변동이 없음

<표 1> 홍콩의 근로소득세율(누진세율)

2010/2011과 2011/2012	
과세소득	한계세율
HKD 40,000	2%
HKD 40,001 ~ HKD 80,000	7%
HKD 80,001 ~ HKD 120,000	12%
HKD 120,001 ~	17%

<표 2> 홍콩의 근로소득세율(표준세율)

2010/2011과 2011/2012	
15%	

- 거주재산 처분에 대한 특별인지세(Special Stamp Duty, SSD)를 부과함
  - 특별인지세는 2010년 11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거주재산으로 24개월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에 부과됨
  - 양도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세율은 6개월 미만 보유시 15%,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보유시 1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유시 5%가 됨
- 이윤세(profits tax)의 세율과 재산세(property tax)의 세율, 동산거래에 대한 인지세 세율은 <표 3>, <표 4>, <표 5>와 같이 변동이 없음

5) 근로소득세(salaries tax), 이윤세(profits tax), 재산세(property tax), 동산거래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표 3〉 홍콩의 이윤세율

2010/2011과 2011/2012	
형태	한계세율
법인(incorporated)	16.5%
비법인(unincorporated)	15

〈표 4〉 홍콩의 재산세율

2010/2011과 2011/2012	
15%	

〈표 5〉 동산 거래에 대한 인지세율

2010/2011 과 2011/2012	
과세소득(HKD)	세율(HKD)
2,000,000	100
2,000,000 초과 ~ 2,361,760	100 + 2,000,000 초과액의 10%
2,361,760 초과 ~ 3,000,000	1.5%
3,000,000 초과 ~ 3,290,320	45,000 + 3,000,000 초과액의 10%
3,290,320 초과 ~ 4,000,000	2.25%
4,000,000 초과 ~ 4,428,570	90,000 + 4,000,000 초과액의 10%
4,428,570 초과 ~ 6,000,000	3%
6,000,000 초과 ~ 6,720,000	180,000 + 6,000,000 초과액의 10%
6,720,000 초과 ~ 20,000,000	3.75%
20,000,000 초과 ~ 21,739,120	750,000 + 20,000,000 초과액의 10%
21,739,120 초과	4.25%

- 근로소득세 계산시 공제 중에서 자녀공제, 경로공제, 부양가족공제가 일부 인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음

〈표 6〉 근로소득세 계산시 공제액

	2010/2011(HKD)	2011/2012(HKD)
인적공제:		
기본	108,000	108,000
기혼	216,000	216,000
한부모	108,000	108,000
자녀공제: (출생~9세까지)		
출생연도	100,000	120,000
그 외	50,000	60,000
부양부모(조부모): (60세 이상)		
기본	30,000	36,000
추가공제(동거부양가족)	30,000	36,000
부양부모(조부모): (55~59세)		
기본	15,000	18,000
추가공제(동거부양가족)	15,000	18,000
부양형제자매	30,000	30,000
장애자공제	60,000	60,000
공제(최대한도):		
자가교육비용	60,000	60,000
주택대출이자	100,000	100,000
노인거주부양비용	60,000	72,000
적격 퇴직부금	12,000	12,000
적격 자선기부	소득의 35%	소득의 35%

- 개인 사용을 위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최초등록세가 약 15% 정도 인상됨
- 담배에 대한 부담금이 한 개피당 0.5홍콩달러 인상되며 이는 기존의 담배부담금이 약 41.5% 정도 인상되는 것임

- 홍콩의 예산안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인플레이션 억제, 미래에 대한 준비, 국민후생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세제조치를 제외한 주요 조치는 토지공급의 증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홍콩이 초과적인 유동성과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주거용 재산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시정하고자 주택용 토지공급을 증가시킴
-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3년만기 정부채권인 'iBond' 를 발행하고자 함
-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음

동향 11-07

요약

- 영국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은 2011년 3월 23일 '2011회계연도 예산안(Budget for 2011~12)' 을 의회에 제출함
  - 예산안의 세법개정 내용은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 및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의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한편, 정유사 및 가스사의 이익에 부과되는 보조세(supplementary charge)의 세율을 인상시키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금융기관의 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은행세율을 인상시킴
- 캐나다 재무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기존의 감세정책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함
  -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 가정과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 첨단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안을 제시함
  - 동 예산안에는 고용증대를 위해 소기업에 대한 임시 고용증대세액공제(Temporary 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이 포함됨

1. 영국 2011회계연도 예산안

- 영국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은 2011년 3월 23일 '2011회계연도 예산안(Budget for 2011~12)' 을 의회에 제출함<sup>1)</sup>
  - 2011회계연도의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1) 영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임

Expenditure)은 약 £7,100억으로 예상되며, 재정수입은 약 £5,890억으로 예상됨

-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2011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함
  - 지난해 6월 예산책임청은 2011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함
  - 예산책임청은 2011회계연도부터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2013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2.9%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함
- 2011회계연도 예산안의 세법개정 내용은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 및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의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가. 법인세 분야

- 법인세 기본세율<sup>2)</sup>이 28%에서 26%로 인하되고, 이후 23%까지 매년 1%씩 인하될 예정임
-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에 27%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보다 1% 추가 인하된 26%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함
  - 법인세 인하로 2011회계연도에는 £425,000,000, 2012회계연도에는 £810,000,000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21%에서 20%로 인

하됨

-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대상이 되는 단기수명 자산(short-life assets)의 등록요건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
  - 영국에서는 사업자가 시설 및 기계장치를 구입한 후 이를 취득한 회계연도 말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판매 또는 처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해당 시설 및 기계장치를 단기수명자산으로 등록(election)하고 자산별로 자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번 예산안에서는 단기수명자산의 등록요건이 되는 보유기간을 취득 회계연도 말 시점으로부터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시설 및 설비투자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려 함
- 중소기업<sup>3)</sup>이 지출한 특정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현행 75%인 추가 소득공제 비율이 2011년 4월 1일부터 100%, 2012년 4월 1일부터는 125%로 인상됨
  - 영국은 중소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과세이익 계산 시 지출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현행 75%인 추가 소득공제 비율이 2011년 4월 1일부터 100%(2012년 4월 1일부터는 125%)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용의 200%(2012년 4월 1일부터는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백신 연구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40%에서

2) 기본세율은 과세소득이 £1,500,000 이상인 경우 적용됨. 과세소득이 £300,000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300,000~£1,500,000 사이인 경우 특정 계산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증가된 세율이 적용됨  
 3)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4천만유로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4,300백만유로 이하인 회사에 해당됨



20%로 인하되고, 2012년 4월 1일부터는 제도가 폐지될 예정임

- 정유사 및 가스사의 이익에 부과되는 보조세(supplementary charge)가 현행 20%에서 32%로 인상됨
  - 영국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정유 및 가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3월 24일부터 정유사 및 가스사의 이익에 부과되는 보조세를 32%로 인상함
  - 영국 정부는 향후 유가가 일정 지표가격(trigger price)<sup>4)</sup> 이하로 인하될 경우 세율을 이전 수준인 20%로 인하할 예정이라 발표함
- 2012년 1월 1일부터 단기부채(short-term chargeable liabilities)에는 0.078%, 장기자본(long-term chargeable equity) 및 장기부채(long-term chargeable liabilities)에는 0.039%<sup>5)</sup>로 인상된 은행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영국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은행이 향유하는 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은행세를 인상하기로 함

〈표 1〉 영국의 은행세율 적용 현황

(단위: %)

기간	단기부채	장기자본 및 부채
2011. 1. 1~2011. 2. 28	0.05%	0.025%
2011. 3. 1~2011. 4. 30	0.1%	0.05%
2011. 5. 1~2011. 12. 31	0.075%	0.0375%
2012. 1. 1~	0.078%	0.039%

자료: "Overview of Tax Legislation and Rates," 영국 재무부(HM Treasury), 2011. 3. 23

- 개인 또는 기업이 Gift Aid를 통해 £10,000 이상 기부시 신청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현행 £500에서 £2,500으로 인상됨
  - 영국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기부공제제도인 Gift Aid를 통해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영국 정부는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10,000 이상 기부시 신청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총한도를 현행 £500에서 £2,500로 인상함
  - £1,001 이상 기부시 세액공제 금액이 기부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은 유지됨
- 2011년 1월 1일부터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규정이 개정됨
  -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은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한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제도임
  - 2011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CFC 중간개발(CFC interim developments)' 규정

4) 현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영국 정부는 적정 지표가격을 배럴당 75달러로 제안함

5) 안정된 장기 자금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자본 및 장기부채에는 단기부채에 적용되는 세율에서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됨

이 적용될 예정임

- CFC 중간개발은 영국 재무부가 2012년으로 예정된 CFC 전면개정(full reform)에 앞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발표한 규정임
-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CFC 규정은 지난해 6월에 발표된 규정과 비교하여 일부 항목이 개정됨
  - 거주지국(영국)과의 연관성이 낮아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특수 관계거래에 대해 CFC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
  - 지적자산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피지배외국회사에 대해 해당 지적자산 및 피지배외국회사와 거주지국 간의 연관성이 낮을 경우 CFC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
  - 조직개편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해 CFC 규정을 적용받게 된 외국회사<sup>6)</sup>에 대해 3년간 과세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 연간 £200,000 이하의 금액에 대해 CFC 과세를 면제하고, 회계상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현행 계산방식을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

나.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인적공제는 2010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됨
- 자본이득세와 관련하여 사업공제(entrepreneur's relief)에 적용되는 한도금액(lifetime limit)<sup>7)</sup>을 £5,000,000에서 £10,000,000으로 인상시킴
-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해 18% 또는 28%의 세율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과세되고 있으며, 사

업공제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로 얻은 자본이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임

- 사업공제제도의 한도금액 인상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됨
- 자본이득세의 연간소득공제(annual exemption) 금액이 현행 £10,100에서 £10,600으로 인상됨

다. 간접세 분야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세점과 등록취소(deregistration) 기준금액이 각각 £73,000과 £71,000으로 인상되고, 저가탁송물(low value consignment)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15로 인하됨
- 2011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70,000에서 £73,000으로 인상시키고, 등록취소 기준금액은 £68,000에서 £71,000으로 인상됨
-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중 가격이 일정 수준 미만인 저가탁송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음
  - 이런 저가탁송물의 부가치가세 면세제도가 조세 간소화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이라는 본래 취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가탁송물의 면세점을 현행 £18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함
- 2011년 3월 28일부터 모든 주류에 대한 주세율(alcohol duty rate)은 물가인상률에 추가하여 2%가

6) 현재 CFC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과거 적용대상이었던 외국회사도 과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7) 이는 개인사업자의 일생 동안 적용되는 한도금액임



지 인상됨

- 알코올 도수(abv)가 7.5%를 초과하는 맥주에 대해서는 일반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의 25%가 가중부과됨
- 알코올 도수(abv)가 1.2~2.8% 사이인 맥주에 대해서는 일반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의 50%가 경감됨

- 2011년 3월 23일부터 담배세율(tobacco duty rate)은 물가인상률에 추가하여 2%까지 인상됨
-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인 핸드롤링 토바코(hand rolling tobacco)의 경우 물가인상률에 추가하여 10%까지 인상함
- 2011년 3월 23일부터 유류세율(fuel duty rate)은 리터당 1페니 인하됨
- 2011년 4월 1일에 예정됐던 유류세율 인상 계획은 유류세율이 리터당 3.02펜스로 인상되는 2012년 1월 1일까지 연기됨

## 2. 캐나다 예산안 발표

- 재무부가 2011년 3월 22일 발표한 2011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기존의 감세정책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기존 Canada's Economic Action Plan(CEAP)을 유지할 계획이며, CEAP 2·3차년도 경기부양책으로 CAD284억 지출이 예상됨
- 2010~11년 경상수지는 CAD405억을 기록하여 2009~10년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향후 CEAP의 종료로 적자폭이 계속 감소하여 2015~16년 CAD42억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은 2011년 7.5%에서 향후 5년간 6.5%로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은 2011년 2.4%에서 향후 5년간

2% 정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Canada's Economic Action Plan에 의한 재정지출 규모

(단위: 백만CA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2009~10	2010~11	2011~12	
세부담 감소	3,020	3,180	0	6,200
실업자 지원	3,348	4,924	0	8,27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6,031	8,108	683	14,822
미래 지식경제 구축 및 더 나은 일자리 창출	1,550	2,024	251	3,824
산업 및 지역사회 지원	10,979	2,261	0	13,241
연방정부 재정지출 합계	24,928	20,497	934	46,359
주정부 재정지출 합계	7,062	5,956	1,016	14,033
CEAP 에 의한 재정지출 총합	31,989	26,453	1,950	60,392

자료: 캐나다 재무성, Budget 2011 A Low-Tax Plan for Jobs and Growth, 2011, 3. 22, p. 44

## 가. 개인소득세 개정안

- 어린이 예능활동비 세액공제(Children's Art Tax Credit)제도와 가족 돌봄자 세액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제도를 신설함
- 어린이 예능활동비 세액공제는 1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문화, 예술, 레크리에이션 활동비용의 15%를 공제하는 제도이며, 공제가능 비용의 한도를 자녀 1인당 CAD500으로 제한함
- 가족 돌봄자 세액공제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배우자, 동거인, 자녀를 포함)을 다른 가구원이 돌보는 경우 1인당 CAD2,000의 15%인 CAD300을 공제하는 제도임
  - 현행 시행중인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등 피부양자에 대한 세액공제(dependency-related credits)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 의료비용 지출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부모, 형제 및 재정적 부양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공제 한도 규정을 폐지함
- 현행 규정상 본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한도 규정이 없지만 부모, 형제 및 재정적 부양자에 대해서는 CAD10,000의 한도가 있었음
- 양육비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공제대상을 확대함
- 현행 규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양육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이 때 1주택에 2가구 이상의 다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그 중 한 가구만이 양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음
- 1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별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을 확대함
- 자원봉사 소방관 세액공제(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를 신설함
-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한 자에게 연간 CAD3,000의 15%만큼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동 세액공제제도는 소방활동 사례비 중 CAD1,000을 감면하는 현행 규정과 중복적용이 배제됨
- 교육비 세액공제(Tuition Tax Credit) 대상항목에 자격증 시험수수료 등을 추가하고, 교육비와 교재비 세액공제(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Tax Credits)의 적용대상 중 해외대학 교육비의 범위를 확대함
- 자격증 시험수수료와 관련비용(시험자료, 수료증발급 비용 등 포함)의 연간 지출액이 CAD100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됨
- 연속된 13주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대학에서 교육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하던 교육비와 교재비 세액공제를 교육기간이 3주 이상인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함
- 부당한 소득분할을 제한하기 위한 소득분할 제한규정(Tax on Split Income)<sup>8)</sup>의 적용대상에 자본이득을 포함함
-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분할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자본이득은 배당으로 간주되어 29% 세율로 과세되며,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생애자본이득공제(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를 받을 수 없음
- 납세의무자가 본인 소유 재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를 배제함
- 납세의무자와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은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를 제한함
- 납세의무자는 동 주식을 기부받은 단체가 5년 내에 주식을 처분하면 그 처분하는 시점에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8) 고소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Split Income)하는 경우 29%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제도임



### 나. 법인소득세 개정안

- 고용증대를 위해 소기업에 대한 임시 고용증대세액공제(Temporary 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 제도를 신설함
- 소기업이 2011년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2010년 납부한 고용보험료보다 증가한 경우 그 차이 금액을 CAD1,000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매입한 기계장치에 적용하는 가속상각 규정을 2년 연장함
- 판매·리스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입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정액법 50% 비율로 가속상각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연장하여 2014년까지 구매하는 기계장치에도 계속 적용함
- 기존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sup>9)</sup> 제도의 적용대상 설비에 주 에너지원이 폐열인 전기에너지공급설비를 추가함
- 오일샌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본비용의 상각률을 현행 30%에서 10%로 감소하는 방안을 제안함
- 신규 오일샌드 개발비용을 현행 세법에서는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석유 및 가스산업과 일관성 측면에서 매년 30% 비율로 상각하는 방안을 제안함
- 투자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적격 환경 투자신탁(Qualifying Environmental Trusts, QETs)의 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QETs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함
- 예산안에서는 파이프라인 운영사가 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관련 법규에서는 광물 운영회사, 폐기물 처리회사 등이 채석장 또는 폐기물처리장 등의 복구비용 발생에 대비할 목적으로 신탁회사를 설립·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신탁회사의 투자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 2009년 관련 법규에서 파이프라인 운영사도 추후 파이프라인 매립공사에 투입될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신탁회사의 설립을 의무화하였음
  - 이에 예산안에서는 파이프라인 운영사에도 QETs 규정을 적용하여 투자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제안함
- 현행 세법상 QETs의 투자대상을 현금, 정기예금, 정부채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담보부증권과 특정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함
- 투자회사의 과세기간과 파트너십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파트너십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투자회사의 과세기간으로 안분하여 인식하도록 기존 제도를 변경함
- 현행 세법에서는 투자회사가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수익의 수익인식 시기는 해당 파트너십의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파트너십 사업연도가 투자회사 사업연도 이후 종료하는 경우 파트너십 수익이 1년간 과세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함

9) 자본비용공제제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원 재사용 목적의 청정에너지생산설비 및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서는 50%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제도임

#### 다. 기타 주요 개정안

-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무역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세법 간소화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함
- 관세 개정안은 크게 관세행정절차 간소화, 관세가격표 재정비, 관세가격표 중 실효성 없는 항목의 삭제 및 필요항목의 추가를 위한 방안으로 구분됨
- 또한,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수입된 저가(CAD 500) 수입품에 적용하던 관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단, 이러한 간소화 방안은 비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만 적용될 예정임
- 법정 기부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국세청이 일반에 공개한 적격 기부단체 리스트에서 단체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법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적격 기부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적격 기부단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적격 기부단체는 기부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국세청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 정책흐름 |

-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실시계획
- 2010년 중앙정부 관리대상수지 13.0조원 적자
-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

#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실시계획

\* 본 자료는 2011년 4월 7일 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과에서 발표한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실시계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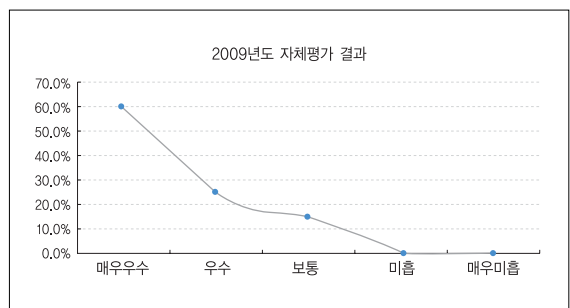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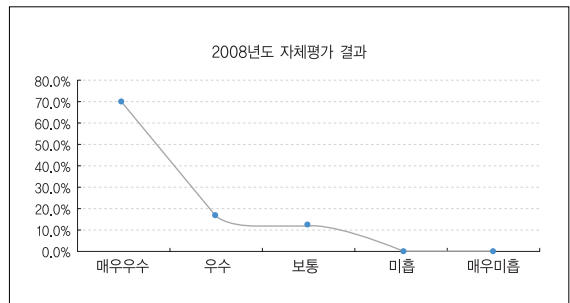
## 재정사업 자율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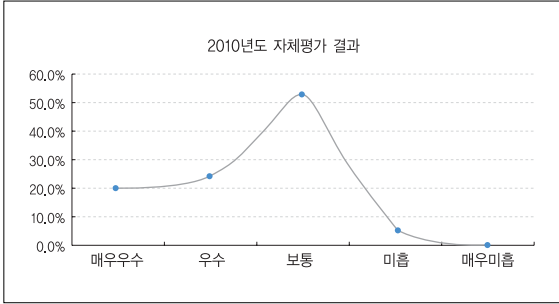
- (제도개요) 정부기관이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심사에 활용
- (대상사업) 경상경비, 인건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전체 재정사업의 1/3에 해당하는 사업(한 사업에 대한 평가주기는 3년이 됨)
- '10년도 대상사업은 38개 기관 488개 사업으로 예산으로는 51.6조원 규모임
- (평가방식) 사업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별 10~12개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 (평가결과)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별로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등급화
- (결과활용)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예산삭감

- 각 기관이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금년 처음으로 도입한 상대평가제도\*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 기관 자체평가시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 '08~ '10년도 자체평가 등급 분포





- 그간 기관의 자체평가 관대화로 '07~'09년간 자체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 비율이 88.8%,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이 0.2%에 불과하였음
- 금년에는 상대평가 규정 도입으로 '우수' 이상 등급 비율이 43.0%, '미흡' 이하 등급은 5.4%에 달하는 등 자체평가의 내실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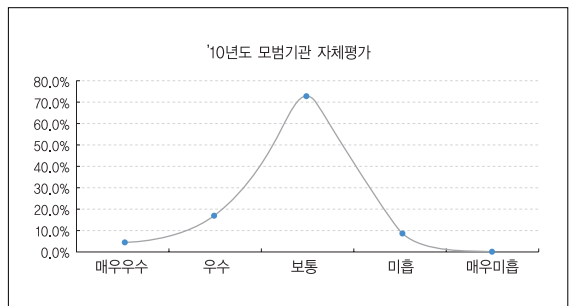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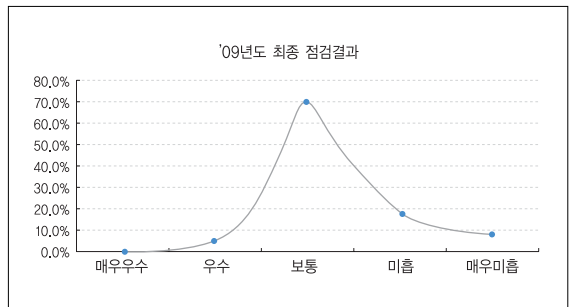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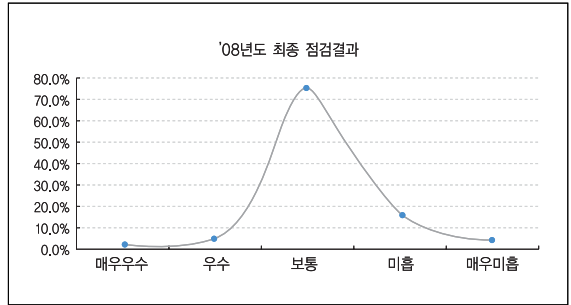
- 한편, 금년부터 '기관 스스로의 평가역량을 강화한다'는 자율평가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자체평가 모범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함
- 이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엄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특허청 등 9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부의 확인·점검절차를 면제하기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4.1)에서 심의·의결하였음

\* 상대평가규정 준수 여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충실도, 평가결과 적정성 등

\*\* 특허청, 관세청, 문화재청, 경찰청, 국세청, 병무청, 통계청, 해양청, 조달청

\*\*\*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강근복 총남대교수)

### '08~'09년도 자율평가결과 대비 자체평가 모범기관 등급분포 비교



- 재정부는 위의 모범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종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7월중 공표할 계획임

참고

성과목표관리제도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요

1 성과목표관리제도

- **(개념)** 부처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03년 시행)
  - 성과계획서 : 전년도(Y-1)에 다음 연도(Y)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 다음 연도(Y+1)에 해당 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원인 등을 보고\*
    -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외에 사업계획 적정성, 집행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별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통해 실시(부처에서 자체평가 → 재정부에서 확인·점검)
- **(기대효과)** 공공부문의 성과마인드 확산, 결과와 책임 중심의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효과
  -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해당 부처의 성과목표 달성과의 연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가능
  - 성과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며, 책임성 강화
- **(법적 근거)**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정('07. 1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각 중앙관서의 長 및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재정부로 제출토록 규정(국가재정법 제8조)
  - 성과계획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로,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 구성항목(국가회계법 제14조)으로 규정
  - '09년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
    - \* 성과계획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매년 10월 초(차기 회계연도 90일 전),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구성항목으로 5

월 말 국회제출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 **주요 내용**
  - **(개념)** 사업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재정당국이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제도('05년 시행)
  - **(대상사업)** 각 부처가 매년 전체 재정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평가. 단,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평가항목)** 계획·관리·성과/환류 단계의 10개 공통지표 및 사업부문·유형별 1~2개 특성지표 적용
  - **(평가결과 산출)** 평가지표별로 '예', '아니오'로 평가하여 '예'로 평가된 질문의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 \* 5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90점 이상) (89~80점) (79~60점) (59~50점) (50점 미만)
- **(평가결과 활용)** '우수' 이상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10% 이상 예산 삭감 (「'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명시)
- **(평가과정)** 평가지침 사전 제시(전년도) → 부처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1~3월, 각 부처 → 재정부) → 확인·점검\*을 통해 부처 평가점수 수정(4~6월, 재정부)
  - \* 조세연,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1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대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 확정
-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8조 6항 및 동시행령 제 3조

법제8조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생략)

# 2010년 중앙정부 관리대상수지 13.0조원 적자

\* 본 자료는 2011년 4월 5일 기획재정부 재정분석팀에서 발표한 '2010년 중앙정부 관리대상수지 13.0조원 적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10년도 재정수지를 잠정 결산한 결과,
  - 관리대상수지가 13.0조원 적자를 시현(GDP 대비  $\Delta 1.1\%$ )
    - \*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이 흑자(29.7조원)를 보임에 따라 GDP 대비 1.4% 흑자
- '10년 예산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7.1조원, 통합재정수지는 18.7조원 개선
  - '10년 경제성장률이 6.2%에 달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예산 대비 조세수입이 7.2조원 증가하는 등 수입이 8.7조원 증가
  - 불용·이월 등 예산 미집행(집행률 96.2%)으로 예산 대비 지출이 10.0조원 감소
    - \* 특히,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국민주택기금 민간용자·출자가 2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순용자 집행률이 52.5%에 그쳤던 것이 주요 요인

## '10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잠정)

(단위: 조원)

구 분	'09년 (A)	'10년				전년 대비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증감 (C-A)	증감률 (%)
				증감 (C-B)	증감률 (%)		
1.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Delta 43.2$ ( $\Delta 4.1$ )	$\Delta 30.1$ ( $\Delta 2.7$ )	$\Delta 13.0$ ( $\Delta 1.1$ )	17.1	-	30.2	-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6	28.1	29.7	1.6	-	4.1	-
3. 통합재정수지(1+2) (GDP 대비, %)	$\Delta 17.6$ ( $\Delta 1.7$ )	$\Delta 2.0$ ( $\Delta 0.2$ )	16.7 (1.4)	18.7	-	34.3	-
- 통합재정수입	250.8	262.3	270.9	8.7	3.3	20.1	8.0
- 통합재정지출	268.4	264.3	254.2	$\Delta 10.0$	$\Delta 3.8$	$\Delta 14.2$	$\Delta 5.3$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 본 자료는 2011년 4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재정기획과, 예산기준과에서 발표한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 1(금) 09:30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 ‘재정통계 개편방안’, ‘보조금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 관련

- ① 윤증현 장관은 오늘 재정위험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 앞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 지출 효율화 및 세입확충 방안, 중장기 재정위험 점검·대응 등 재정분야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재정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민간위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논의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와는 차별화된다고 언급
- ② 윤증현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중이며, 주요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지만
  - 향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여러 가지

잠재적·도전적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고 평가

- 재정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민간위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논의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와는 차별화된다고 언급

-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 '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09년 3,537만명 → '50년 2,242만명)로 성장률 둔화 및 세입기반 약화 우려

- 빈발하는 글로벌 경제쇼크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속도('08년 3/4. 3.3% → 4/4. △3.3%)는 OECD 국가 중 아일랜드(△1.6% → △9.1%) 다음으로 최고

- 준비해야 할 통일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더욱 증가할 우려

\* 독일은 '91~'03년간 연평균 GDP의 5% 수준 통일비용 부담, 우리나라는 연간 GDP 대비 최대 7% 이상씩 10년 이상 소요 전망('08, 조세연)

- ③ 따라서, 이러한 재정위험요인들에 어떻게 대응하는냐는 향후 우리의 재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 최근 PIGS국가 재정위기, 일본의 재정악화 등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 재정은 한 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아울러, 지금 당장 재정위기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마음가짐으로
  - 우리가 당면한 재정위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대응을 해나가는 데 적극적 협조를 당부함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 관련**

- ① 윤증현 장관은 오늘 논의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위험요인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조~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 \* 건보 재정수지(억원) : ('06)△747 → ('07)△2,847 → ('08)13,667 → ('09)△32 → ('10)△12,994
  - 향후, 고령화 가속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성장률 저하로 인한 수입감소로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 現체계 유지시 재정수지 전망(조원, '11. 1 건보공단추계) : ('20)△17.3 → ('30)△49.6
  -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 그간 부진했던 제도개혁에 속도를 내어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 ②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현행 국고지원 방식\*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며,

-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아울러, 과잉진료·약제비 과다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구조와 보험료 납부면제 과다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함

**‘재정통계 개편방안’ 관련**

- ① 윤증현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통계가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IMF '86 GFS에 따라 작성되고 있어
  -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최신 국제기준('01 GFS)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채무 규모도 과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 '08.11월부터 민관합동 T/F를 운영하여 발생주의 기준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난 1. 26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 이후, 공청회,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편안을 보완중에 있고, 오늘 위원회 논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② 세계 주요국이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고(OECD 30개국 중 15개국이 발생주의 도입, '09년 기준),
  - 우리나라도 '11년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정부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시점에서,
  - 재정통계 개편을 통해 그간 제외되어 온 발생주의 부채·수지 항목, 일반정부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한국은행 통계와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재정통계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되고,
  - 또한,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간 비교 및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재

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 관련**

- ① 윤증현 장관은 최근 언론 등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 보조사업 존치평가제도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
- ②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운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 \* 최근 5년간 보조금 연평균 증가율(8.9%) > 동기간 총지출 증가율(6.9%)
  - 보조사업 존치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12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임을 강조
  - \* 보조금일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
  - 그리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③ 보조금은 일단 시작되면 폐지하거나 지원규모를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인 만큼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존치평가는 세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관계부처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점검을 당부함

**참고** 2011년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

**I. 추진 배경**

- '1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정건전

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내 협의·조정 기구 필요성 제기

-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주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재정 이슈나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한계

- 이에 '10. 5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위원회의 한시적('14년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설치·운영방안 보고
- 이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외에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 '재정위험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보완

- 앞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대응뿐만 아니라, 지출효율성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분야 전반에 걸쳐 논의할 계획
- 또한, 주요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재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 방향을 도출

- 이를 통해 장기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국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II.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

**1 위원회 구성**

- 정부위원(11명) : 재정부(위원장)·교과부·국방부·행안부·농수산식품부·지경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위원장

\* 단, 위원장이 안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도 참석 가능

- 민간위원(7명) :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장),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장), 강병규(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만우(고려대 교수), 백웅기(상명대 부총장), 안중범(성균관대 교수), 엄영숙(전북대 교수)

\*위원회 규정(대통령령)상 민간위원은 8명까지 임명 가능

## 2 위원회 운영방식

- **(개최시기)**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 5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전제출)** 상정안건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필요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무조정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에서 협의·조정

## 3 중점 논의과제 및 관리

※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의 분석·대응 외에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출효율화 및 세입확충 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  
 ※ 논의된 과제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재정운영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논의과제)** 재정 수 분야에 걸쳐 미래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장·단기 대응방안 강구
  - 복지지출, 지방재정, 공기업 부채, 통일 재원 등 재

정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연금, 건강보험 등의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건전화 방안
- 주요 재정사업의 지출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등

- **(과제관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

- 추진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예산반영, 법령 개정 등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 보고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 추가 논의기로 한 과제는 쟁점사항을 검토·보완하여 제시한 기한 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논의

## 참고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고보조사업 평가단 구성·운영  
 ※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활용·보완하여 추진  
 • 자율평가와의 중복방지 및 각 부처 평가업무 부담경감 차원  
 \* 존치평가 근거를 규정한 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중

- **(평가단 구성)** 평가의 질 제고와 1인당 평가 부담을 고려하여 20여명 수준으로 구성
  - 존치평가 유경험자 및 사업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4개팀(총괄·경제·사회·행정)으로 구성

- **(평가단 운영)** 용역 형식으로 발주, 평가실시

- **(평가단 역할)** 보조사업 존치 여부를 평가
  - 자율평가의 계획·집행·성과, 3단계 중 “계획” 부분을 세부적으로 특화하여 존치 평가에 활용
  - \* 사업 및 재정지출의 타당성,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집중 평가
  
- **(대상사업)** 자율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매년 250~300여개 예상)
  - \* 지자체 포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광특회계 자율편성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활용방안)** 보조사업 폐지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시 활용
  
- **(추진계획)** 국고보조사업 평가단 구성(4월초) → 평가 수행(4~6월) → 평가 결과 '12년 예산편성 반영(7~9월)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 -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결과 -

\* 본 자료는 2011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3. 31(목)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납세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의 실천과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음

### 1 보고 내용

#### [기본 방향]

-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 모범 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 \* 성실납세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 기업, 투명경영 기업 등
  - 탈세자·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

#### [주요 추진 과제]

- ① 성실납세자 지원·우대 및 성실납세문화 확산
  - ①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확대
    - 성실납세·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조세

- 감면 등 세제상 지원 방안 마련,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 등
- 세정상 무한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지방세 온라인 납부 도입 등 납세편의 개선
- ②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및 우대 분위기 조성
  -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확대 및 성실납세 엠블렘(표장) 부착, 해외 출국시 출국전 용심사대 이용 확대·민원 우선 처리 등 우대
- ③ 국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확산
  -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운동 등 성실납세문화 확산, 미래 납세자에 대한 세금교육 확대 등

#### ② 탈세자·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 ①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 ② 세금 없는 변칙 상속·증여 방지
  -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결산서류 공시대상 공익법인 확대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변칙 탈루유형 중점관리 등
- ③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해외금융계좌의 금년 6월 첫 신고 대비 사전 홍보

보 강화, 해외탈루소득 파악 등을 위한 세정전문요원 해외 파견, 외국과세당국과 동시 조사 등 공조 강화

④ 고액채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액채납자 출국규제 대상 확대, 고액채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및 공개방법 다양화, 외국 정부와 정보교환협정 확대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파악, 채납세액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추진, 채납정리 특별전담반 구성 등
-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채납정보 공동 활용, 자치단체간 채납징수 위탁 확대, 국가·지자체간 채납징수행정 공조 등 기관간 채납관리 공조 체제를 구축

2 토론자 발언

- 국가간 조세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조세 공평성은 좁은 의미인 탈세와 채납방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
  - 고소득자의 탈루소득과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 발굴 필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돈의 유출과 해외소득 미신고의 정확한 파악 필요
  - 지자체의 채납세액 징수와 납부 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
- 정부는 각 과제별로 세부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

## -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및 시민감시운동 추진 -

\* 본 자료는 2011년 3월 24일 국세청 전자세원과에서 발표한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0. 4. 1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임
 ⇒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

-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행
- 미발행 금액에 대하여 50% 과태료 부과
- 미발행 신고시 신고금액 20% 포상금 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인별 1,500만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여,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재촉하고

-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스티커 제작 등을 위해서 국세청은 금년 2. 14부터 3. 11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음
  - 공모 결과 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되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함
  - 이현동 국세청장은 '11. 3. 23일 디자인 부문 대상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음

**수상자 명단**

	부 문	
	디자인	표어
대 상	양세희	-
우수상	심양진	조은미
	김유림	
장려상	신지희	이다정
	임성협	윤성우

- 앞으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에 대

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며

-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임('11. 4. 1 시행 예정)

####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감시 강화로 공정사회 지향

-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높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고 스스로 이를 실천토록 함으로써 공정사회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음

#### 〈시민감시단 결성 추진방안〉

- 구성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 희망자
- 역할 :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자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

-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 점검 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 재정통계 |



-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비과세 비중
- OECD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비과세 비중
-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비세 비중
- OECD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

## 1.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비과세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Australia	7.1	6.7	7.4	8.1	9.1	7.7	8.1	8.7
Austria	12.7	12.6	12.6	12.2	13.3	12.5	11.9	12.3
Belgium	11.6	12.1	10.8	11.2	11.3	11.1	11.2	11.4
Canada	10.4	9.8	10.2	10.1	10.3	9.3	9.0	8.6
Chile	-	-	-	-	-	11.0	11.9	12.4
Czech Republic	-	-	-	-	-	-	12.1	11.2
Denmark	12.4	14.9	13.2	16.1	15.8	15.4	15.7	15.9
Finland	12.9	12.5	11.7	12.6	13.5	14.2	14.0	13.7
France	13.1	13.0	11.8	12.2	12.7	11.9	11.9	11.4
Germany	10.4	10.0	9.2	9.9	9.3	9.3	10.4	10.4
Greece	8.7	9.6	9.1	8.9	10.9	11.7	11.9	12.0
Hungary	-	-	-	-	-	-	16.8	15.6
Iceland	16.4	16.8	18.9	17.7	17.2	15.9	15.2	16.4
Ireland	13.1	14.9	13.4	13.6	15.4	14.0	13.2	11.7
Israel	-	-	-	-	-	-	13.5	12.3
Italy	10.1	9.9	7.4	7.9	8.5	10.6	10.9	11.8
Japan	4.8	4.4	3.6	4.1	3.8	4.0	4.2	5.2
Korea	-	-	9.1	10.7	9.6	8.6	8.2	8.7
Luxembourg	6.9	4.8	6.8	7.7	9.6	9.0	10.0	10.6
Mexico	-	-	-	7.6	10.0	8.7	8.2	8.9
Netherlands	9.4	9.9	9.8	10.8	10.9	11.3	11.3	11.5
New Zealand	6.7	7.1	6.9	6.9	7.2	12.4	12.1	11.5
Norway	12.2	14.8	14.7	15.0	16.0	14.6	15.8	13.5
Poland	-	-	-	-	-	-	12.8	11.8
Portugal	7.6	8.4	8.2	10.3	10.7	11.9	12.6	12.2
Slovak Republic	-	-	-	-	-	-	-	12.3
Slovenia	-	-	-	-	-	-	15.2	14.1
Spain	6.0	5.7	4.5	4.7	7.8	9.2	9.2	10.1
Sweden	10.4	10.7	10.1	11.2	12.6	13.0	13.4	12.7
Switzerland	6.0	5.8	5.3	5.7	5.6	5.5	6.1	6.7
Turkey	5.7	4.6	4.9	3.4	4.1	4.2	6.3	10.1
United Kingdom	10.1	10.6	8.7	10.2	11.7	11.0	12.0	11.6
United States	5.6	5.4	5.0	4.7	4.8	4.8	5.0	4.7
OECD - Total	9.6	9.8	9.3	9.7	10.4	10.5	11.2	11.3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7	9.0	8.8	8.6	8.3	8.0	7.9	7.4	-
12.4	12.6	12.4	12.3	12.1	11.7	11.6	11.6	12.0
10.9	11.0	10.9	11.2	11.3	11.3	11.0	10.8	10.9
8.8	8.9	8.9	8.7	8.5	8.1	7.9	7.6	7.7
12.2	12.2	11.7	11.2	11.1	10.0	10.5	11.4	10.0
10.8	10.8	11.1	11.8	11.8	11.2	11.1	11.5	11.6
15.9	16.0	15.8	16.0	16.3	16.4	16.3	15.6	15.3
13.3	13.5	14.1	13.8	13.8	13.6	12.9	13.0	13.6
11.1	11.1	11.0	11.1	11.1	10.8	10.7	10.6	10.5
10.4	10.3	10.4	10.1	10.1	10.0	10.5	10.5	11.0
12.5	12.3	11.4	11.0	11	11.5	11.5	11.4	10.6
14.7	14.2	14.9	15.3	14.8	14.3	15.0	14.9	15.4
14.3	14.4	15.1	16.0	17.1	17.6	16.4	13.6	11.9
10.6	10.8	10.7	11.2	11.4	11.4	11.2	10.7	9.7
12.2	13.0	12.9	13.0	12.7	12.4	12.8	12.6	12.3
11.2	11.2	10.7	10.8	10.8	11.1	11.0	10.6	10.6
5.3	5.3	5.2	5.3	5.3	5.2	5.1	5.1	5.1
9.1	9.0	8.9	8.4	8.2	8.1	8.3	8.4	8.2
10.5	10.6	10.5	11.2	10.9	10.0	9.8	9.9	10.4
8.8	8.1	9.1	9.5	10.2	10.3	9.5	12.4	8.8
11.8	11.6	11.7	11.9	12.2	12.1	12.0	11.8	-
11.6	11.9	11.9	11.8	11.8	11.8	11.1	11.4	11.4
13.3	13.3	12.9	12.7	12.1	12.0	12.4	10.9	11.6
11.4	12.1	12.2	11.9	12.7	13.3	13.0	13.0	-
12.3	12.6	12.8	12.7	13.4	13.7	13.2	12.9	-
11.2	11.4	12.0	12.3	12.6	11.4	11.3	10.5	10.5
13.7	13.9	14.0	13.8	13.6	13.3	13.2	13.2	14.1
9.7	9.6	9.7	9.8	9.9	9.9	9.5	8.3	7.1
12.6	12.7	12.7	12.6	12.8	12.6	12.6	12.8	13.5
6.8	6.8	6.8	6.8	6.9	6.8	6.6	6.3	6.3
10.5	11.5	12.8	11.5	12.0	11.9	11.5	11.0	11.2
11.3	11.3	11.2	11.1	10.8	10.6	10.5	10.3	10.0
4.6	4.6	4.7	4.7	4.8	4.8	4.7	4.6	4.4
11.0	11.1	11.2	11.2	11.3	11.1	11.0	10.8	-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2. OECD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비과세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Australia	34.7	32.0	29.3	31.1	32.8	27.8	29.0	28.7
Austria	37.4	37.4	34.5	31.5	32.6	31.5	28.6	28.5
Belgium	37.2	35.8	27.4	27.2	25.4	26.4	25.7	25.4
Canada	40.5	31.7	32.0	32.6	31.8	25.8	25.4	24.2
Chile	-	-	-	-	-	62.9	62.6	63.8
Czech Republic	-	-	-	-	-	-	32.1	31.6
Denmark	41.4	38.8	34.3	37.5	34.3	33.0	32.1	32.1
Finland	42.5	39.6	31.9	35.3	33.9	32.5	30.6	29.0
France	38.4	38.1	33.3	30.4	29.7	28.4	27.6	25.7
Germany	33.0	31.8	26.9	27.1	25.7	26.7	28.0	28.1
Greece	48.8	48.2	46.8	41.2	42.7	44.5	41.3	35.3
Hungary	-	-	-	-	-	-	40.6	40.5
Iceland	62.7	61.3	63.0	59.9	61.1	51.3	48.7	44.1
Ireland	52.6	52.4	46.5	43.7	44.4	42.3	40.7	37.6
Israel	-	-	-	-	-	-	36.5	33.3
Italy	39.5	38.7	29.4	26.5	25.4	28.0	27.3	27.9
Japan	26.2	22.4	17.3	16.3	14.0	13.7	15.8	19.3
Korea	-	-	61.1	62.7	59.5	44.3	40.7	38.4
Luxembourg	24.7	20.5	20.9	21.5	24.4	25.1	27.1	27.2
Mexico	-	-	-	51.2	64.8	55.3	53.9	53.0
Netherlands	28.6	27.8	24.2	25.2	25.6	26.4	27.2	29.2
New Zealand	27.9	27.2	24.2	22.3	23.1	33.6	33.4	34.7
Norway	41.1	42.8	37.6	35.3	37.5	35.5	38.6	31.8
Poland	-	-	-	-	-	-	35.2	36.1
Portugal	47.6	47.2	42.6	46.5	43.7	44.2	40.9	37.2
Slovak Republic	-	-	-	-	-	-	-	36.2
Slovenia	-	-	-	-	-	-	38.7	37.6
Spain	40.8	35.9	24.2	20.7	28.4	28.4	28.6	29.6
Sweden	31.2	28.2	24.3	24.0	26.6	25.0	28.1	24.6
Switzerland	34.2	30.2	22.4	23.0	21.9	21.2	21.9	22.5
Turkey	54.0	49.4	41.3	25.6	36.0	27.9	37.6	42.0
United Kingdom	33.1	28.8	25.0	29.2	31.5	31.1	35.3	32.0
United States	22.8	20.0	19.5	17.6	18.8	17.4	18.0	16.0
OECD - Total	38.4	36.1	32.8	32.5	33.7	33.0	33.7	32.8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2	30.3	29.6	28.5	27.8	27.1	26.6	27.4	-
27.5	28.5	28.4	28.5	28.6	27.9	27.5	27.1	28.1
24.5	24.6	24.7	25.1	25.3	25.6	25.1	24.5	25.2
25.1	26.4	26.3	25.8	25.3	24.5	24.0	23.6	24.7
62.1	61.7	60.5	56.7	51.5	43.2	43.8	50.6	55.3
30.4	29.7	29.7	31.2	31.3	30.2	29.8	31.9	33.4
32.8	33.4	32.9	32.6	32.0	33.1	33.3	32.5	31.9
29.6	30.2	32.0	31.7	31.3	31.1	30.1	30.0	31.4
25.2	25.6	25.5	25.5	25.3	24.5	24.7	24.5	24.9
28.7	29.1	29.3	29.1	28.9	28.3	29.2	28.5	29.6
37.9	36.6	35.5	35.4	34.8	36.3	35.7	34.9	35.9
38.7	37.6	39.4	40.8	39.7	38.4	37.7	37.1	39.4
40.3	40.8	41.1	42.2	42.0	42.3	40.4	37.0	35.0
36.4	38.7	37.6	37.4	37.4	35.9	36.1	37.1	34.9
33.1	35.8	36.4	36.7	35.9	34.5	35.2	37.3	39.2
26.8	27.0	25.7	26.4	26.4	26.2	25.2	24.5	24.4
19.4	20.1	20.3	20.0	19.4	18.6	18.0	18.0	32.6
39.6	38.7	37.0	36.2	34.3	32.5	31.3	31.6	32.0
26.4	27.1	27.6	30.0	29.0	28.0	27.5	28.0	27.8
51.5	49.0	52.5	55.5	56.7	56.3	53.1	59.2	51.9
30.9	30.9	31.8	32.1	31.8	31.0	31.0	30.3	-
35.6	35.1	35.3	33.8	32.1	32.7	31.7	33.8	36.6
31.0	31.0	30.6	29.3	27.8	27.3	28.4	25.6	28.2
35.0	36.7	37.4	37.6	38.5	39.1	37.5	38.0	-
37.8	37.9	38.1	38.8	39.7	39.7	37.5	36.6	-
33.8	34.3	36.2	38.7	39.9	38.7	38.4	36.0	35.9
36.3	36.7	36.7	35.9	35.2	34.8	35.1	35.6	37.1
28.8	28.2	28.4	28.2	27.7	26.9	25.5	25.1	23.3
25.5	26.8	26.6	26.2	26.1	26.1	26.6	27.7	29.1
23.2	22.6	23.3	23.7	23.6	23.0	22.7	21.7	20.7
40.1	46.9	49.4	47.7	49.3	48.7	47.7	45.5	45.6
31.3	32.5	32.7	31.9	30.3	29.0	29.1	28.8	29.0
16.3	17.7	18.3	18.3	17.7	17.1	16.7	17.6	18.5
32.5	33.0	33.2	33.3	32.8	32.1	31.6	31.7	-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 3.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비세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Australia	6.1	5.8	6.5	7.2	7.9	6.5	6.5	7.9
Austria	12.4	12.4	12.4	11.8	12.7	11.9	11.2	11.6
Belgium	10.6	11.7	10.3	10.7	10.6	10.5	10.4	10.5
Canada	8.9	8.5	8.3	7.6	8.5	8.8	8.5	8.1
Chile	-	-	-	-	-	10.6	11.4	11.8
Czech Republic	-	-	-	-	-	-	11.1	10.3
Denmark	11.7	14.1	12.4	15.4	15.3	14.7	15.0	15.0
Finland	12.7	12.4	11.6	12.5	13.3	14.1	13.7	13.4
France	12.8	12.7	11.5	11.8	12.3	11.5	11.4	11.1
Germany	9.8	9.5	8.7	9.4	8.9	9.0	10.0	10.1
Greece	7.8	8.8	8.2	8.2	10.2	11.1	11.4	10.9
Hungary	-	-	-	-	-	-	16.7	15.4
Iceland	16.2	16.4	18.6	17.4	16.8	15.2	14.3	14.7
Ireland	12.2	14.1	12.8	13.4	14.8	13.5	12.6	11.3
Israel	-	-	-	-	-	-	12.7	11.4
Italy	9.4	9.3	7.2	7.5	8.0	9.6	10.0	10.6
Japan	4.5	4.1	3.1	3.6	3.3	3.5	3.7	4.6
Korea	-	-	9.0	10.5	9.4	8.4	7.7	8.3
Luxembourg	6.5	4.5	6.6	7.5	9.4	8.8	9.9	10.5
Mexico	-	-	-	7.4	10.0	8.7	8.0	8.8
Netherlands	8.9	9.3	9.2	9.9	9.9	10.3	10.2	10.4
New Zealand	6.3	6.6	6.5	6.6	6.9	11.7	11.3	10.8
Norway	11.8	14.3	14.3	14.6	15.5	14.0	15.0	12.6
Poland	-	-	-	-	-	-	12.5	11.3
Portugal	7.0	8.0	7.7	10.0	10.3	11.7	12.4	12.0
Slovak Republic	-	-	-	-	-	-	-	11.6
Slovenia	-	-	-	-	-	-	14.9	13.4
Spain	6.0	5.7	4.4	4.7	7.6	8.6	8.4	9.3
Sweden	9.8	10.1	9.4	10.5	12.1	12.6	13.1	12.3
Switzerland	5.6	5.4	4.9	5.3	5.2	5.1	5.7	6.3
Turkey	5.6	4.5	4.9	3.4	4.1	4.1	6.2	9.8
United Kingdom	9.5	9.8	8.3	9.7	11.0	10.4	11.4	11.1
United States	4.9	4.7	4.4	4.0	4.2	4.1	4.3	4.1
OECD - Total	9.1	9.3	8.8	9.3	9.9	9.9	10.7	10.6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0	8.2	8.1	7.9	7.6	7.3	7.2	6.8	-
11.7	11.8	11.6	11.6	11.4	11.0	10.9	10.9	11.3
10.0	10.2	10.1	10.4	10.5	10.6	10.3	10.1	10.2
8.3	8.4	8.4	8.2	7.9	7.6	7.4	7.1	7.2
11.6	11.5	11.0	10.7	10.5	9.5	10.0	10.8	9.5
10.1	9.9	10.2	10.9	10.9	10.4	10.4	10.8	10.9
15.0	15.1	14.9	15.1	15.4	15.5	15.4	14.8	14.4
12.9	13.2	13.8	13.4	13.4	13.3	12.6	12.6	13.2
10.8	10.8	10.7	10.8	10.8	10.5	10.4	10.3	10.2
10.0	9.9	10.1	9.7	9.7	9.6	10.1	10.2	10.6
11.2	11.2	10.4	10.0	10.1	10.5	10.6	10.4	0.0
14.5	14.0	14.6	15.0	14.5	14.0	14.7	14.6	15.0
12.8	12.9	13.6	14.3	15.4	15.6	14.7	12.5	0.0
10.1	10.3	10.2	10.7	10.9	10.9	10.7	10.1	9.3
11.2	12.0	11.9	11.8	11.7	11.4	11.8	11.7	11.5
10.1	9.9	9.7	9.8	9.7	10.0	9.9	9.5	9.5
4.7	4.6	4.6	4.7	4.7	4.6	4.5	4.5	4.5
8.8	8.7	8.6	8.2	8.0	7.9	8.0	8.1	7.9
10.4	10.5	10.4	11.1	10.8	9.9	9.6	9.8	10.2
8.6	7.9	8.9	9.3	10.1	10.1	9.3	12.2	8.6
10.7	10.5	10.7	10.8	11.1	11.0	10.8	10.6	-
10.9	11.2	11.1	11.0	11.0	11.0	10.3	10.6	10.6
12.4	12.5	12.1	11.9	11.3	11.3	11.7	10.3	11.0
11.1	11.7	11.8	11.5	11.9	12.2	12.6	12.6	-
12.0	12.3	12.5	12.5	13.1	13.4	13.0	12.7	-
10.5	10.5	11.2	11.4	11.8	10.6	10.5	9.8	9.7
13.0	13.3	13.2	13.0	12.8	12.7	12.6	12.7	13.5
8.9	8.9	9.0	9.1	9.2	9.1	8.8	7.8	6.6
12.3	12.4	12.4	12.2	12.4	12.2	12.2	12.3	13.0
6.3	6.1	6.2	6.2	6.2	6.1	5.7	5.5	5.4
10.1	11.1	12.2	11.1	11.5	11.5	11.0	10.5	10.7
10.9	10.8	10.8	10.7	10.4	10.2	10.1	9.8	9.5
4.0	3.9	4.0	3.9	4.0	4.0	3.9	3.7	3.7
10.4	10.5	10.6	10.6	10.6	10.5	10.4	10.2	-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 4.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Australia	30.0	27.8	25.8	27.8	28.6	23.4	23.1	26.2
Austria	36.6	36.6	33.9	30.3	31.0	29.9	27.2	26.9
Belgium	34.1	34.5	26.1	25.8	24.0	25.0	23.8	23.4
Canada	34.7	27.7	26.0	24.6	26.1	24.4	23.9	22.8
Chile	-	-	-	-	-	60.4	59.8	60.6
Czech Republic	-	-	-	-	-	-	29.6	29.3
Denmark	39.0	36.8	32.3	35.7	33.3	31.5	30.7	30.4
Finland	41.9	39.1	31.6	35.0	33.4	32.1	29.9	28.3
France	37.5	37.1	32.4	29.5	28.7	27.5	26.7	25.1
Germany	31.1	30.0	25.4	25.9	24.6	25.8	26.9	27.1
Greece	44.1	44.2	42.2	38.2	40.0	42.5	39.4	31.9
Hungary	-	-	-	-	-	-	40.3	39.9
Iceland	61.7	59.9	62.2	58.7	59.5	49.2	45.7	39.5
Ireland	49.1	49.5	44.4	43.0	42.6	40.6	38.8	36.0
Israel	-	-	-	-	-	-	34.2	30.9
Italy	37.0	36.3	28.3	25.2	23.6	25.3	25.0	25.0
Japan	25.0	20.9	15.1	14.1	12.1	12.0	13.8	17.0
Korea	-	-	60.0	61.5	58.5	43.0	38.6	36.7
Luxembourg	23.5	19.3	20.1	21.0	23.9	24.6	26.7	26.8
Mexico	-	-	-	50.3	64.5	54.8	52.7	52.1
Netherlands	27.1	26.2	22.5	23.1	23.4	24.0	24.6	26.3
New Zealand	26.2	25.1	22.8	21.4	22.0	31.6	31.3	32.4
Norway	39.9	41.6	36.6	34.4	36.4	34.1	36.7	29.4
Poland	-	-	-	-	-	-	34.6	34.6
Portugal	44.0	44.8	40.1	45.0	42.3	43.4	40.2	36.5
Slovak Republic	-	-	-	-	-	-	-	34.1
Slovenia	-	-	-	-	-	-	37.9	35.8
Spain	40.6	35.8	24.0	20.7	27.6	26.5	26.1	27.1
Sweden	29.5	26.5	22.7	22.6	25.5	24.0	27.7	24.0
Switzerland	31.9	27.9	20.6	21.3	20.2	19.7	20.4	21.1
Turkey	53.5	48.8	40.9	25.2	35.7	27.4	37.1	40.6
United Kingdom	31.1	26.8	23.7	27.9	29.7	29.4	33.5	30.6
United States	19.9	17.6	17.1	15.3	16.3	14.9	15.5	13.8
OECD - Total	36.2	34.2	31.1	30.9	32.1	31.4	31.9	31.0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7.7	27.8	27.1	26.1	25.5	25.0	24.4	25.0	-
25.8	26.7	26.6	26.8	26.9	26.2	25.9	25.5	26.4
22.5	22.7	22.9	23.3	23.5	23.9	23.5	23.0	23.5
23.7	24.9	24.9	24.3	23.8	22.9	22.4	21.9	23.0
59.1	58.5	57.3	53.9	48.7	40.9	41.6	48.1	52.2
28.3	27.4	27.3	29.0	29.1	28.0	27.8	29.8	31.4
30.9	31.6	31.1	30.9	30.3	31.3	31.5	30.7	30.0
28.9	29.5	31.2	30.7	30.5	30.3	29.3	29.2	30.5
24.5	25.0	24.9	24.9	24.7	23.8	24.0	23.8	24.3
27.6	28.0	28.3	28.0	27.8	27.2	28.2	27.5	28.7
34.1	33.5	32.5	32.2	31.7	33.3	32.7	32.0	0.0
38.2	37.1	38.8	40.0	38.9	37.6	36.9	36.3	38.5
36.1	36.6	37.1	37.8	37.8	37.7	36.1	33.9	0.0
34.8	37.1	35.8	35.7	35.8	34.3	34.5	35.1	33.4
30.6	33.0	33.7	33.4	33.0	31.9	32.6	34.6	36.5
24.0	24.0	23.1	23.8	23.8	23.7	22.8	22.0	21.8
17.1	17.7	17.9	17.7	17.2	16.5	15.9	15.9	28.9
38.3	37.6	36.0	35.2	33.3	31.6	30.3	30.6	30.9
26.0	26.8	27.2	29.7	28.7	27.7	27.0	27.5	27.2
50.5	47.9	51.5	54.5	55.7	55.3	52.0	58.3	50.9
28.2	28.1	28.9	29.1	28.8	28.1	28.0	27.2	-
33.3	32.9	33.0	31.6	30.0	30.5	29.4	31.5	34.1
28.8	28.9	28.6	27.4	26.1	25.8	26.7	24.1	26.8
34.1	35.5	36.4	36.3	36.2	35.8	36.3	36.7	-
36.9	37.0	37.3	38.1	39.0	38.9	36.8	35.9	-
31.7	31.7	33.7	36.1	37.3	36.0	35.7	33.4	33.1
34.6	34.9	34.6	33.8	33.2	33.1	33.4	34.1	35.6
26.4	25.9	26.3	26.2	25.7	24.9	23.7	23.3	21.4
24.9	26.1	26.0	25.5	25.3	25.3	25.7	26.7	28.0
21.2	20.6	21.3	21.6	21.2	20.7	19.8	19.0	18.0
38.7	45.3	46.9	46.3	47.4	46.8	45.6	43.5	43.6
30.1	31.2	31.4	30.7	29.1	27.9	28.0	27.6	27.6
14.0	15.2	15.5	15.3	14.7	14.3	13.9	14.4	15.3
30.7	31.1	31.4	31.4	30.9	30.2	29.8	29.9	-

자료: OECD, Data extracted from OECD, Stat, 2010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학력 높을수록 납세의식은 ‘빵점’

대졸이 고졸보다 불성실 납세...고소득·자영업자도 세금 회피

#1. 변호사 이모씨는 몇해 전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지방법원 인근에서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며 전관예우로 고가 수임료 사건을 꾸준히 맡았다. 이씨는 사건수임 약정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일부만 세금당국에 신고, 6억원을 탈루했다.

#2. 중소기업설업체 대표 박모씨는 거래처인 3개 외주업체에서 원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아 172억원을 가공으로 꾸며내 이 돈을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힘이 셀수록 세금을 성실히 내겠다는 의식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수임 약정서 아예 작성하지 않기, 가공의 공사원가 만들어내기, 강의교재 판매비 빼돌리기, 바지사장 내세워 세무조사 피하기 등 탈루 백태는 ‘돈 없고 못 배우고 힘없는 자’ 들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6일 조세연구원이 25~64세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는 ‘힘 세고 배운 자’ 들의 이중적·기회주의적 납세의식을 보여준다.

소득별로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성실납세 의향 면에서 100점 만점 기준에 66.8점으로 4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71.7점보다 낮았다. 하지만 조세이

해도 면에서는 고소득자가 50.1점으로 저소득자의 37.4점을 압도했다.

학력별로도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성실납세 의향은 69.7점으로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72.0점에 못 미쳤다. 조세이해도는 고학력자가 44.3점으로 저학력자의 34.6점을 역시 능가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성실납세 의향이 69.9점으로 비자영업자의 70.9점보다 낮았지만 조세이해도는 45.1점으로 비자영업자의 38.8점보다 높았다.

종교와 성별, 복권구입 경험 여부도 성실납세 의향과 조세이해도에서 대조되는 결과를 보여줬다. 유종교자(72.4점)가 무종교자(68.6점)보다, 여성(71.9점)이 남성(69.4점)보다, 복권구입 무경험자(73.5점)가 유경험자(67.3점)보다 성실납세 의향 점수가 높았다.

이에 반해 조세이해도 면에서는 무종교자(40.9점)가 유종교자(39.0점)보다, 남성(43.1점)이 여성(36.9점)보다, 복권구입 유경험자(40.4점)가 무경험자(39.3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세정당국은 고소득, 고학력 및 종교가 없고 위험을 선호하는 30~40대 자영업자 남성을 우선적으로 성실납세 의향을 향상시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일보 2011-4-7일자〉

## 〈사설〉 공정사회는 고소득자 탈세·고액체납 근절 부터

어제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조세정의 실현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정부가 공정사회 8대 중점과제 가운데 공평 과세와 탈세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옳은 판단이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납세(41%)가 첫손에 꼽혔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은 고소득 전문직 탈세, 사업자와 근로자 간 세금 부담 격차, 편법 상속·증여, 고액 체납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공정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가다. 정부는 어제 대다수 성실 납세자는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되 일부 고질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고소득 자영업자 4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작년 고소득 사업자들에게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 탈루율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대형음식점 고액학원과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 탈세를 막아야 한다.

일부 기업이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돕기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대한 과세는 당연한 일이다. 기업 때리기라는 반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과세 요건과 부당이득 계산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체납세액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만하다. 지방세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만여 명에 이르는 만큼 조사와 처벌 기준을 국세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조세정의를 이루려면 보다 근본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18.9%에 이르는 것으

로 추정했다. 작년 GDP(1172조원)에 대비하면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소득이 200조~221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숨은 세원을 포착하지 못하는 과세 시스템 때문에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세정 신뢰 제고도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 2011-3-31일자)

## 조세연구 “탈세 억제 위해 세무조사 늘려야”

###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세법연구센터장은 탈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22일 조세연구원이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탈세를 억제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절한 세무조사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 1999년 0.72%에서 2005년 0.18%, 2008년 0.11%로 떨어졌고,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도 1999년 2.68%, 2005년 1.86%, 2008년 0.76%로 하향 추세다.

한국의 세무조사 비율은 조세 투명성이 더 높다고 여겨지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2009년 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0.23%,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

은 1.22%였으며 일본은 2008년 기준 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이 0.25%,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4.86%였다.

정 의원은 “하향추세인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 관청의 인력조정 등 세무조사 요원의 인원 확충과 자질 향상이 필요하며 객관적, 과학적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납세자 유형별 납세순응 수준과 탈세 위험 수준에 따라 세무조사의 형태를 달리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세무조사를 불필요한 과세관청의 개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세무조사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과 부유층 기부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정 박사는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이 기부금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며 “미국은 개인기부에 대한 공제한도가 소득의 30~50%이고 영국은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2009년 15%, 2010년 20%, 그리고 2011년 30%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따른 기부금 규모 추이를 검토한 뒤 추가적인 한도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유층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 이외의 주식, 부동산 등의 기부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의 박명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추이’ 발표에서 한국인의 납세의식이 조금씩 선진화되고 있지만 세원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성실납세의향 지표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2점으로 2008년 67.2점보다 소폭 상승해 국민 3명 중 2명은 성실납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측면에서 납세의식 수준을 보여주

는 지표인 납세순응지표도 2008년 63.3점에서 64.4점으로 소폭 올랐다.

그러나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97.1점임에 비해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31.9점으로 여전히 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과거 3년간의 실제 납세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점수화한 것이고, 가상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탈세행위 발각이나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를 가정해 납세 의향을 점수화한 지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세무조사의 비율 확대, 처벌 강화 등 법집행 강화가 우리 사회에서 납세순응행위를 담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1-3-23일자〉

## 중소기업보다 자발적 기부성향 높아

### 업종별로는 건설·금융 등 기부금 자발성 부족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성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기부금에 대한 자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전국 3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중 1천8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법인규모별 설문조사에서 기부 동기를 묻는 항목 중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에 응답한 업체는 대기업이 많았다.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에 응답한 업체들은 대

기업이 4.6%, 중소기업이 1.9%로 대기업이 많았고,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대기업(17%)이 중소기업(11.3%)보다 5.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해 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기업에 대해 기부금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반드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성향이 중소기업에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기부금은 건설·금융업계의 기부금이 가장 자발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다소 강제적’과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6.1%, 6.5%로 다른 영역에 비해 법정 기부금에 대한 자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강제적’과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비율에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은 20%, 금융업은 19.6%, 제조업 10%, 도소매업 12.5% 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부분야 가운데 ‘비자발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분야는 ‘환경생태계 보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기업이 33.3%를 차지했다.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더하면 전체 기부 기업의 44.4%가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비자발성이 높은 분야는 ‘지역사회발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하지만,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계산할 경우에는 33.5%의 기업이 해당됐다.

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국제적·전국적 범위에서 활동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1-3-22일자〉

# 재정포럼

2011년 4월호 통권 제178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 월간 재정포럼

2011년 4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4호(통권 제17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